

지리적표시 등록제의 권리침해구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4년 10월 2일

농림부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제의 권리침해구제제도 도입방안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0월 2일

- 총괄기관명: 고려대학교
- 참여기관: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조사기간: 2004년 5월 3일 - 10월 2일
- 총괄책임자: 박 노 형 (고대 법대 교수)
- 참여연구원: 이 로 리 (고대 통상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요 약 문>

지리적표시는 점차 확대되는 세계화 속에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게 해 주며, 상품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보다 높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FTA 등으로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시점에 한국의 농산품 및 가공품은 저렴한 외국의 농산품과 경쟁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리적표시가 국산품의 지리적 원산지와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표시로서 소비자에게 인식 된다면 농산품의 생산자에게 있어서 지리적표시는 시장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식별력 측면에서 상표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상표가 회사의 자산으로 그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상품에 부착되고, 보호기간의 제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지리적표시는 상품이 기인한 지역과 관련성을 갖는 특정 상품에 의해 대표되고, 그 지역의 요구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생산자에게 이용가능 하다는 점, 그리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999년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 동안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세 건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으로 아직까지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WTO TRIPS 협정과 한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모델이 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와 이미 동 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동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에 비추어, 한국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은 TRIPS 수준으로의 지리적표시 요건 완화, 지리적 명칭의 직접적 보호, 권리구제의 내용 보완,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전문성 확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 매뉴얼 마련을 들 수 있다.

지리적표시제도는 국내 농산품의 국제적 보호는 물론 지적재산권으로써 생산자의 권익보호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인삼, 김치 등의 품목 외에도 녹차, 고추장, 쌀, 생수, 전통주, 과채류 및 축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시행 중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리적 명칭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주어 진다는

확인에 불과한 표지 (KPGI) 보호로 운영됨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명칭에 대한 타인의 무단 사용 시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리적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조건에서 지리적표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 품질관리정책으로서의 지리적표시 강화, 지리적표시의 상업적 전략마련을 들 수 있다.

EU 의 경우 지리적표시의 보호제도는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와 단체표장 등 상표법을 통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두 가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 여년이 경과한 지금 EU 차원에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어 실제로 농산품 및 식료품의 경우 지리적표시등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표법에 지리적표시보호를 위한 단체상표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EU 의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운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가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보호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o 연구목적

WTO TRIPS 협정 22.1 조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국가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공산품도 포함 되지만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정되어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육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제상표 법을 통한 보호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특별법을 통한 직접적 보호가 그러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시행중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리적 명칭 보호가 아닌 등록된 지리적표시임을 확인하는 표지 (KPGI)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명칭에 대한 타인의 무단사용 시 권리침해구제에 대한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지리적표시 보호의 집행 및 관련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권리침해구제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제도 정비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에 관한 회원국의 통고내용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문헌분석과 함께 EU 유럽위원회의 방문조사 및 관련 워크숍을 통하여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의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WTO TRIPS 이사회에 통고된 WTO 회원국 (EU, 프랑스, 스위스 등)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지리적표시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를 파악한다. 둘째, 외국의 지리적표시의 권리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운영 현황 및 권리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제도 등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 논의동향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넷째, 지리적표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리적표시의 국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목 차>

○ 요약문	i- ii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iii-iv
제 1 장.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개관	1
I. 지리적표시의 의의	1
1. 지리적표시의 정의	1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3.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표시	3
II. 지리적표시의 보호방법	8
1.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 보호개관	8
2. 상표법에 따른 보호	9
3. 특별보호	13
4. 사업관행에 관한 법등에 의한 간접보호	30
5. 상표법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와의 관계	34
제 2 장.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제도	38
I. 개관	38
II. WTO DDA 협상초안의 주요 내용	40
III. 한국에 대한 시사점	46
제 3 장. 외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48
I. EU	48
1. 지리적표시제도 개관	48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51
3. 권리구제제도	67
4. 상표와의 관계	69
II. 프랑스	72
1. 지리적표시제도 개관	73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74
3. 권리구제제도	77
4. 상표와의 관계	78
III. 스위스	79
1. 지리적표시제도 개관	79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81
3. 권리구제제도	87
4. 상표와의 관계	87
제 4 장. 한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제 5 장. 한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103
○ 결론	108

○ 참고문헌

○ 부록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EU 회원국의 지리적표시 관할기관

EU의 상품별 PDO 및 PGI 목록



# 제 1 장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개관

## I. 지리적표시의 의의

### 1. 지리적표시의 정의

TRIPS 협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경우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sup>1</sup> 동 정의에 따르면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보호의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표시(indication)는 반드시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지리적표시가 반드시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geographical name)일 필요는 없으며, 표시가 단어/문구의 형식이거나 또는 상징적인 심볼 또는 엠블렘의 형식일 수 있다. 둘째, 상품은 반드시 지정된 지리적 원산지에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각 요건이 그 자체로서 지리적표시 보호가 인정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요구되지 않는다. 셋째, 지정된 지리적 지역은 ‘표시와 상품의 관련성’(indication-good link)을 통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련성은 상품의 특성이 지정된 지리적 지역을 통하여 확립되었음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동질성(homogeneity)을 요구한다.<sup>2</sup> 그러나 TRIPS 협정은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것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들 요건의 구체적인 적용은 회원국들에게 맡겨져 있다.

###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1) 출처표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는 상품의 출처국이나 출처지(the country or place of

---

<sup>1</sup> TRIPS 협정 2.1 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sup>2</sup> Dwijen Rangnekar, *Geographical Indications: A Review of Proposals at the TRIPS Council*, UNCTAD/ICTSD Capacity Building Projec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02), p.16.

origin)로 표기되는 것으로 상품 등의 원산지가 어떤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장소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made in Korea’, ‘made in Geneva’ 로 표기되는 개념이다.<sup>3</sup> 따라서 상품의 특성 또는 특질 또는 생산회사 등은 출처표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원산지명칭

원산지명칭 (appellation of origin)은 어떤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 (geographical name)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 및 특징이 배타적 또는 본질적으로 자연적, 인적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인되는 경우 상품이 그곳에서 생산되었음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sup>4</sup> 동 정의에 따르면 원산지명칭은 보다 넓은 개념인 출처표시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명칭은 지리적 ‘표시’가 아니라 지리적 ‘명칭’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지리적인 명칭이나 엠블럼과 같은 표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원산지명칭은 그 지역의 자연적 및 인적 요소 등의 지리적 환경으로부터 기인된 품질과 특징을 갖는 상품을 지칭하지만 그로부터 화체된 명칭을 포함하지 않는다. 원산지명칭의 예로 견과류인 ‘그르노블 호두’(Noix de Grenoble), 주류인 ‘테킬라’(Tequila), 오렌지인 ‘자파’(Jaffa)가 있다. 원산지명칭은 지리적 원산지 개념을 넘어서 지리적 근원으로부터 생성된 어떤 품질 및 특징을 갖는 상품의 한 종류로 인식된다.<sup>5</sup>

출처표시, 원산지명칭, 지리적표시의 개념은 모두 지리적 요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광의의 지리적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출처표시는 상품의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상품의 단순한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여 가장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명칭은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지리적 환경으로 기인되는 품질 및 특징을 갖는 상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은 물론 비지리적 명칭이나 엠블럼 등 표시의 사용도 가능하다. 원산지명칭은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한 품질, 명칭 또는 기타 특징을 가지는 상품을 지정하는 지리적표시 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원산지명칭은 지리적표시지만 모든 지리적표시가 반드시 원산지명칭이 되는 것은 아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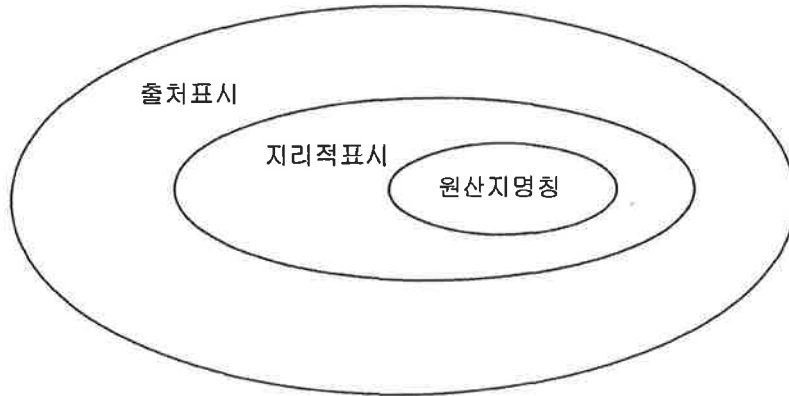
<sup>3</sup> *Id.*, pp. 8-9.

<sup>4</sup> 원산지명칭보호및원산지명칭의국제등록에관한리스본협정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October 31, 1958) 2.1 조: “In this Agreement, “appellation of origin” means the geographical name of a country, region, or locality, which serves to designate a product originating therein,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due exclusively or essentially to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and human factors.”

<sup>5</sup> *Supra* note 2, p.9.

<sup>6</sup> WIPO,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and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Ltd. (1997), p.234.

[그림 1. 지리적표시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 3.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표시

#### (1) 지리적표시의 보호

1883년 파리협약<sup>7</sup>과 1891년 마드리드협정<sup>8</sup> 및 리스본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은 지리적표시 보호의 법적 원칙을 제공한다. 즉, 지리적표시의 오인 또는 기만적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저명한 지리적표시의 무임승차로부터의 보호이다. 전자의 경우는 지리적표시가 언급하고 있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오인/기만적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이다.<sup>9</sup> 이러한 원칙은 TRIPS 협정 22.2 (a)조

<sup>7</sup> 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동 협약은 1883년에 채택되고, 1891년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후 브뤼셀 (1900년), 워싱턴 (1911년), 헤이그 (1925년), 런던 (1934년), 리스본 (1958년) 및 스톡홀름 (1967년) 에서 수정되고, 1979년 개정되었다.

<sup>8</sup> 기만적인또는허위의 출처표시억제에관한마드리드협정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동 협정은 1891년 채택되고, 이후 워싱턴 (1911년), 헤이그 (1925년), 런던 (1934년), 리스본 (1958년)에 수정되었다. 이후 스톡홀름추가의정서 (1967년)에 의해 보완되었다.

<sup>9</sup> *Supra* note 2, p.3.

10 및 22.4 조<sup>11</sup>에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지명한 표시에 대한 무임승차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불공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TRIPS 협정 22.2 (b)조<sup>12</sup>에 그러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리스본협정은 이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3 조에 따르면, 번역된 형식으로 또는 ‘종류의’ (kind), ‘타입의’ (type), ‘제조’ (make) 또는 ‘모방’ (imitation)과 같은 용어를 수반하는 보호되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sup>13</sup> 리스본협정의 이 원칙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한정되지 않지만, TRIPS 협정의 경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sup>14</sup>

## (2) 상표와 지리적표시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라는 점에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상표는 특정기업과 관련되어 그 기업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특정지역과 관련되어 지리적 명칭에 대한 일종의 단체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달리 보통 전용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이 사유재산권인데 비추어 차이가 있다. 또한 상표는 특정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sup>10</sup> TRIPS 협정 22.2 (a)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In resp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Members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a) the use of any means in the designation or presentation of a good that indicates or suggests that the good in question originates in a geographical area other than the true place of origin in a manner which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

<sup>11</sup> TRIPS 협정 22.4 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The protection under paragraphs 1,2 and 3 shall be applicable against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although literally true as to the territory, region or locality in which the goods originate, falsely represents to the public that the good originate in another territory.”

<sup>12</sup> TRIPS 협정 22.2 (b)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In resp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Members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b) any use which constitut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bis of the Paris Convention (1967).”

<sup>13</sup> 리스본협정 3 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sup>14</sup> TRIPS 협정 23.1 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Each Members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wines for wines not originating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ion or identifying spirits for spirits not originating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ion, even where the true origin of the good is indicated 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used in translation or accompanied

### (3) 단체표장/증명표장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collective marks) 또는 인증마크 (certification marks, 일부 국가에서는 증명표장 (guarantee marks))는 일반적으로 민간 주도로 지리적표시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통한 정부 주도의 보호와는 독립적으로 지리적표시를 보호한다. 국가들은 하나 이상의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단체표장 및 인증마크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표가 표기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로서 개별 기업을 식별하는데 비해 단체표장과 인증마크는 동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의 유대관계를 나타내거나 그러한 마크가 사용된 상품이 충족시킨 식별 가능한 표준 (standards)을 언급한다. ‘사실적인 지리적 용어’ (descriptive geographical terms)는 통상적으로 개별 상표로서의 등록이 배제 되지만, 동일한 지리적 용어라 할 지라도 단체표장 또는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이 수락될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단체표장 또는 인증마크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지리적표시의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마크에 대한 권리는 동 지리적 명칭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제 3 자에 대해서는 원용될 수 없다.<sup>16</sup>

단체표장과 인증마크의 중요한 차이는 마크의 목적과 사용권에 있다. 단체표장이 특정 조직에서의 동 마크의 사용자를 언급하는 반면, 인증마크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표준을 언급하는 것이다.<sup>17</sup> 또한 단체표장은 단체표장을 소유한 단체의 구성원인 특정 기업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인증마크는 정해진 표준을 준수하는 모두가 그러한 마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체표장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클럽을 형성하는 반면, 인증마크의 경우에는 “open shop”원칙이 적용된다.<sup>18</sup> 단체상표와 달리 인증마크는 생산자단체가 아닌 인증기관 (certification authority)이 소유하며, 이러한 인증기관은 지방정부기관 또는 관련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민간단체일 수 있다. 민간단체는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품이 인증된 품질을 보유한다는 것을 인증마크의 소유자로서 증명하는 것이다.<sup>19</sup>

---

by expressions such as “kind”, “type”, “style”, “imitation”, or the like.”

<sup>15</sup> WIPO, Geographical Indication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for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Tenth Session), SCT/10/4 (May 25 2003), para.28.

<sup>16</sup> *Id.*, para.30.

<sup>17</sup> *Id.*, para.39.

<sup>18</sup> *Id.*, para.31.

[그림 2. 인증마크의 예]

울마크



다즐링 티



NAPA VALLEY RESERVE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



IDAHO (감자 및 양파)



<sup>19</sup> *Id.*, para.38.

표 1. 지리적표시와 상표의 비교]<sup>20</sup>

지리적표시 (GI)	상표 (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권</li> <li>- GI의 소유권자는 존재하지 않음. (지정된 지역의 각 생산자가 그 특정 지역 상품에 대하여 GI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li> <li>- GI 사용의 인정, 행정 및 감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 권리</li> <li>- TM의 등록 소유권자가 존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원산지와 상품의 품질, 특징 또는 명성의 연계를 식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의 생산자를 식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과 지리적 원산지간 관계가 분리될 수 없음. (예컨대, "Honduras bananas"는 Honduras에서 생산된 바나나에만 사용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원산지와의 관계는 상표의 <i>sine quo non</i> 조건이 아님. 따라서 생산과 원산지의 관련성 이탈이 가능함. 예컨대, "Chiquita banana"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바나나에 부착될 수 있는 상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과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한 품질, 특징 또는 명성과의 특별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보호가 부여됨. 국가의 보호제도별로 등록을 통해서만 보호되는 경우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 보호는 직권 또는 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보호는 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지리적표시는 그 표시가 모든 국가에서 지리적표시로 인정되는 지역부에 상관 없이 상표 이전에 존재함.</li> <li>- 중요한 문제는 누가 그 지리적표시를 먼저 사용하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지리적표시에 있어 더 나은 권리 (better right in GI)를 가지느냐 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는 선사용 선권리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원칙이 적용됨. TM을 먼저 사용한 자가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됨.</li> </ul>

<sup>20</sup> Geographical Indications beyond Wines and Spirits: A Roadmap for a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e WTO TRIPS Agreement,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5 No.6 (November 2002), p.873 참조.

<p>- 세 가지 기능:</p> <p>GI의 오용으로부터 생산자 보호; GI의 오용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GI가 정책수립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p>	<p>- 주된 기능은 상표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으로부터의 생산자 보호</p>
---	--

## II. 지리적표시의 보호방법

### 1.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 보호 개관

TRIPS 협정의 다른 분야의 의무와 비교하여, 회원국들의 지리적표시 보호의무의 국내적 이행은 매우 다양하고, 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RIPS 협정은 지리적표시보호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WTO 사무국 (2001년)<sup>21</sup>에 따르면, 각국의 지리적표시 보호는 단체표장 및/또는 인증/증명표장에 관련된 상표법;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특별보호제도; 그리고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을 포함하는 사업관행에 관한 일반적인 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 보호제도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적용이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지리적표시 보호의 구체적 방법은 해당 국가의 산업 및 법 전통에 달려 있다. 지리적표시 보호에 적극적인 유럽, 특히 EU는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통하여, 미국 등은 단체/증명표장제도를 통하여 지리적표시를 보호한다. 대체적으로 대륙법계는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미국 등 보통법계는 단체/증명표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보통법계인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단체/증명표장에 의한 지리적표시 보호도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그 방법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은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

<sup>21</sup> WTO, Review under Article 24.2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Provisions of the Section of the TRIPS Agreement on Geographical Indications: Summary of the Responses to the Checklist of Questions, Note by the Secretariat, IP/C/W/253/Rev.1 (24 November 2003).



한 1891 년마드리드협정과 1958 년리스본협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태리의 경우는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과 함께 치즈, 올리브오일 등에 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와인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지리적표시의 정의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국가는 TRIPS 협정과 유사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 일정한 상품목록에 대해서만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도 한다. 다른 국가들은 리스본협정의 보다 제한적인 정의를 채택하여 보호되는 표시가 반드시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sup>22</sup>. 둘째,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요건은 대부분의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다. TRIPS 협정은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을 요구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생산방법 및 상품의 명세사항 (product specifications)과 관련한 특정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sup>23</sup> 셋째, 상품과 지정된 지역간의 관계를 보장하는 요건 또한 다양하게 이행되고 있다. 지역적 범위는 기존의 정치적, 행정적 구역에서 *sui generis unit* 까지 다양하다. 상품과 지리적 지역간의 연관성에 대한 조치는 모든 생산단계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거나<sup>24</sup> 또는 원료가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서 기인한 것이거나<sup>25</sup>, 또는 생산의 특정 단계가 그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요건을 포함한다. 또한 보호의 방식도 사업관행에 관한 법이나 상표법을 통해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거나 *sui generis* 법률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표시보호의 국내적 이행 모델은 매우 다양한데, 다음에서는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sup>26</sup>

## 2. 상표법에 따른 보호

### (1) 개관

상표법의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첫째, 지리적표시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로부터 보호하거나 둘째, 제 3 자에 의한 부당한 사용으로부터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법으로써 지리적표시를 상표로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가지 보호방법이 있다.

---

<sup>22</sup> 벨기에, 불가리아, 이태리, 멕시코, 포르투갈.

<sup>23</sup> EC Regulation No.2081/92.

<sup>24</sup> EC Regulation No.2081/92.

<sup>25</sup> 호주 (포도), 캐나다 (와인), EC (테이블 와인), 스위스 (와인).

<sup>26</sup> "II.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의 보호방법"은 WTO 사무국이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를 조사하여 정리한 WTO 보고서 (*supra* note 21)를 참조, 요약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모든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지리적 원산지 또는 상품, 서비스의 동일성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화 함으로써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의 보호는 특정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특정 분야의 상품 (예컨대 와인)에 대하여 이전부터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로 인정되어 온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높은 단계의 보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sup>27</sup>

제 3 자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부당사용은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인증마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상표법의 절차와 권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표장, 증명표장, 인증마크의 경우 동 표장의 사용에 관한 각각의 원칙을 확립, 준수하고, 이러한 상표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위해 몇가지 특별한 요건들이 정해져 있다. 독일, 홍콩,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통하여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있다.<sup>28</sup> 일반적으로 지명으로 이용되는 지리적표시의 경우 특정 개인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리적표시를 구성하는 표지가 사용을 통하여 특정 사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획득하는 경우에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예컨대, 스위스 VALSER 생수), 개인이 소유한 특정 지역의 명칭은 소유자의 허락 하에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상표는 지리적 원산지라기보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업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로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

## (2) 인정기준 및 절차

단체표장, 증명표장, 인증마크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체표장은 사업자 단체에 속하는 특정 표지 (sign)를 보호하고 그 구성원들이 그 표지를 상품,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증명표장 또는 인증마크는 상품,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그 표준을 결정하는 법적 기관에 속하는 특정 표지를 보호하고, 그 표지를 관리 대상품목이나 기준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상표들을 관장하는 특별규정들을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또한 그 규정들은 공공질서, 도덕, 강행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sup>29</sup>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인증마크가 지리적 명칭으로만 또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표관청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감독 할 신청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명칭의 사용에 대

<sup>27</sup> WTO, *supra* note 21, *para.*12.

<sup>28</sup> *Id.*, *para.*13.

<sup>29</sup> *Id.*, *para.*20.

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당국은 반드시 정부기관 또는 정부 권한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장의 소유자 및 소유자와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30</sup>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단체표장은 언급된 지리적 영역 내의 사람들이 상표에 포함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은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지리적표시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sup>31</sup>

단체표장 또는 인증마크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sup>32</sup> 이러한 신청에 절차적 요건이 부과되는데, 상표의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의 사본을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된다.<sup>33</sup> 미국의 경우 지리적 명칭이 지역적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인증마크로 사용되는 경우 경우, 만일 인증마크의 단어가 어느 원산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인증마크 등록신청서는 그 인증마크가 증명하고자 하는 지역적 원산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야 한다.<sup>34</sup> 일반적으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에 관한 일반절차가 단체표장, 인증마크에도 적용된다.<sup>35</sup>

### (3) 사용권 및 감독권

단체표장, 인증마크,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일부 국가들은 사용조건에 부합하도록 소유권자가 동 표장의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표장의 사용자는 표장 등록시 제출한 표장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증명표장, 인증마크에 관한 규정은 동 표장이 증명/인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통된 특징을 결정하고, 표장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적절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은 표장의 사용권이 있는 영업단체를 정의한다. 독일, 미국의 경우 일부 지리적 지역 또는 영역이 단체표장 등록을 신청하는 단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단체표장 사용조건 중 일부로서 그러한 규정에 명기되어야 할 요건은 누구든지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서 생산되고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면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하

<sup>30</sup> *Id.*, para.22.

<sup>31</sup> *Id.*, paras.22-23.

<sup>32</sup> 독일, 홍콩, 미국, 스위스.

<sup>33</sup> 독일, 홍콩, 영국, 미국.

<sup>34</sup> WTO, *supra* note 21, para.57.

<sup>35</sup> 영국, 미국.

고 표장사용권자 그룹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리히텐슈타인).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허가 (license)를 하는 경우 (독일, 리히텐슈타인, 미국)도 있는데, 독일은 단체표장 사용을 관장하는 규정이 이를 허용할 때만 허가 할 수 있다고 한다.<sup>36</sup>

단체표장 등의 사용감독체제는 국가별로 다르다. 먼저, 표장의 소유권자는 표장 사용권자와 이를 인가받은 사용자의 표장 사용을 감독 할 의무가 있다. 인증마크의 경우 소유권자 자신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업체가 마크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 이러한 사용의 감독기능은 제 3 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표장을 이해관계자가 감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만일 단체표장이 사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단체의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소유권자가 그러한 사용을 중단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상표관청에 단체표장의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독일, 홍콩).<sup>37</sup>

일반적으로 단체표장 등은 실제 사용이 보호의 전제가 된다.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체표장 등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5 년간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영국), 또는 등록 이후 5 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독일)에는 제 3 자가 동 표장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마크의 소유권자는 5 년 및 10 년 경과 후, 그리고 이후 매 10 년마다 사실상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증명 또는 인증마크에 의한 보호는 다른 상표와 마찬가지로 10 년 존속하며, 갱신될 수 있다 (스위스).<sup>38</sup>

#### (4) 권리구제제도

강제절차의 개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private actions)에 의한다. 이러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손해를 입은 자 (호주, 미국);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자 (스위스, 미국); 침해를 당한 자 (스위스); 모든 사람 또는 기관 (덴마크, 아이슬란드); 지리적표시 소유권자 또는 수익자 (독일, 홍콩); 상거래단체, 전문 및 영업단체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소비자단체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일부 회원국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예를 들면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마크의 사용권자(단체의 구성원)가

<sup>36</sup> WTO, *supra* note 21, *para.* 81.

<sup>37</sup> *Id.*, *para.* 82.

<sup>38</sup> *Id.*, *para.* 82.

소송을 할 수 있다 (독일). 특별한 상황에서는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미국). 단체표장/증명표장/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감독 기능에 관하여는 보통 소유권자나 민간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독일 스위스, 영국). 만일 단체표장이 단체의 목적 또는 표장의 사용을 관장하는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유권자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표장의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sup>39</sup>

이러한 보호유형을 채택한 회원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상표에 적용되는 사법적 강제절차와 구제수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일, 덴마크, 영국).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침해상품의 수입(수출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세관에 소송자격을 줄 수 있다 (독일).<sup>40</sup> 민사적 사법구제로는 금지명령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금전적 손해배상 (캐나다); 지리적표시를 불법으로 사용한 대상의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명령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몰수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폐기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잠정조치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판결의 공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있다. 호주의 경우 단체표장으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징역, 벌금, 상품 및 자격 박탈, 영업정지 등이 있다. 제시된 행정조치는 주로 국경지역에서 행해지는 조치이다.<sup>41</sup>

### 3. 특별보호

#### (1) 개관

특별보호를 통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특별법을 통하여 그 전체로서, 또는 상표법<sup>42</sup>, 마케팅<sup>43</sup>, 표지부착(labeling)<sup>44</sup>, 세법<sup>45</sup> 등에 관한 기존 법에 포함되어 있는 지리적표시의 특별보호규정을 의미한다.

WTO 회원국 중 특별보호제도를 통하여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정의유형은 다음과 같다:

---

<sup>39</sup> *Id.*, para. 126.

<sup>40</sup> *Id.*, para. 127.

<sup>41</sup> *Id.*, paras. 128-129.

<sup>42</sup> 캐나다; 독일; 스위스; 우루과이.

<sup>43</sup> 노르웨이 (Marketing Act)

<sup>44</sup> 스웨덴 (Act Containing Certain Provisions concerning the Marketing of Alcoholic Beverages); 미국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BATF) regulations).

<sup>45</sup> 일본 (Liquor Business Association and Measures for Securing Revenue from Liquor Tax).

- (i) TRIPS 협정 22.1 조의 정의에 따르는 경우: 지리적표시는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범위 또는 영토 내의 지역에서 유래하며,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그 지리적 원산지에서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경우에 하는 표시를 의미한다.
- (ii) 원산지명칭보호및원산지명칭의국제적등록에관한리스본협정 2 조의 정의에 따르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나라, 지역, 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는 상품이 유래된 장소, 지리적 환경 및 인적, 자연적 요소에서 필수적으로 기인하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 (iii) 개별 국가 특유의 정의: 많은 국가들이 TRIPS 협정과 리스본 협정의 정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들- 주로 상품이 지리적 원산지에서 유래하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 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그 정의에서, 상품이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 범주의 정의는 때로 보호대상이 특정 상품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 (2) 인정기준 및 절차

대부분의 경우 지리적표시에 대한 특별보호제도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사전인정(prior recognition)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전인정 절차는 비공식적인 절차에서부터 절차의 단계와 분야를 명확하게 해 놓은 공식적인 등록제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사전인정은 등록 신청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집행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지리적표시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제도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보통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별한 목적의 입법을 통해 지리적표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인정절차의 요건 없이 지리적표시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46</sup> 지리적표시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요구하는 법제에서는 보호에 대해

<sup>46</sup> 호주 (와인과 증류주); 독일 (상표법 127 조에 따른 일반상품); 한국 (와인 및 증류주); 리히텐슈타인 (상표법); 모로코 (지적재산보호에 관한 법 17/97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노르웨이 (마케팅법에 따른 와인과 증류주); 스웨덴(알코올음류의 마케팅에 관한 특정 규정을 포함하는 법에 따른 알코올음료); 스위스 (상표 및 출처표시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우루과이 (출처표시).

비교적 자세한 범주를 미리 정해 놓고 있는 반면에, 사전인정절차가 없는 법제에서는 지리적표시가 보호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관련법에 포함된 일반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에 따르게 된다.

WTO 회원국들이 제시한 인정방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i) 특별법에 의한 특정 지리적표시 인정.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인정은 일반적으로 동 법에서 미리 정해진 절차를 적용한 결과라기 보다 특정 절차 즉, 특정 지리적표시 인정에 관한 특별법 채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나타난다. 중앙정부의 입법기관에서 채택되기도 하고, 하급(sub-central) 중앙정부 입법 기관에 의해 채택되기도 한다.<sup>47</sup>

- (ii) 행정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아래 iii 항의 공식적인 등록절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제도에 그러한 결정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결정에 의한 인정.

그러한 행정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부처, 특별 행정관청 또는 법률상 기관 (statuary body)이 있다.<sup>48</sup>

- (iii) 정의의 내용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에 의해 특정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통하여 인정.

이러한 경우 생산자 자신이 상품 명세서, 생산 요건, 생산 범위를 결정하고,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는 기관은 동 등록신청이 법에서 정한 정의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리적표시의 인정 여부를 결정 할 재량권을 갖지 않는다. 등록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지리적표시로서 보호하기 위해 법에 정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형식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제출되었는지만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정보는 농업부나 다른 관할기관으로부터의 증명, 지리적 구역의 정의, 신청자가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생산자임을 입증하는 증명 등이 포함한다.<sup>49</sup>

<sup>47</sup> 호주 (와인); 독일 (와인 및 증류주).

<sup>48</sup> 그리스 (와인 및 증류주); 아일랜드 (와인 및 증류주); 슬로베니아 (와인); 스페인 (와인).

<sup>49</sup> EC (농산물 및 식료품); 한국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스위스 (농산물) 등.

## 1) 인정기준

### (a) 지역적 단위

지리적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단위는 회원국 별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TRIPS 협정 또는 리스본협정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WTO 회원국은 국가 또는 영토 및 그 영토 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지도상의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는 대륙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에 지역적 단위로 state, county, department, canton, district, commune, city, village, zone linear feature, locality, small group of such localities, 지역, 장소 또는 특정 장소, 거리명 뿐만 아니라 지도상의 표시 (indications on maps)도 지리적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단위에 포함된다.<sup>50</sup>

와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품질 특성을 기준으로 지역단위를 정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그 지역 내의 경작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 조건으로써 다른 지역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러한 특정 조건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연적 특징, 강, 등고선, 기타 물리적 또는 지형적 특징, 지리적 특징, 지질, 기후, 관개, 수확날짜 또는 수확량의 동질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품종의 선택, 인적 요소, 생산자의 기술 또는 공정, 해당 지역 사업자가 개발한 생산공정, 방법 및 준비과정 등도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요소들도 지역개발계획과 함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sup>51</sup>

### (b) 원산지 요건

대다수 WTO 회원국은 지리적표시가 부착된 상품이 사실상 그 지역에서 생산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거나, 생산자가 그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 국가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상품의 전체 생산과정 (원료, 가공, 준비)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 (EC의 PDO)
- 원재료 (포도)가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될 것 (호주 (포도), 캐나다 (와인)),

<sup>50</sup> WTO, *supra* note 21, para.33.

<sup>51</sup> *Id.*, para. 35.



EC (테이블와인), 슬로베니아 (농산품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스위스 (와인에 대한 AOC)). 사소한 부분이라면 외부 지역에서 반입된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경우도 있다.<sup>52</sup>

- 생산의 특정 단계(과정)가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 증류주의 예를 들면, 결정적인 단계 또는 상품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단계가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 (캐나다).
- 최소한 생산과정의 한 단계는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 (에콰도르, EC, 독일, 스위스, 터키 등).

### (c) 상품의 특징

지리적표시로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상품이 그 원산지와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서 특별한 품질이 가장 보편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생산방법과 상품 특징에 관한 요건이, 이러한 요건에 대한 감독제도와 함께, 보호받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특별보호가 상품의 품질 (또는 명성)과는 관계없이, 지리적표시가 특정 장소에서 생산된 상품을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호주 (와인), 뉴질랜드).<sup>53</sup>

#### - 품질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나타난 상품의 특징으로서 요구되는 품질의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확립된 품질” (established quality)<sup>54</sup>, “특정 특징” (particular quality)<sup>55</sup>, “주어진 특징” (given quality)<sup>56</sup>, “특정 특징” (specific quality)<sup>57</sup>, “특별한 품질적 특성” (special quality characteristics)<sup>58</sup>,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한 뛰어난 품질” (special outstanding quality distinguishing the product from generic products)<sup>59</sup>, 관련 상품에 대하여 법에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최상의 품질 또는 그러한 특정 기준이 없는 경우 관련 산업에서 관용적 사용을 통하여 결정된 최상의 품질<sup>60</sup>. 그러나

<sup>52</sup> 미국의 경우 원산지명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와인의 75%가 동 원산지에서 추출되어야 하고, 일부 주에서는 보다 높은 기준인 100%를 요구하기도 한다 (Oregon 주).

<sup>53</sup> *Id.*, para. 39.

<sup>54</sup> 일본.

<sup>55</sup> 호주 (와인).

<sup>56</sup> 호주 (증류주).

<sup>57</sup> EC(와인과 증류주를 제외한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PGI).

<sup>58</sup> EC(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와인).

<sup>59</sup> 독일 (증류주).

<sup>60</sup> 한국 (농산품 및 그 가공품).

이러한 다양한 표현의 ‘품질’이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갖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sup>61</sup>

#### - 명성

대다수의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요구되는 상품의 특징은 명성 (reputation)을 포함하고 있다. TRIPS 협정 22. 1조의 지리적표시 정의에 따르는 국가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리스본협정을 기초로 한 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sup>62</sup> 또한 명성에 대하여 다양한 수식어 예컨대, “일반적인” (general), “주어진” (given), “특정한” (specific) 등의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다.<sup>63</sup>

#### - 인적 요소

대부분 회원국들이 인적 요소가 원산지 관련 상품의 특징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가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다. 리스본협정의 정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인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 (체코, 독일, 스페인)들은 품질, 전통적 생산방식, 포도재배 관행과 생산, 준비, 경작방법 등에서 인적 요소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창조성이나, 인적 요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sup>64</sup>

#### (d) 상품의 특징과 지리적 원산지의 관련성

상품에 어떤 특징을 요하는 정의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될 것을 요구한다. TRIPS협정 22조 1항의 ‘본질적으로 기인한’ (essentially attributable)과 리스본협정 2조 ‘배타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기인한’ (due exclusively or essentially)에서 사용한 용어 외에도 ‘주로 기인한’ (mainly attributable)<sup>65</sup> 또는 ‘기인한’ (attributable)<sup>66</sup> 등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sup>67</sup>

<sup>61</sup> *Id.*, paras. 40-41.

<sup>62</sup> 그러나 “명성”의 개념은 리스본협정 2(2)조의 원산지국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sup>63</sup> WTO, *supra* note 21, paras.40 - 41.

<sup>64</sup> *Id.*, para. 44.

<sup>65</sup> 일본.

<sup>66</sup> 호주 (와인); EC (와인과 증류주를 제외한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PGI); 슬로베니아 (농산품과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sup>67</sup> WTO, *supra* note 21, para.45.

(e) 일반 대중의 인식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징으로 인해 어떤 상품을 지정하여 지리적표시로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다 (호주). 일반 대중의 인식은 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것은 보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적인 특징으로서 지리적표시보다는 상품 자체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한국, 미국 (와인),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에서는 적어도 제공하는 보호형태에 따라 지리적표시 자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보호의 중요한 또는 필요조건이 되기도 한다.<sup>68</sup>

(f) 관용어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요소들

많은 회원국들에서 관용어 (generic terms)가 된 용어는 지리적표시로 보호되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는 일단 사전인정을 받은 지리적표시는 관용어가 될 수 없으며, 에쿠아도르에서는 공중도덕 및 질서에 위배되거나 원산지, 상품의 특성 또는 생산방식에 대해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는 보호되지 않는다.<sup>69</sup>

2) 인정절차

(a) 절차개시

사전인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법인, 자연인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법적 이해관계를 입증한 경우 (멕시코), 지리적 영역에서 원재료, 생산, 상품의 준비, 생산과정에 참여한 자인 경우 (벨기에, 불가리아, 쿠바, 에콰도르, 헝가리, 모로코, 페루, 터키),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경우 (캐나다)에도 인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sup>70</sup>

많은 회원국에서 생산자단체 (producer associations)는 인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sup>71</sup> 예외적으로 자연인과 법인도 절차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EC,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 한국)도 있고, 절차가 반드시 동종업자 (the trade)에 의해 개시되어야 하는 경우 (프랑스)도 있다. 신청할 수 있는

<sup>68</sup> *Id.*, para. 46.

<sup>69</sup> *Id.*, paras. 47-48.

<sup>70</sup> *Id.*, para. 63.

<sup>71</sup> 호주 (와인제조자 또는 포도배출단체); 쿠바; 일본 (와인 및 증류주의 경우);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와인, 증류주의 경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와인, 증류주); 슬로베니아.

자로서 소비자단체를 포함시키는 경우 (터키)도 있다.<sup>72</sup>

일부 회원국에서는 공공기관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데 (캐나다, 쿠바, 에콰도르 아일랜드 (와인 및 증류주)), 지방정부기관 등에게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는 경우 (이태리, 쿠바, 폴란드, 스위스, 독일)도 있다. 지리적표시 인정에 대한 결정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 (호주, 에콰도르, 그리스, 멕시코 페루, 스페인 (와인 및 증류주), 영국 (와인 및 증류주), 스위스 (와인))도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 (불가리아, 쿠바, 체코공화국, 핀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박 공화국)도 있다.<sup>73</sup>

지리적표시에 대한 인정을 획득하는 생산자단체는 누구나 지리적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듯이, 지리적표시의 사용자일 뿐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체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쿠바). 프랑스, 멕시코, 페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관할권 내의 지리적표시는 국가소유이며,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 지리적표시는 개인에게는 부여될 수 없는 단체권 (collective right)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경우 (독일 (와인), 헝가리)도 있고,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지리적표시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 (포르투갈)도 있으며, 민간기관이 지리적표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미국)도 있다.<sup>74</sup>

#### (b) 관할기관

지리적표시의 인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할기관은 WTO 회원국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관할기관에 정부의 지적재산 또는 산업재산담당 관청, 농업부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상 기관, 기타 중앙정부관청, 입법기관, 특별법상 기관, 중앙정부의 하위기관 등이 있다.<sup>75</sup>

일부 회원국에서는 지리적표시의 인정에 관한 결정 과정에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와인에 대한 지리적표시 결정의 최초 판단은 지방정부 (독일, 스페인) 또는 주정부 (그리스, 스위스 (와인))차원에서 내린다. 농업부처가 지리적표시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한정하는 책임을 지고, 지리적표시 인정에 대한 판단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헝가리, 모로코).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

<sup>72</sup> WTO, *supra* note 21, *para.* 64.

<sup>73</sup> *Id.*, *para.* 65.

<sup>74</sup> *Id.*, *para.* 66.

<sup>75</sup> *Id.*, *para.* 67.

가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기관들의 역할을 함께 규정한 경우 (한국)와, 그렇지 않은 경우 (프랑스)도 있다.<sup>76</sup>

(c) 관할기관에 제출되어야 할 정보

WTO 회원국들에서 지리적표시로서 인정 받기 위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sup>77</sup>:

- 신청자의 성명, 주소, 거주지, 국적과 신청자의 법적 이해관계;
- 신청하고자 하는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로 지정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포함되는 상품의 목록; 중앙관청 또는 지방관할기관이 지리적표시와 관련상품에 대해 내린 선언;
- 상품의 원산지인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정의 또는 기술; 생산, 추출, 준비가 수행되는 지리적 영역. 지리적 특성과 행정적 경계를 고려하여 제한적일 것; 지리적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보나 문서; 지리적 경계구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현실적 증거; 구분된 지역이 인접지역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한 설명; 지리적 영역의 농경법상 특성; 법이나 특별 규정으로 정해진 지역; 식료품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지리적 명칭인 경우 재배지역의 정의;
- 상품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빙자료; 이름과 주무영업소 또는 그 지리적 명칭이 지리적표시를 구성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 지리적표시 관련상품이 생산되는 산업체의 위치; 신청자의 성명과 그 활동의 성격, 사업체가 지정된 영역 내에 존재함을 입증하는 문서;
- 신청하는 지리적표시에 의해 지정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기술 및 그 특징; 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본질적인 특징; 기술 정보와 문서자료 - 상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감각적 특성, 상품의 원료에 관한 설명 등; 원재료의 목록과 그 출처; 상품이 상품명세서에 기재된 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빙자료 또는 인증서;

---

<sup>76</sup> 프랑스의 경우 INAO (National Institute of Appellations of Origin), ONIVINS (The National Joint-Trade Wines Office)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CNLC (The National Commission of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 Labels and Certificates)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관련 부처와 *Conseil d'État* 모두가 지리적표시 인정에 기여한다. *Id.*, para. 68.

<sup>77</sup> *Id.*, para. 69.

-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및, 만약 있다면, 그 지역 특유의 방식에 대한 기술;
- 품질, 명성, 기타 특징에 대한 증빙; 품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 상품의 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명칭의 역사, 명칭의 적합성과 전통적 사용에 관한 설명; 원산지국가의 기준이나 규정에 관한 명세서항;
- 상품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국가;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공식적인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선언한 자료; 자체적 품질기준; 상품과 지리적 환경 또는 원산지와 관련된성에 대한 설명 및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기타 특징이 이 관련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지리적표시에 관련된 표지 (label)의 상세;
- 감독체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 상품이 생산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권한 기관의 이름;
- 대표자를 지명한 문서;
- 신청 비용 납부에 대한 증명;
- 기타 필요한 정보 (유효 규정, 해당 관청 등이 요구하는 경우);
- 신청자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d) 협의 및 이의신청절차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지리적표시 인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결정 과정 중 협의절차를 도입하거나 공식적인 이의제기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절차는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지리적표시의 인정 전에 있기도 하고, 인정 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sup>78</sup>

---

<sup>78</sup> *Id.*, para. 70.

프랑스와 독일 (와인)의 경우 상품 및 결정 권한의 유형에 따라서 공공기관 및 / 또는 민간기관,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협의기관에 관련 부처, 지방정부당국, 대학, 독립된 공공 및 민간 연구소 또는 전문가협회, 생산자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있다.<sup>79</sup>

이의제기절차에 관하여 일부 회원국들 (EC, 스위스, 미국)은 신청서가 접수된 직후에 신청서 또는 신청서의 핵심적 내용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가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공표한다. 다른 회원국들 (호주 (와인 또는 포도상품),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은 그러한 의견, 반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지리적표시 인정에 관한 초기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공표한다. 의견, 반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거의 없다. 의견, 반대, 이의신청의 제출 기간은 15 일 (뉴질랜드) 에서 6 개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까지 국가마다 다양하다. 지리적표시의 인정에 대한 의견, 반대,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일반적으로 인정의 최종 결정 전에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일부 국가들 (호주, EC, 프랑스) 에서는 동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80</sup>

인정에 반대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sup>81</sup>:

- 지리적표시의 보호 정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생산자단체에 대표성이 없는 경우
- 지리적 명칭의 인정이 이미 합법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전부 혹은 일부 동일한 명칭 또는 상표가 존재하여 그 상품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리적표시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 성질, 가공 방법이나 품질, 명성, 기타 특징에 관해 일반 대중을 오인시키는 경우
- 인정을 신청한 명칭이 관용어인 경우

---

<sup>79</sup> *Id.*, para. 71.

<sup>80</sup> *Id.*, para. 72.

<sup>81</sup> *Id.*, para. 73.

- 지리적표시가 도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제 3 자의 합법적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경우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일본, 슬로박공화국, 영국에는 이러한 이의신청제도가 없으나, 이들 중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소송, 무효소송 또는 기타 법정절차를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sup>82</sup>

### (3) 사용권 및 감독권

#### 1) 사용권자

일반적으로 지리적표시는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사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모두 사용권한이 인정된다, 즉, 원산지 기준과 지리적표시 사용을 위한 생산/상품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sup>83</sup> 이러한 사용권한이 다른 추가절차의 요건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별 사용자가 보통 지리적표시 인정에 책임있는 기관으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sup>84</sup> 일부의 경우 신청자가 사용권자로서 인정받기 전에 농업부처나 기타 행정기관의 증명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증명에는 신청자가 정당한 사용자임을 입증하거나, 사용권과 관련된 지리적 영역을 정의하는 증빙 등이 있다.<sup>85</sup> 지리적표시 사용을 원하는 생산자나 가공업자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한다 (네델란드). 지리적표시 인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이 특정 상품, 생산요건, 생산 지역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된 생산자 단체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표시 사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나 기관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sup>86</sup> 한국의 경우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생산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87</sup>

사용자가 각자 특정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절차를 채택하는 국가들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멕시코, 페루, 슬로박공화국)은, 사용자가 권한 부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국가들 (쿠바, 스페인, 스위스, 터키)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sup>82</sup> *Id.*, para. 74.

<sup>83</sup> 호주 (와인 및 포도상품), EC;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모로코 (와인);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테이블와인); 스위스; 영국; 우루과이.

<sup>84</sup> 불가리아; 독일 (품질와인); 헝가리; 멕시코; 스페인 (테이블와인을 제외한 상품); 베네주엘라.

<sup>85</sup> 벨기에; 루마니아.

<sup>86</sup> 한국 (농산물 및 그 가공품); 터키.

<sup>87</sup> WTO, *supra* note 21, para.82.



것이 사용에 대한 감시, 감독과 조합 비용에 대한 부담을 승낙하는 것이라고 본다.<sup>88</sup>

사용허가 (licensing) 에 관하여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 제도에서 인정된 지리적표시는 허가 될 수 없으며, 지리적표시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지리적표시에 부여된 권리는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개별 사용은 공공기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허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페루).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지리적표시가 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며(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법적으로 지리적표시의 사용허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막을 이유도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sup>89</sup>

## 2) 사용권의 기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리적표시는 정해진 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갱신이나 재확인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보호된다. 10 년마다 갱신이나 재확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 (쿠바, 에콰도르, 루마니아, 터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 양식이 필요없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쿠바, 에콰도르), 지리적표시 소유권자의 감독보고서 제출 (터키), 농업부처가 상품의 특징이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루마니아)<sup>90</sup>.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지리적표시 사용이 지리적표시의 지속적인 보호요건이라고 보지 않지만, 지리적표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각각 3 년, 5 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그 보호가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에콰도르, 폴란드). 지리적표시가 사용되지 않으면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간이 없더라도 자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고 한다 (캐나다). 지리적표시는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EC)<sup>91</sup>.

지리적표시를 수정 또는 종료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국 (호주 (와인 또는 포도상품), 네델란드, 스페인 (와인 및 증류주))도 있으나, 일부 회원국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등)은 지리적표시의 종료나 철회에 관한 절차를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주된 근거로는 모든 사용자에게 의한 사용 종료 또는 포기, 지리적표시의 최초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보장하

<sup>88</sup> *Id.*, para. 90.

<sup>89</sup> *Id.*, para. 91.

<sup>90</sup> *Id.*, para. 92.

<sup>91</sup> *Id.*, para. 93.

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리적표시가 신청서의 내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기타 관할기관이 지리적표시 사용과 상품 지정에 관하여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후, 이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등이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신청서가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고 한다. 독일 (와인)의 경우 인정된 지리적표시에서 지정하는 생산조건과 생산지역이 인정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지리적표시가 수정되도록, 거래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법적 선행요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면, 변경이나 삭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예컨대, 멕시코와 에콰도르의 경우 지리적표시가 인정되는 요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sup>92</sup>

지리적표시 사용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한 경우 10 년마다 갱신하는 경우도 있다 (쿠바, 멕시코, 페루, 루마니아, 베네주엘라). 대부분 회원국에서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주는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자국의 원산지명칭 (*denominaciones de origen*) 제도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한다. 지리적표시의 사용상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의 철회와 관련하여 예컨대, 그러한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진 경우, 개인의 사용이 지리적표시 사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의한 포기 (*renunciation*) 등을 근거로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철회하는 경우 (쿠바, 체코공화국, 페루, 루마니아)도 있다.<sup>93</sup>

관용어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경우 특정 지리적표시는 관용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일단 지리적표시로 인정이 되면 관용어가 되지 않는다. 포르투갈의 경우 포도채배 상품의 지리적표시는 관용어가 될 수 없지만,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가 관용어가 되면 소멸의 근거가 된다. 미국의 경우 상표로 등록된 지리적표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관용어가 되거나, 지리적표시가 부당하게 등록된 경우에는 제 3 자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sup>94</sup>

### 3) 감독권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지리적표시 사용 요건의 준수여부는 감독의 대상이 되며, 보통 공공기관이 감독을 수행한다. 그러한 기관으로 특별 행정기관 또는 법률상 기관; 정부부처; 산업재산관청; 기타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 승인받은 민간 또는 공

<sup>92</sup> *Id.*, para. 94.

<sup>93</sup> *Id.*, para. 95.

<sup>94</sup> *Id.*, para. 96.

공 인증단체; 지역 또는 지방 정부기관; 생산자 단체와 행정관청 (공동)이 있다.<sup>95</sup>

이러한 감독기능은 품질과 품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상품 조건과 생산의 현장조사 (정량검토, 맛, 라벨, 포장)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 독일 (증류주), 포르투갈). 사용자는 지리적표시의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이 화학적, 감각적 분석을 토대로 한 각종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요구조건을 감독해야 한다 (독일, 스페인 (특정지역의 품질와인)). 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은 지리적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소송을 개시할 권한 또는 의무를 가지거나 (벨기에), 감독기관이 그러한 소송의 개시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두는 경우 (오스트리아, 프랑스, 모로코)도 있다. 직권강제절차와 관련하여 지리적표시가 허위, 부당,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책임기관이 적극 감독한다.<sup>96</sup>

#### (4) 권리구제제도

일반적으로 특별 보호제도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영업관행에 관한 법령이나 일반 상표법상 보호(단체표장/증명표장/인증마크 포함)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의 무단사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sup>97</sup>:

- 인정된 지리적표시가 그 사용에 대한 아무런 심사 없이 사용권한 없는 자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등). 이러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실제 원산지가 명시된 경우나, 지리적표시가 번역되는 경우 또는 ‘방법, 타입, 스타일, 유사하게’ 등의 표현과 같이 쓰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캐나다, 멕시코, 폴란드 등)
- 허위, 부정확한 사용, 지정된 장소와 관련되지 않은 사용 (EC (와인), 일본, 미국 (BATF), 노르웨이 등)
- 오인, 기만 행위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의 지리적표시에 관하여 허위의 인상 (false impression)을 초래하는 경우 (EC (와인), 독일 (와인), 미국 (BATF), 핀란드 등). 이러한 권리는 지리적표시가 위에서 분류한 경우처럼 사실상 타당한 용어와 함께 쓰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EC(와인), 독일

<sup>95</sup> *Id.*, para.97.

<sup>96</sup> *Id.*, paras.98 - 99.

<sup>97</sup> *Id.*, para.106.

(와인), 모로코 등). 이 권리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사실상 허위는 아니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오용, 모방, 원용의 경우 (EC, 체코공화국, 불가리아, 스위스 등)

특정한 사용 유형을 기술한 조항을 포함시킨 법령도 있다. 예를 들면, 광고 (독일 (와인)); 표지 (label, 슬로베니아); 허위의 지리적표시 부착 (프랑스, 한국, 터키); 진정한 지리적표시를 제거한 경우 (터키); 지리적표시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에 그 지리적표시를 이용하여 가공, 판매하는 경우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sup>98</sup>.

### 1) 직권소송

일부 회원국에서는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지리적표시의 오용에 관한 집행절차는 직권 (*ex officio*)으로 개시될 수 있다.<sup>99</sup>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감독활동의 결과로서, 감독기관 자체에 의해 또는 그 요청에 따라 다른 공공관청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은 고발 (*complaint*)을 기초하여 직권으로 할 수 있다.<sup>100</sup> 직권소송 (*ex officio action*)은 지리적표시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더욱 강조되며, 사인에 의한 직접상환청구 (*recourse*)도 가능하다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sup>101</sup>. 직권소송은 형사소송에서도 가능하다 (체코공화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sup>102</sup>.

일부 회원국에서 행정절차는 지리적표시의 특별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절차에 추가적으로 존재한다.<sup>103</sup> 음부즈맨, 농업관청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고발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하여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EC 일부 국가). 행정관청에 의한 절차는 장관과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 특별보호를 시행하는 법제에서 일본만이 유일한 집행절차를 제시하는데, 대장성 대신 (Finance Minister)이 생산자나

<sup>98</sup> *Id.*, para. 107.

<sup>99</sup> 호주 (와인 또는 포도상품에 대해서는 Australian Wine and Brandy Corporation, 와인 또는 포도상품을 제외한 증류주에 대해서는 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 와 같은 관련당국); 벨기에 (economic inspection authority); 한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sup>100</sup> 오스트리아, 벨기에, EC, 프랑스, 영국.

<sup>101</sup> WTO, *supra* note 21, para. 130.

<sup>102</sup> *Id.*, para. 131.

<sup>103</sup> 호주 (증류주에 대해서는 Administrative Appeals Board); 쿠바 (Cub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등.

판매자에게 문제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른 회원국들 (페루, 미국 등)은 와인과 증류주에 관하여 철저한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재심 (judicial review)의 대상이 된다.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 행정관청이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역할을 하거나 (호주 (와인 및 브랜디)), 다른 기관에서 행하는 소송에서 조사 및 권고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멕시코 IMPI의 형사소송에서의 역할)<sup>104</sup>.

## 2) 민사 소송

민사소송 (private action)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체가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광범위한 이해관계당사자 (EC, 프랑스, 그리스, 스위스 등); 생산자 또는 생산자 그룹 및 영업상 이해관계자 (프랑스, 이태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터키); 소비자 이해를 대변하는 그룹 (호주, 스위스, 터키). 그러나 특별 보호제도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소 생산자의 이익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소송권자로서 정당한 (위임받은/등록된) 사용자 또는 소유자만 인정하고 있다.<sup>105</sup>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체코공화국, 멕시코, 헝가리 등). 그러나 형사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페루)도 있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 형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를 행위의 악의성과 그 악의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기도 한다.<sup>106</sup>

## 3) 구제수단

민사구제방법으로 주로 제시된 것은 금지명령<sup>107</sup> 과 손해배상이다.<sup>108</sup> 이밖에 선언적 판결<sup>109</sup>, 상품의 출처에 대한 공표명령<sup>110</sup>, 몰수 및 폐기<sup>111</sup>, 수익 몰수,<sup>112</sup> 판결의 발표<sup>113</sup> 가 시행된다. 일부 회원국 (호주, 벨기에)은

<sup>104</sup> WTO, *supra* note 21, *para.* 133.

<sup>105</sup> *Id.*, *para.* 132.

<sup>106</sup> *Id.*, *para.* 134.

<sup>107</sup> 호주, 캐나다, EC; 뉴질랜드.

<sup>108</sup> 캐나다, EC.

<sup>109</sup> 스위스.

<sup>110</sup> 스위스.

<sup>111</sup> 불가리아, 스위스.

<sup>112</sup> 벨기에.

잠정조치와 한시적 금지명령을 시행하고 있다.<sup>114</sup>

형사적 제재에는 보통 징역과 벌금이 있다.<sup>115</sup> 행정절차의 주된 구제방법에는 침해중단명령과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sup>116</sup>, 벌금<sup>117</sup>, 관리감독기능 강화<sup>118</sup> 및 징계결정의 발표<sup>119</sup>가 있다.

#### 4. 사업관행에 관한 법 등에 의한 간접보호

##### (1) 개관

사업관행에 관한 법은 지리적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업관행을 금지하는 법에 의한 보호로서 지리적표시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직접적인 보호수단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간접적 보호는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사칭통용 (passing off)에 관한 법에 의한다. 이러한 법은 지리적표시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며, 이들 법의 관심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특정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소비자보호, 거래 명세서상 (trade descriptions), 식품표준 등에 관한 법의 일반적 기준에 위배되는가 여부이다.

일부 회원국은 이 분야의 일반 법령 하에서 지리적표시가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소비자보호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해당 지리적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관용어가 되었다면 지리적표시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광고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시키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광고에 나타난 상품의 원산지 표시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sup>120</sup>

---

<sup>113</sup> 스위스.

<sup>114</sup> WTO, *supra* note 21, *para.* 135.

<sup>115</sup> 불가리아, 독일, 헝가리, 한국, 모로코, 폴란드, 스페인, 미국, 스위스 등.

<sup>116</sup> EC.

<sup>117</sup> 독일, 일본, 네델란드, 터키.

<sup>118</sup> 네델란드.

<sup>119</sup> 네델란드.

<sup>120</sup> WTO, *supra* note 21, *para.* 17.

독일의 경우 부당 또는 오인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한 보호는 원산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뿐만 아니라,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깃발, 상징, 그림 등과 같이 원산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칭통용” 구제가 가능한 국가 (캐나다, 홍콩 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원고가 일반 대중에게 충분한 신용을 쌓아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피고가 이러한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sup>121</sup>

## (2) 인정기준 및 절차

사업관행에 관한 법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 부정경쟁방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관련 법에는 지리적표시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특별한 사전인정절차가 없다.<sup>122</sup>

## (3) 사용권 및 감독권

모든 국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나 부정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과실 없는 일반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23</sup> 즉,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누구든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영업관행에 관한 법은 지리적표시의 사용권의 존속기간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sup>124</sup>

## (4) 권리구제제도

일반적으로 영업관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제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sup>125</sup>:

- 선관행 (good practice) 또는 정직한 상관습에 반하는 경우. 이는 다음의 다른 유형의 행위들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sup>121</sup> *Id.*, para.18.

<sup>122</sup> *Id.*, para. 55.

<sup>123</sup> 독일, 스웨덴.

<sup>124</sup> WTO, *supra* note 21, para. 78.

<sup>125</sup> *Id.*, para.103.

- 상품과 서비스의 원산지와 특성에 관하여 일반대중을 오인시키거나, 기만하는 행위.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주장 (상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와 특성에 관한 것 포함);
-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성과 신뢰도에 편승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권한 없는 자가 명성과 신용을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기재되거나, ‘종류의, 타입의, 스타일, 모방한’ (kind, type, style, imitation) 등의 단어가 원산지표시와 함께 사용된 경우).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일반대중을 오인, 기만하는 행위로부터의 보호는 보통 명칭(common name)을 사용하거나, 흔히 사용되는 표시를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본)도 있다.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영업관행 관련법에 근거한 집행절차에는 일반소송절차가 적용된다. 일부 회원국에서 행정기관은 강제절차, 고소장 접수, 사실 조사, 그리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구제수단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행정기관에는 음부즈맨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다른 행정관청<sup>126</sup>, 장관 (터키) 등이 있다. 그러한 행정적 구제수단은 법원에 항소대상이 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sup>127</sup>

### 1) 직권소송

영업관행에 관한 법의 강제집행절차는, 자체적으로 또는 고발을 근거로 주로 공공 또는 행정기관이 개시한다. 많은 회원국들에서 이러한 유권기관들은 지리적표시 사용의 거래관행, 소비자보호, 시장감독, 식품검수 등에 관해 책임이 있

<sup>126</sup> 호주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불가리아 (Competition Protection Committee); 아이슬란드 (Competition Authorities); 리투아니아 (Competition Council); 네델란드 (Health Protection Inspectorate (Government Food Inspection Service)); 노르웨이 (Market Council).

<sup>127</sup> WTO, *supra* note 21, *paras.* 121-122.



기 때문에 직권소송은 감독기능으로부터 비롯된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영국)<sup>128</sup>.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sup>129</sup>: 정부기관<sup>130</sup>; 옴부즈맨<sup>131</sup>; 경쟁당국<sup>132</sup>; 다른 행정기관 (예컨대 소비자 및 식품보호 또는 관리감독기관).<sup>133</sup>

형사소송은 보통 검사가 그 분야의 담당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호주, 덴마크, 프랑스). 한편, 다른 행정기관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호주, 프랑스). 독일의 경우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소추권에 의해 직권소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공공이익이 없는 한 요청에 의해 기소된다.<sup>134</sup>

## 2)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영업관행 관련법을 강제하는 법적 소송은 사적 당사자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WTO회원국에서 사적 당사자로 언급된 자는 다음과 같다<sup>135</sup>:

-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여기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해관계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생산자 또는 영업이익을 대변하는 자 (경쟁자, 생산자, 전문가그룹, 책임자, 거래 또는 영업조합, 사업자 위원회 또는 상인위원회 등);
-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는 자 (소비자 개인이나 다수의 소비자들 또는 소비자단체).

<sup>128</sup> *Id.*, para.116.

<sup>129</sup> WTO, *supra* note 21, para. 117.

<sup>130</sup> 벨기에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the Ministry of Economy); 터키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sup>131</sup>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부 회원국에서는 옴부즈맨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up>132</sup> 호주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아이슬란드 (Competition Authorities).

<sup>133</sup> 핀란드 (National Food Administration, National Product Control Agency for Welfare and Health, and provincial State Offices); 네델란드 (Health Protection Inspectorate (Government Food Inspection Service); 노르웨이 (Market Council); 영국 (Local weights and measures authorities).

<sup>134</sup> *Id.*, para.118.

<sup>135</sup> *Id.*, para.119.

### 3) 구제수단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금지명령 (예를 들면 부정경쟁행위나 원산지에 대해 오인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방지, 금지, 중단시키는 것, 핀란드, 독일, 한국, 일본 등); 잠정조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손해배상 (독일, 일본, 한국 등); 몰수 (리히텐슈타인);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는 상품의 폐기 (한국, 리히텐슈타인); 부정경쟁행위과정에 이용된 시설물 제거 (한국, 리히텐슈타인); 결정 내용의 공고 (룩셈부르크, 한국);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과거에 제공했던 불확실한 정보를 부인하거나, 책임 내용 및 그 상품에 관해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의무 부과 (리히텐슈타인); 가격 인하 및 계약의 무효 (터키, 소비자가 결부된 경우)<sup>136</sup>.

일부 회원국에서 구제조치는 행정절차로서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침해 중단명령 (핀란드, 한국);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 (스웨덴, 한국); 벌금 (한국, 네델란드, 터키)이 있다<sup>137</sup>.

형사소송절차를 두고 있는 회원국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가장 보편적인 제재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벌금 (노르웨이), 징역 (헝가리), 또는 양자 모두 (덴마크, 독일, 일본, 홍콩, 스위스 등);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보상 (프랑스, 스웨덴); 압류 또는 상품 몰수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권리 박탈 (아이슬랜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영업정지(또는 폐쇄); 거래자격 박탈<sup>138</sup>.

## 5. 상표법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와의 관계

### (1) 개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지리적표시로 구성되거나 또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표지의 상표 등록을 법률로써 방지 하고자 한다. 즉, 일반적으로 이미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표시를 구성하는 표지를 상표로 등록신청 하는 경우 그러한 지리적표시는 상표 등록으로부터 보호된다. 많은 국가들이 상표등록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회

<sup>136</sup> *Id.*, para.123.

<sup>137</sup> *Id.*, para.124.

<sup>138</sup> *Id.*, para.125.

원국들이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나 상품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 혼동, 기만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그 명성과 주지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지리적표시로만 구성 또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sup>139</sup> 지리적표시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표지의 경우 상표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원산지, 성질, 품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sup>140</sup>

일부 회원국 (EC, 프랑스, 독일, 한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상표등록을 원하는 표지가 이미 보호대상인 지리적표시 또는 거래상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인 경우, 위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지리적표시가 그러한 상표등록으로부터 보호 받는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그러한 표지는 본래부터 차별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표지가 사용을 통하여 차별성을 획득한 경우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창의성이 있는 경우 (스위스), 표지를 통해 본래부터 신청자의 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호주), 외국의 지리적 명칭의 경우 원산지국에서 등록되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를 대중에게 오인시키지 않은 경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는 예외이다.

일부 국가 (호주, 덴마크, 홍콩, 프랑스 등)에서는, 상표의 사용이 지리적표시에 서 지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Courvoisier Le Cognac de Napoleon”은 프랑스에서 생산된 코냑 (Cognac)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등록신청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상표로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덴마크, 아이슬란드)도 있다.

만일 상표등록이 위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후에 규정과 모순이 생긴다면, 상표등록이 철회,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지리적표시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록거절을 위한 지적재산관청의 직권조치 (*ex officio action*)<sup>141</sup>;
- 지적재산관청의 신청 사실 발표 후 제기되는 이의신청절차<sup>142</sup>;

<sup>139</sup> 호주, EC, 프랑스, 독일, 일본 (와인 및 증류주), 한국, 미국, 영국, 스위스 등.

<sup>140</sup> 호주, 한국, 모로코.

<sup>141</sup> 호주, 덴마크, 홍콩, 일본, 한국, 영국.

<sup>142</sup> 호주, 홍콩, 미국.

- 등록된 상표의 무효, 취소, 삭제, 수정을 위한 등록 후 절차<sup>143</sup>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절차인 반면, 등록된 상표의 취소절차는 보통 법원에서 개시된다. 미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지적재산관청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상표권과 지리적표시 등록과의 충돌

상표의 등록신청과 지리적표시의 인정 사이에 또는 선행 상표권과 지리적표시의 인정신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해결이 문제가 된다. EC의 경우 지리적표시 공표일 이후에 그 인정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위해 제출된 상표신청은 거절되며, 공표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는 무효가 된다. 신청날짜의 선순위를 기준으로 동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 (에스토니아, 헝가리)도 있다.

호주,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지리적표시의 인정 신청은 그 충돌을 이유로 거절된다. 헝가리의 경우 동 원칙이, 인정을 원하는 지리적표시가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동일하고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상표의 유명성이 충돌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고려된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지리적표시가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된다:

- 상표의 지속성 정도 (프랑스, 스페인)<sup>144</sup>;
-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책임;
- 상표의 명성, 주지성, 지속성에 비추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상품의 진정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리적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EC, 스위스, 헝가리, 터키);

<sup>143</sup> 호주, EC, 한국, 미국 등.

<sup>144</sup> 프랑스, 스페인. EC 와인 규칙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와인에 대한 브랜드네임은 동 상표가 원 보유자의 신분과 상응하는 경우, 지리적표시의 공식적 인정 전에 최소한 25년 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등록 이후로 계속 중단 없이 실제로 사용되어 온 경우 그러한 상표에 대한 권리가 보존된다.

- 상표의 명성, 차별성에 해를 입히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후발 표지의 사용이 기존상표의 차별성이나 유명성에 불리하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다른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인정이 거절된다 (헝가리);
- 공존. 어떤 상황에서는 지리적표시의 인정이 기존 상표의 지속적 사용과 공존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등록, 신청 또는 선의의 상표사용이 전제조건이 되며 (EC, 뉴질랜드, 터키), 그밖에 지리적표시 사용권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스위스)도 있다.

일부 지리적표시의 인정절차는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충돌하는 선행상표 소유자 (네델란드) 또는 선행 산업재산권자 (루마니아)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가 기존 상표, 다른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과 충돌하는 경우 지리적표시 인정 이후에도 취소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헝가리)도 있다.

## 제2장.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제도

### I. 개관

TRIPS 협정 23.4 조<sup>145</sup>는 와인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와인의 지리적표시 통고 및 등록을 위한 다자등록제도 확립에 관한 협상이 TRIPS 이사회에서 수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 18항<sup>146</sup>에서는 TRIPS 협정 23.4조에 근거하여 제 5차 각료회의까지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의 다자적 통고 및 등록에 관한 다자제도의 확립을 위한 협상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다자등록제도를 통하여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법적 효과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여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 5차 각료회의 시한까지 동 사안에 대한 협상이 종결되지 못하였다.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도하작업프로그램<sup>147</sup>에 따라 동 협상은 2005년 12월 이전에 개최될 제 6차 각료회의까지 계속 진행된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회원국은 다자등록제도를 통하여 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각 회원국내에서의 보호여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자율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EC, 헝가리, 터키 등의 회원국은 일단 다자등록제도를 통하여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동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회원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적으로 지리적표시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왔고,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다자등록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

<sup>145</sup> TRIPS 협정 23.4 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negotiations shall be undertaken in the Council for TRIP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eligible for protection in those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system.”

<sup>146</sup> 도하각료선언문 18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8. With a view to completing the work started in the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ncil for TRIP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3.4, we agree to negotiat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by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e note that issue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to products other than wines and spirits will be addressed in the Council for TRIPS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sup>147</sup> WTO, Doha Work Programme: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 August 2004).

자율보호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TRIPS 협정 23.4 조에 따르면 다자등록제도의 확립은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각 회원국내에서 지리적표시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자등록제도에 의한 강제적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TRIPS 협정에 없는 보호로서, 즉 법적 근거가 없는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자등록제도의 이행의무는 유럽국가를 제외한 회원국에게는 국내법 제정 또는 개정 및 그 운영에 있어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자등록제도를 통하여 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의무보호를 주장하는 회원국은 TRIPS 협정 23.4 조에서 명시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등록시스템에 구속력이 있어야 동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제도에 관한 입장]

	자율보호안	의무보호안
다자등록제도의 성격	원칙적으로 지리적표시 보호는 각 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  지리적표시 목록을 WTO 사무국에 통보, DB 구축하여 각 회원국의 지리적표시보호 결정에 참조	다자등록제도를 통하여 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동 제도에 참여하는 회원국 국내에서의 보호의무를 부과
통보	6 개월 또는 1 년 단위	등록제도 발효시 또는 지리적표시 변동시
참여/탈퇴	자율적 참여 및 탈퇴	자율적 참여, 단, 참여 이후에는 지리적표시보호의무 발생

이의처리	국내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WTO 사무국에 통보	양자협의 후 실패하면 다자적 중재를 통하여 해결
------	---------------------------------	----------------------------

## II. WTO DDA 협상 초안의 주요 내용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통고 및 다자등록제도에 관한 협상은 TRIPS 이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다. 다자등록제도 확립을 위한 주요 제안서는 미국을 포함한 17 개국 공동안, EC 안, 헝가리 안이며, 이들 제안서를 토대로 2003 년 4 월 의장 초안<sup>148</sup> 이 회람되었다. 의장안은 회원국간의 이견을 반영하여, 자율적 보호안을 선호하는 미국 등의 회원국 입장을 반영한 Option A, 의모보호안을 선호하는 EC 및 헝가리안을 반영한 Option B 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록절차 중 이의신청의 경우 중재절차 없이 등록하는 EC 안을 반영한 Option B1 과 중재절차를 규정한 헝가리안이 반영된 Option B2 내용을 포함한다. 동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통고

회원국은 등록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에 지리적표시를 통고하여야 한다. 각 지리적표시는 와인 또는 증류주를 식별하고, TRIPS 협정 22.1 조에 규정된 정의를 충족시키며, 자국의 영토내에서 보호되고, 사용되어 온 지리적표시여야 한다.

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원산지국의 언어로 된 지리적표시. 라틴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로 된 지리적표시의 경우 동 언어의 음운을 사용한 라틴문자로의 전환이 통고에 포함되어야 함;
- 원산지국에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통고되는 언어로의 지리적표시의 이용 가능한 번역;

<sup>148</sup> WTO, Draft Text of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Job (02)/75 (16 April 2003).



- 통고국에서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법적 문서에 대한 인용. 예컨대, 적용 가능한 경우 통고하는 회원국에서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수를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법률 또는 행정문서 또는 관련 사법결정; 당해 법적 문서가 이미 WTO 에 통고되었거나 TRIPS 이사회 문서로서 회람된 경우에는 TRIPS 이사회 관련 문서 인용.
- 이용 가능한 경우, 지리적표시가 통고하는 회원국에서 최초로 보호를 받은 날짜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현재 부여된 보호의 만료날짜; 그리고
- 지리적표시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와인과 증류주의 원산지의 지리적 범위,

통고하는 회원국이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데 유용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모든 정보, 예컨대, 언어로 된 지리적표시의 번역제안, 통고하는 회원국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사용권한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모든 양자적, 지역적 및 다자적 협정.

통고되는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이며, 통고는 지리적표시 자체는 예외로 하고, 관장기관에 의해 다른 두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2) 등록

통고된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ption A 는 미국안, Option B 는 EC 와 헝가리 안을 의미함. Option B2 는 EC 와 다른 헝가리안을 별도 표기함]

	Option A	Option B
이의신청	지리적표시 통고 접수후 즉시 통고된 지리적표시를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명부에 등록. 이의제기 절차 없음.	지리적표시 통고가 회람되고 공표된 날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의 근거로는 (a) 통고된 지리적표시가 TRIPS 협정 22.1 조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b) 통고된 지리적표시가 TRIPS 협정 22.4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제로 원산지로 식별되는 영토, 지방 또는 지역에 관하여 문자적으로 진실이라

		<p>할 지라도 허위로 대중에게 타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대표하는 경우; (c)통고된 지리적표시가 TRIPS 협정 22.6 조에 규정된 대로 WTO 협정 발효일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회원국 내에서 이미 와인 또는 증류주의 보통명사로서 관용어와 동일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회원국 내에서 존재하는 포도의 품종의 관용어와 동일한 경우;</p> <p>[Option B2:</p> <p>(d) 통고된 지리적표시가 TRIPS 협정 24.4 조에 규정된 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회원국 영토 내에서 국민 또는 거주민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p> <p>(e) TRIPS 협정 24.5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고된 지리적표시가 적용되어 온 상표 또는 선의로 등록된 지리적표시 또는 선의로 사용을 통하여 권리가 획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p> <p>통고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18 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통고한 회원국과 이의신청을 제기한 회원국은 동 기간의 만료 전에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여야 함.</p> <p>[Option B1:</p> <p>18 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등록기관은 등록명부에 통고된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야 함. 통고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제기가 등록시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회원국에 의해 철회되지 않으면 동 등록은 이의신청을 언급하는 주석을 수반하여야 함. 지리적표시가 등록된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회원국에 의해 동 이의신청이 철회된 경우,</p>
--	--	---

		<p>등록기관은 등록명부에 그러한 철회를 기록하여야 함.]</p> <p>[Option B2:</p> <p>18 개월의 기간만료시점까지 통고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기된 이의신청이 철회된 경우, 등록기관은 동 기간의 만료시점에 지리적표시를 등록명부에 등록하여야 함.</p> <p>통고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18 개월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리고 협상이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의 철회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동 통고 및 이의신청은 다자중재에 회부됨.</p> <p>다자중재에서 이의신청의 유효성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록기관은 지리적표시를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음.</p> <p>다자중재에서 이의신청의 유효성을 지지한 경우 등록기관은 이의신청이 para.3.1.2(a) 또는 (b) 이의신청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고 동 지리적표시를 등록부에 기재해서는 안됨.</p> <p>이의신청이 para. 3.1.2 (c) 또는 (d)에 언급된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동 지리적표시를 이의신청 및 그 결정을 언급한 주석과 함께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음.</p>
--	--	---

<p>지리적표시의 등록</p>	<p>지리적표시의 등록은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형태로 모든 회원국과 대중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p> <p>지리적표시의 등록내용은 지리적표시 자체; 통고회원국; 지리적표시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에 대한 인용 통지국가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개시일과 현재 부여되는 보호의 만료일;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관한 주석; 그리고] 동 제도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등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p>
------------------	--

(3) 참여하는 회원국에서의 법적 효과

	Option A	Option B
법적 효과	<p>각 참여하는 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라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때 등록명부를 참조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등록명부로부터 획득되는 정보를 고려하여야 함.</p>	<p>[Optin B1: 지리적표시 통고 후 18 개월 기간 내에 통고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참여 회원국 또는 18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철회한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para.3.1.2(a),(b) 및 (c)에 언급된 근거로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거절해서는 안됨.]</p> <p>[Option B2: 참여회원국은 지리적표시가 TRIPS 협정 22.1 조에 규정된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부합되고, TRIPS 협정 22.4 조에 의한 보호 부적격이 아니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으로서 이해당사자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p> <p>이의신청이 제기된 주석에 언급되지 않은 참여회원국은, 지리적표시가 TRIPS 협정 24 조 4 항 - 6 항에 언급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p>

#### (4) 통고 및 등록의 변경

참여 회원국은 언제든지 자국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고의 변경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에 관해서는 초안의 통고 및 등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고의 변경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5) 철회

참여 회원국은 언제든지 자국의 통고를 철회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가 통고국의 영토 내에서 보호되고, 그 영토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통고국은 관련 통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모든 철회는 담당기관에 통고되어야 한다. 담당기관은 지리적표시의 철회통고를 수령한 후에 즉시 모든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키고, 이를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6) 연락처

참여 회원국은 자국의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설명이나 정보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연락처 (contact point)를 담당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비회원국역시 국내연락처를 담당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담당기관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통고를 회람시키고,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III. 한국에 대한 시사점

와인 및 증류주의 다자등록제도를 통한 의무보호안에 따르면, 동 다자체제에 참여한 회원국에서는 등록된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가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한국의 경우 1999년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세 건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 자체가 미진한 실정, 그리고 그동안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명성을 축적, 홍보, 보호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리적표시가 별로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현재 다자적 차원에서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보호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원산지명칭의 국제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리스본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지리적표시가 지적재산권의 일부임에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농산물의 품질제고이다. 농업정책상, 특히 농산물 분야의 수입자유화 및 중국으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국내 농산물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우수한 지리적표시 품목들이 더 많이 개발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리적표시제도가 국내에서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WTO DDA 에서 논의되고 있는 와인 및 증류주의 통고 및 다자등록제도를 통한 이들 상품의 지리적표시의 의무보호안은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제 3 장 외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I. EU

##### 1. 지리적표시제도 개관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상품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되는 지리적표시 보호 관련 법 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sup>149</sup>;

[표 3. EU의 지리적표시 관련 법제도]

상품	관련 법	내용
농산품 및 식료품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농산품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2/92	농산품 및 식료품의 특성 인증에 관한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1848/93	No. 2082/92 적용에 관한 시행세칙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037/93	No. 2081/92 적용에 관한 시행세칙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107/96	지리적표시와 원산지명칭의 등록에 관한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400/96	No. 2081/92 에 의거하여 등록된 PDO/PGI 목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301/97	No 2082/92 에 의거하여 등록된 TSG 목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83/2004	상품 명세서에 관한 No. 2081/92 의 시행세칙

<sup>149</sup> OECD, Appellation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in OECD Member Countries: Economic and Legal Implications, COM/AGR/APM/TD/WP (2000)15/FINAL, p.50 참조.



	Council Directive No. 79/112/EEC (1978.12.18)	제 2(a)(i)조에서는 표시 및 표시의 사용방법이 식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Directive (EEC) No. 84/450	2 조, 3 조, 4 조는 지리적/상업적 원산지에 대한 오인, 기만 광고 금지 및 이에 대한 회원국의 법적조치를 규정
와인 및 증류주	* Regulation No. 823/87 (1.3 조); Regulation (EEC) No. 822/87 (72.2 조); Regulation (EEC) No.23 92/89 (2.3 (i)조)	* 와인 및 증류주 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직권보호를 규정
	Council Regulation (EEC) No. 822/87	회원국이 테이블와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내용 규정
	Council Regulation (EEC) No.823/87	회원국이 VQPRD (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의 인정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3290/94, Annex XVI	포도주시장기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TRIPS 협정 23.1 조의 이행규정으로서 72a 조를 추가.
	Council Regulation (EEC) No.1576/89 5 조; Council Regulation (EEC) No.1601/91 6 조	증류주, 아로마 와인에 관한 지리적표시 사용에 대한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3378/94	증류주와 아로마 와인에 관한 조항 개정.
	Council Regulation (EEC) No. 2392/89	포도주와 포도의 표시와 기술에 관한 일반규정

(1) 와인 및 증류주

공동체 차원에서 와인의 지리적표시 인정은 등록뿐 아니라 생산회원국에 의한 인정 및 EU 관보 (Official Journal: OJ)에의 공표를 요하며, 이러한 제도는 직권보호를 제공한다.<sup>150</sup> 이에 추가하여 이사회규칙 823/87 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와인의 인정을 위하여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sup>151</sup>

<sup>150</sup> Regulation No.823/87 1.3 조; Regulation (EEC) No.822/87 72.2 조; Regulation (EEC) No. 2392/89 2.3 조.

<sup>151</sup> WTO, IP/C/W/117/Add.10, p.2, Q1 답변.

증류주 드링크 및 향이 가미된 와인 (aromatized wines)의 경우 이사회규칙 1576/89 (5 조)와 이사회규칙 1601/91 (6 조)는 각각 증류주 드링크 또는 향이 가미된 공동체산 와인의 지리적표시 사용과 관련한 일반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증류주 드링크 및 향이 가미된 와인 목록은 동 규칙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동 규칙들은 이사회규칙 3378/94 에 의해 TRIPS 협정 23.1 조 이행을 위하여 개정되었다.<sup>152</sup>

WTO 협정 이행차원에서 이사회규칙 3288/94 는 공동체상표에 관한 이사회규칙 40/94 를 개정하였는데, 특히 상표등록 거절의 절대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동 규칙 7(1)조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은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는 동 와인 및 증류주가 그러한 원산지를 갖지 않은 경우에 거절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sup>153</sup>

와인과 관련하여 이사회규칙 2392/89 40.1 조는 와인 및 포도액 (musts)의 기술 및 소개와 그러한 상품의 모든 형태의 광고는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관련 사람을 혼동 또는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그러한 표시가 번역 또는 실제 원산지에 대한 언급과 함께 표기되거나 또는 타입 (type), 스타일 (style), 방법 (method), 모방 (imitation), 브랜드 (brand) 또는 유사한 문구가 추가되는경우에도 적용된다.<sup>154</sup>

## (2) 농산품 및 식료품

농산품 및 식료품에 관한 지리적표시는 이사회규칙 2081/92 에 의해 보호된다. 생산자단체는 동 규칙에 따라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상세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신청이 동 이사회규칙에 부합하다고 관할기관에 의해 간주되는 경우 공동체기관 (유럽위원회)로 이송된다. 공동체기관은 동 규칙의 조건이 공식적으로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동 신청을 EU 관보인 OJ 에 공표한다. 이러한 공표는 이의제기 기회를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다. 회원국이 동 이사회규칙에 따른 신청을 감독하는 책임을 갖는다. 지리적표시의 명칭이 동 이사회규칙에 의해 확립된 정의 및 절차를 충족시키 경우 동 명칭은 (부당사용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된

<sup>152</sup> *Id.*

<sup>153</sup> *Id.*,p.3.

<sup>154</sup> *Id.*

다.<sup>155</sup>

농산품 및 식료품의 지리적표시는 이사회지침 79/112 과 이사회지침 84/450 에 의해 추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사회지침 79/112 2(a)(i)조는 표지 (label) 및 표지부착 (labeling)의 사용방법이 식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지침 84/450 2 조 - 4 조는 지리적/상업적 원산지에 대한 오인, 기만 광고 금지 및 이에 대한 회원국의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sup>156</sup>

##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1) 법적 근거

EU 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1992 년 채택된 ‘농산물및그가공품을보호하는이사회규칙 2081/92’ (Regulation (EEC) No 2081/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EU 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농산품 및 식료품의 품질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농산품및가공품의특정특성에대한인증에 관한이사회규칙 No 2082/92’ (Regulation (EEC) No 2082/92 on certificates of specific character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sup>157</sup>

이사회규칙 2081/92 는 두 가지 범주의 명칭을 보호하는데, 원산지명칭 (designation of origin)과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이다. ‘보호되는 원산지명칭’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과 ‘지리적표시’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의 차이는 상품이 얼마나 밀접하게 그 상품이 속해 있는 특정 지역과 관련되느냐에 달려 있다.<sup>158</sup>

---

<sup>155</sup> *Id.*

<sup>156</sup> *Id.*

<sup>157</sup>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Designations of Origin and Certificates of Specific Character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Food Qualit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Guide to Community Regulations (2<sup>nd</sup> Edition, August 2004), p.4.

<sup>158</sup> *Id.*

동 이사회규칙의 보호대상인 원산지명칭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식료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방, 특정 장소, 국가의 명칭을 의미한다. 상품의 품질 또는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별한 지리적 환경 및 고유한 자연적, 인적 요소에 기인하고, 생산, 가공, 준비 단계가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59</sup> 지리적 표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식료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방, 특정 장소 또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의 명칭을 의미한다. 상품이 특별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생산 및/또는 가공 및/또는 준비 단계가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60</sup>

EU 차원에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인 PGI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상품이 상품의 명칭에 포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PDO 와는 달리 생산단계의 한 단계만 정해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상품과 상품에 포함된 명칭의 지역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에 귀속되면 충분하다. 상품의 명성이 지리적 원산지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지리적표시가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품의 실제적 특징은 지리적표시 등록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상품의 명성이 등록신청시 특히 그 원산지에 근거한 개별적인 명성을 향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sup>161</sup>

관용적 명칭 (generic names)은 원칙상 PGI 또는 PDO 로 등록될 수 없다. 관용적 명칭은 비록 상품이 원래 생산되었거나 판매된 장소 또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할 지라도 상품의 보통명사가 된 상품의 이름을 의미한다.<sup>162</sup>

## (2) 관할기관

EU 차원에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먼저 회원국의 국내절차를 통하여 EU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은 국내 신청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이 제출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는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sup>159</sup> 이사회규칙 2081/92 2 (a)조.

<sup>160</sup> 이사회규칙 2081/92 2 (b)조.

<sup>161</sup> *Supra* note 158, p.7.

<sup>162</sup> 이사회규칙 2081/92 3.1 조.

에서 검토한다. 검토 과정에서 규제위원회 (Regulatory Committee)와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심사에 참여한다. 규제위원회<sup>163</sup>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투표권을 갖지 않는 유럽위원회 대표가 주재한다. 유럽위원회는 이사회규칙 2082/91 의 범위의 개정을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 유럽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하여 규제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접수된 각각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sup>164</sup>

과학위원회는 법적 또는 농업적 전문성과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을 제공한다. 동 위원회는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규칙 2082/91 과 2082/92 에 따라 제출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모든 기술적 문제를 다룬다. 예컨대, 명칭의 관용적 성격, PGI 및 PDO 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상업적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기준의 적용 및 PGI 또는 PDO 와 상표 또는 동음이의어 사이의 충돌시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성 문제 등을 검토한다.<sup>165</sup>

### (3)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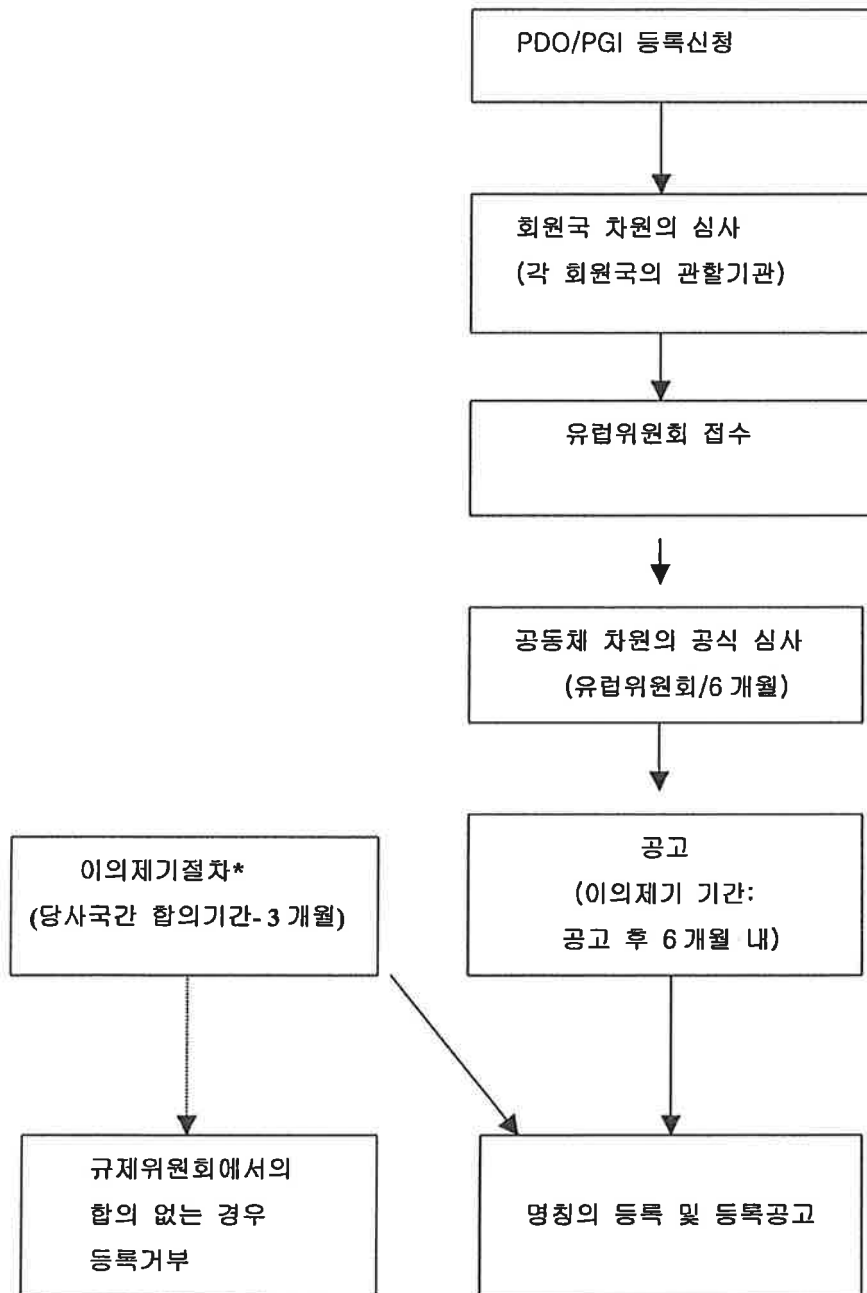
---

<sup>163</sup> 농산품및식료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위원회 (Committee on design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sup>164</sup> *Supra* note 158, p.20.

<sup>165</sup> *Id.*

[그림 3. PDO/PGI 등록절차]



## 1) 회원국 국내 절차<sup>166</sup>

### (a) 출원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임의적이며 공개적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상품명세서 (product specification)에 명시된 생산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자는 누구든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출원은 조합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체란 농업종사자, 생산자, 가공자의 단체를 말한다. 그밖에 소비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들도 단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유럽위원회 규칙 2037/93 에 따라 일인 또는 한 기업체만이 그 지역에서 등록될 명칭을 포함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자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가공방식을 사용하는 자가 달리 존재하지 않고, 지정된 지역이 명백하게 인접지역과는 구분되며, 상품이 다른 상품들과 차별되어야 한다. 상품명세서의 내용은 한 생산자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 (b) 신청서의 내용<sup>167</sup>

신청서는 명칭을 PGI 또는 PDO 중 어느 것으로 등록할 것인지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이사회규칙 2081/92 4 조에 나열된 요건을 포함하는 상품명세서;
- 회원국이 출원을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예컨대, 명칭의 명성을 입증 하는 통계자료 또는 문헌, 지역의 특별한 자연적 요소를 보여주는 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사진, 메뉴, 비법 (recipe), 송장(invoice) 등 설명에 도움이 되는 실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출원서 요약본.  
요약본은 공동체에서의 절차를 개시할 목적과 EU 관보에 EU 의 모든 공식 언어로 게재할 두 가지 목적에서 요구된다.

---

<sup>166</sup> *Id.*, p.10.

<sup>167</sup> *Supra note* 158, p.11.

명세서는 신청생산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차후에 준수해야 할 생산요건을 확립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스스로 자신들의 규율을 정하고 이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명세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생산자가 지정된 상품의 생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 임의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생산자는 그들이 가능한 국내법을 준수하고 그들의 상품이 명칭에 대한 감독 기관에 제출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명세서는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가 된다. 명세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내야 하며, 그 외에는 생산자가 자유롭게 명세서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일단 결정되면 그 내용은 구속력이 있으며 감독/조사에 참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달, 지리적 구획의 재정비 등을 고려하여 명세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공동체 절차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세서는 등록을 획득하고 생산요건에 대한 규칙을 부과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다.

#### (c) 명세서의 주된 요소<sup>168</sup>

##### - 명칭

지방의 명칭, 특정 지역,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명칭, PDO의 경우에는 특정 지방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 유래하는 농산품이나 식료품을 나타내는 전통적 명칭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명칭은 등록될 수 없다:

- i) 식물 변종 또는 동물 품종의 명칭과 상충되어 상품의 원산지에 관해 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 ii) 상표의 명성과 주지성 및 사용기간으로 미루어 볼 때, 명칭의 등록이 상품의 동일성(본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i)의 예로서 프랑스 치즈 명칭 “Abondance”를 들 수 있다. 이는 원산지명칭으로 등록되었지만 본래 소의 품종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치즈와 품종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이 허용된 것이다. 포르투갈어 “Carnalentejana”는 육

---

<sup>168</sup> *Id.*, pp.11-14.



류에 사용되는 전통적 명칭인 동시에 품종에도 사용되는 명칭이다. 그러나 "Alentejana" 품종이 해당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회원국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올리브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명칭 "Konservolia Styliidas"도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변종의 명칭인 *Konservolia* 와 지리적 명칭인 *Stylida* 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ii)의 예로는 "*Bayerisches Bier*"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관할기관이 이 명칭을 PGI로 등록하고자 하는 출원 사실을 통보하자, 네덜란드와 덴마크 기관에서 유럽위원회에게 그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가 맥주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네덜란드 상표 "Bavaria", 덴마크 상표 "Høker Bajer") 그러나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Bayerisches Bier*"의 등록은 상품의 정체성 (identity)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명칭은 등록되었다. 그러므로 상표와 지리적표시는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 기술 사항

사용된 원료 (raw materials)와 가능하면 그 원리 (principle)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품 또는 식료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 i) 물리적 특성 (모양, 색깔, 무게 등);
- ii) 화학적 특성 (최소지방 함량, 최대 수분 함량 등);
- iii) 미생물학적 특성 (존재하는 미생물의 유형 등);
- iv) 생물학적 특성 (속(屬), 류(類), 품종 등); 및/또는
- v) 감각적 특성 (색, 맛, 풍미, 향 등) 성질 등.

상품에 대한 이러한 명세사항은 상품의 원산지로부터 기인하는 특징을 통하여, 같은 품목 내의 다른 상품과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기술은 생산자가 상품의 결정된 특징을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감독의 지침이 된다.

또한 상품이 시장에 어떻게 출시될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보호되는 명칭이 제품의 신선도나 완전성을 보증할 수도 있다. 만일 명칭이 가공, 토막 썰기, 얇게 썰기, 다지기, 포장하기 등 상품의 사후 처리 단계를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면, 다른 필수요건과 함께 이 부분도 명시되어야 한다.

#### - 지리적 영역

지리적 영역은 생산 및/또는 가공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설정은 최종적으로 상품에 특별한 특징을 부여하는 자연적 및/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정의된다. 행정구역에 따라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 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도 등의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 원산지의 증명

농산품/식료품이 그 지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상품의 생산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따르는 상품의 추적가능성 (traceability) 과 관련이 있는데 명세서는 동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컨대, 장부보관 (register-keeping)과 구체적인 통제 등이 있는데, 예시적인 문서로 제조의 모든 단계를 나타내 주는 절차도 (flow-chart)나 통제 포인트 (control points)가 제시될 수 있다.

#### - 생산 방법

생산방법은 해당 상품의 생산지역 내에 모든 생산자가 명세서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생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i) 농산품/식료품의 획득 방법;
- ii) 만일 있다면, 지역의 고유한 생산방법;
- iii) 포장에 관한 정보 - 품질 보장, 식별 가능성 및 통제를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포장이 이루어질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포장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다지기, 얇게 썰기, 포장과 같은 생산 이후 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 항목에서 품질 보장과 상품의 진정성의 관점에서 위 과정이 명칭 보

호의 목적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sup>169</sup>.

#### - 관련성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상품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성은 왜 상품이 다른 지역이 아닌 일정 지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종상품이 생산된 지역의 특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PDO 와 PGI 모두, 지리적 영역이 특정 생산에 있어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는 이 관련성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모든 경우에 지리적 환경의 영향이나 그밖에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지역적 조건이 강조되어야 한다.

PGI 의 경우에 지리적 관련성은 최소한 생산 및/또는 가공 및/또는 준비 중 한 단계가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GI 등록의 출원시, 등록이 특정 품질이나 특성에 관련된 것인지 혹은 상품의 명성에 관련된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명성에 의거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문헌, 소비자 설문조사가 그 증거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데이터는 이 요건을 입증하는 데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면, 유사상품에 비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명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 감독기관

명칭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독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은 지정된 감독관청이나 승인된 민간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의 등록되는 PDO/PGI 에 대하여 감독기관 (inspection body)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 표지부착

PDO /PGI 상품이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표지부착 (labeling)요건도 포함된다. 표지부착이 등록된 명칭의 보호 목적에 필요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PDO/PGI 관련 유사상품이 동시에 최종상품의 구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명칭이 최종상품의 표지부착에 사용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가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상품이 PDO/PGI 가 사용되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

---

<sup>169</sup> 햄과 치즈가 생산 지역에서 다지고, 썰고, 포장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참조 <http://curia.eu.int/en/content/juris/index.htm>.: C-496/00, C-108/01.

에서 생산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의표지부착소개및광고에관한회원국의법률조화에관한지침’ (Directive 2000/1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labelling, presentation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에 따라 등록된 명칭이 성분 목록 중에 인용될 가능성은 있다.

PDO/PGI 공동체 로고는 등록된 상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PDO/PGI를 성분으로서만 포함하는 경우 또는 다른 PDO/PGI가 혼합된 경우에는 동 공동체 로고를 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

(d) 1차 관할기관: 회원국<sup>170</sup>

농업종사자, 생산자, 가공자 및/또는 소비자로 구성된 단체의 등록신청서의 출원에 의해 절차가 개시된다. 신청서는 상품 명세서와 함께 회원국 내의 관할기관에 제출된다.

회원국 국내 관할기관이 신청서를 검토하며, 등록요건이 충족되고 PGI 또는 PDO로서 명칭을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 신청서를 유럽위원회에 송부한다. 만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각 결정 (negative decision)을 통보한다. 따라서, 회원국이 유럽위원회에 신청서를 송부하기 전에 각 신청서가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위원회에 송부되는 신청서는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완전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서가 유럽위원회에 송부되면, 회원국은 동 신청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이사회 규칙 2082/91에 따른 등록결정이 날 때까지 동 명칭에 대하여 잠정적인 국내보호를 허용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가 등록신청을 한 명칭이 국경지역 또는 타국에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전통적인 명칭인 경우 동 국내기관은 동 신청서를 유럽위원회에 송부하기 전에 관련 국가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 회원국 내에서의 이의 절차<sup>171</sup>

---

<sup>170</sup> *Supra* note 158, p.15.

<sup>171</sup> *Id.*, p.16.

신청서를 유럽위원회에 송부하기 전에 회원국의 관할기관은 동 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관련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누구든지 국내적 차원에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회원국 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회원국으로부터의 이의제기는 공동체 심사절차에서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 2) 공동체 절차

### (a) 유럽위원회의 심사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송부된 등록신청서를 심사한다. 공식적인 조사를 통하여 6 개월 이내에 동 신청서가 모든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과 그 명칭이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에게 정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6 개월의 시효는 중단되고, 회원국의 답변을 수령한 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 (b) 1 차 공표

신청서가 등록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유럽위원회는 요약본을 EU 관보인 OJ 에 게재한다. 게재일로부터 6 개월 내에 유럽위원회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 (c) 이의절차

이의가 신청되면 이의절차가 개시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유럽위원회에 문서로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WTO 회원국과 승인된 제 3 국들도 신청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제기가 인정된다:

- i) 상품이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ii) 명칭이 관용적 명칭 (generic terms)으로 등록이 배제되는 경우;

iii) 명칭의 등록이 동일한 명칭, 상표 (mark)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게재 일로부터 최소한 5 년 이상 시장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품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유럽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우선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 이의신청은 기각되고, 등록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의제기 시한인 6 개월이 지나면 명칭은 등록되어 보호된다.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럽위원회는 동 사안을 해당국가에 보내어 소위 ‘우호적인 절차’ (amicable procedure)에 따라 3 개월 내에 회원국간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한다. 만일 회원국이 상호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럽위원회는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와 협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이의절차는 명칭이 부당하게 보호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 발언을 허락함으로써 이 절차는 균형 있는 판단을 보장하도록 도와준다.

#### (d) 2 차 공표

관보 게재 후 6 개월 내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의 절차 결과 명칭의 등록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명칭은 유럽위원회에 의해 PGI 로 등록된다. 등록된 명칭의 목록은 유럽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의 식품품질관리정책 (food quality policy)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 (e) 신청의 기각

명칭이 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유럽위원회는 규제위원회절차에 따라 동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명칭의 등록은 배제된다. 규제위원회 내에서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유럽위원회는 동 사안을 EU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유럽위원회가 제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긍정적인 등록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채택될 수 있다.

#### (f) 등록의 취소

이사회규칙 2081/92 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칭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i) 단체 또는 자연인 또는 관련 법인의 요청에 의해 국내 관할기관이 그 요청을 유럽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ii) 보호 명칭의 대상인 농산품 및 식료품에 관한 명세서의 요건준수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등록의 법적 효과

이사회규칙 2081/92 에 따른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명칭은 PDO/PGI 명부 (Register of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에 등록된다. 등록은 생산자의 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등록된 명칭의 유형과 범위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효과를 지닌다.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지적재산권으로서 상품에 대하여 등록된 명칭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동 권리의 특징 중 하나는 동 권리가 신청을 한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명세서에 규정된 생산조건을 준수하는 그 지역의 모든 다른 생산자들에게도 귀속된다는 것이다. 관련 지역 내에서 생산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생산자는 다른 사람이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록은 명칭을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생산자만이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표시와 함께 등록된 이름으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회원국은 생산자들이 자국에 상응하는 국내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랑스는 명칭이 등록된 상품 또는 등록신청이 유럽위원회에 송부된 경우에 한하여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OC)*” 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명칭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는 동음이의어 명칭이 다른 지역 원산지 상품이라고 믿도록 대중을 오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사회규칙 2081/92 12 조에 따라 제 3 국에서 보호되는 명칭이 공동체에서 보호되는 명칭과 동일하다면 원산지국표시가 요구된다. 이들 명칭 중 하나가 이미 등록된 경우 동 요건은 추후에 보호가 요청되는 명칭의 등록에 적용된다.

지리적표시의 배타적 사용권은 시장에서 생산자들의 상품을 경쟁상품으로부터 식별하도록 해 주며,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배타적 권리의 집행은 회원국에서 수행되므로 회원국은 그러한 권리집행의 보장이 직권으로 또는 PGI 권리 보유자의 고발 (complaints)에 근거하여 시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의 PGI 위반에 대한 보호는 이사회규칙 1383/2003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세관에 의해 제공된다. 동 규칙에 따라 세관은 고발 및 직권  
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다.

지리적표시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기본특징은 관련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들이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회규칙 2081/92 13 조는 ‘사용’ (use)의  
정확한 의미와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권한을 규정한다. 금지의 대상은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를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여 동 명칭의 명성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동 규칙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sup>172</sup>:

- (i)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명칭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상업적 이용. 동 상품이 그 명칭 하에서 등록된 상품과 비교  
가능한 경우 동 상품이 등록된 상품과 비교 가능하지 않다면 동 명  
칭의 사용금지는 보호되는 명칭의 명성을 착취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
- (ii) 오용 (misuse), 모방 (imitation) 또는 원용 (evocation). 상품의 진정  
한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보호되는 명칭이 ‘스타일’ (style), ‘타입’  
(type), ‘방법’ (method), ‘-에서 제조된 것과 같은’ (as produced in), ‘모  
방’ (imitation) 또는 ‘유사한’ (similar)의 표현으로 번역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sup>172</sup> 이사회규칙 No. 2081/92 13 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1. Registered names shall be protected against:
- (a) any direct or indirect commercial use of a name registered in respect of products not covered by the registration in so far as those products are comparable to the products registered under that name or insofar as using the name exploits the reputation of the protected name;
  - (b) any misuse, imitation or evocation, even if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 is indicated or if the protected name is translated or accompanied by an expression such as 'style', 'type', 'method', 'as produced in', 'imitation or similar';
  - (c) any other false or misleading indication as to the provenance, origin, nature or essential qualities of the product, on the inner or outer packaging, advertising material or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duct concerned, and the packing of the product in a container liable to convey a false impression as to its origin;
  - (d) any other practice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
- Where a registered name contains within it the name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which is considered generic, the use of that generic name on the appropriate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contrary to (a) or (b) in the first subparagraph.
2. However, Member States may maintain national measures authorizing the use of the expres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b)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Regulation, provided that:
- the products have been marketed legally using such expressions for at least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Regulation,
  - the labelling clearly indicates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
- However, this exception may not lead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freely o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where such expressions are prohibited.
3. Protected names may not become generic.”



(iii) 관련 상품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포장, 광고자료 또는 서류에 상품의 근원 (provenance), 원산지 (origin), 성질 (nature) 또는 본질적인 품질에 관한 기타 모든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및 원산지에 관한 허위인상을 줄 소지가 있는 용기 (container)에 있는 상품의 포장

(iv) 상품의 진정산 원산지에 관하여 대중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모든 행위

#### (5) 등록된 PGI 감독제도

이사회규칙 2081/92 는 지리적표시의 적절한 사용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제도 (inspection system)의 의무적 확립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각 PDO/PGI 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지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감독책임은 전적으로 국내기관에 위임된다. 감독기관의 비용은 보호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부담한다. 회원국은 감독제도를 위한 기관을 결정한 후에 인정된 당국 또는 기관의 최신목록을 유럽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림 4. PDO/PGI 마크]

PDO



PGI



[상품별 PDO 목록 예]

상품	등록된 PDO 예
생고기	Orkney beef; Shetland lamb; Taureau de Camargue; Volaille de Bresse
육가공품	Jamón de Teruel; Salsiccia di Calabria; Valle d' Aosta Jambon de Bosses; Valle d' Aosta Lard d' Arnad
치즈	Abondance; Bitto; Beaufort; Brie de Melun; Comté; Gorgonzola; Salers; Roquefort
축산품	Cornish clotted cream; Mel do Alentejo; Miel de La Alcarria; Miel de Sapin des Vosges
과일, 야채 및 곡물	Chasselas de Moissac; Coco de Paimpol; Jersey Royal potatoes; Noix de Grenoble
기타	Bad Pyrmonter; Pane di Altamura; Bissinger Auerquelle

[상품별 PGI 목록 예]

상품	등록된 PGI 예
생고기	Agneau de l' Aveyron; Scotch beef; Volaille de Champagne 등
육가공품	Canard de foie gras du Sud-Ouest (Chalosse, Gscogne, Gers, Landes, Perigord, Quercy); Jambon de Bayonne; Jambon sec et noix de jambon sec des Ardennes 등
치즈	Emmental de Savoie; Dorset Bleu Cheese; Danablu 등
축산품	Crème fraîche fluide d' Alsace; Kalamata; Toscano 등
과일, 야채 및 곡물	Ail rose de Lautrec; Asparago verde di Altedo; Citrinos do Algarve; Lentille verted dy Puy; Melon du Haut-Poitou; Pomme de poires de Savoie; Riz de Camargue;
수산물	coquilles St.Jaques des Côte d' Armor; Whistable oysters 등
기타	Cidre de Normandie; Worcestershire cider/perry 등 bremer Bier; Münchner Bier; Hofer Beer 등 Bergamote(s) de Nancy; Coppia Ferrarese; Pane casareccio di Genzano 등

등록된 PGI 는 공동체 PGI 로고와 함께 등록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갖는다. 공동체 PGI 로고의 사용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되어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는 PGI 로고가 아니라 등록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이다.

### 3. 권리구제제도

EU 회원국들은 사법 및 행정절차를 통하여 관련 EC 법을 적용할 의무를 갖는다.

이사회규칙 822/87 72a 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TRIPS 협정 23 조 및 24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리적표시에서 표시한 원산지와 관련 없는 상품에 지리적표시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기된 경우 및 지리적표시가 번역을 통해 “~종류, 유형, 스타일, 유사한”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원산지와 관련이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필요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회원국의 법제는 필요한 법적 절차, 관할기관, 항소절차, 제재 및 벌칙을 규율한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73</sup>

#### (1)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는 지리적표시의 부당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생산자 등이 이에 속한다. 누구든지 (소비자, 수입업자, 소매상, 생산자, 수출업자) 행정기관이나 음부즈맨에 고발장 (complaint)을 제출할 수 있다.

#### (2) 시정조치

시정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한다. 원고는 시정주장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당한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경우에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해당사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요청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포

<sup>173</sup> WTO, IP/C/W/117/Add.10, para.47.

르투갈, 영국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농무부, 경제부, 지방위원회의 행정관청에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시장관할권을 제시하였다.(첫 번째 심사는 음부즈맨, 항소기관은 시장법원 (Market Court))

### (3) 소송절차

민사법원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형사상 수사는 검찰에 의해 수사권이 주어진 경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직권 조사를 한다. 소가 행정기관이나 음부즈맨에 제기된 경우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곳이 수사권자가 된다. 수사권자는 침해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사건을 검찰에 이송할 수 있고, 음부즈맨은 시장법원 (Market Court)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시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판결에 의한다. 민사/형사 사건에서 1 심 법원의 결정은 항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독일에서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항소가 제한된다. 행정집행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시장법원의 결정은 피고만 항소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난 후 유럽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일어난 회원국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유럽위원회가 회원국이 EU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해당국가에게 유럽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만일 위 회원국이 유럽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유럽사법법원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sup>174</sup>

행정관청과 음부즈맨은 침해 중지명령 및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이 명령은 검찰과 법원을 통하여 강제될 수 있다. 민사법원의 판결은 피고에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형사법원의 판결은 직권으로 집행되며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유럽사법법원이 회원국이 조약상 의무 불이행을 판단하는 경우와 유럽위원회가 회원국이 유럽사법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유럽위원회는 그 사안을 재차 유럽사법법원에 제소하여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

<sup>174</sup> EC 조약 169 조.

#### 4. 상표와의 관계

이사회규칙 2081/92 14 조는 지리적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와 보호되는 지리적표시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공동체 차원에서 지리적명칭의 보호 신청일 이후 제출되는 동종상품에 대한 상충되는 상표 등록신청은 거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리적명칭에 우선권을 준다.
- (2) 일정한 경우에 지리적표시에 충돌하는 상표와 지리적표시가 공존할 수 있다. 상표가 원산지국에서의 보호일 또는 PDO/PGI 등록신청을 유럽위원회에 송부한 날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가 확립된 경우 또는 적용가능한 공동체법에서 동 상표의 무효화 또는 철회 (revocation)의 근거가 없는 경우이다.
- (3) EU 제도에서 대체로 충돌하는 상표의 등록은 지리적명칭의 등록을 금지하지 못한다.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상표의 명성 및 주지성 그리고 사용된 기간에 비추어 지리적 명칭의 등록이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 (identity)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동 이사회규칙은 상표와 지리적 명칭간에 제기되는 충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양 지적재산권의 권리의 균형을 모색한다.

EU의 경우 공동체마크에관한 이사회규칙 40/94는 지리적 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즉, 지리적표시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대중을 기만하지 않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동 규칙 7(1)(c) 조는 거래관계에서 종류, 품질, 수량, 의도된 목적, ... 지리적 원산지 또는 ... 기타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마크의 거절의 절대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표시는 단체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동 규칙 64(2)조는 7(1)(c)조의 예외로서 거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표시 또는 표시는 공동체 단체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마크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제 3

자에게 원용될 수 없다.<sup>175</sup>

[표 4. 상표와 지리적표시와의 주요 차이점]<sup>176</sup>

	상표 (공동체상표)	지리적표시 (규칙 2081/92)
대상	Nice 분류의 1-45 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농산품 및 식료품
등록자격	지리적으로 대표되고, 상품/서비스의 식별성이 있는 표지 (sign)일 것	PDO 또는 PGI 의 정의를 충족시키고 지정된 특징들을 정의하는 명세서를 갖출 것
보호기간	10 년, 추가적으로 10 년 연장 가능	보호시한 없음
신청자	표지의 소유자	보호되는 상품의 생산자/가공자 단체
양도	가능	불가능
라이선싱	가능	생산자/가공자 단체가 지리적표시를 GI 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그것을 라이선싱할 수 있으나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가능
비식별적인 서술적 용어	사용을 통하여 식별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등록 불가	등록 불가
일반명칭의 등록	사용을 통하여 식별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등록 불가	등록 불가
상표 또는 GI 의 일반명칭화	가능	불가능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	지침 89/104, 5(2)조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 보호	13 조, 특히 13(1)(d)의 범위 내에서 보호
지리적 보호 범위	전 유럽	전 유럽

<sup>175</sup> OECD, *supra* note 150, *para.* 90.

<sup>176</sup> Jeremy Phillips, *Trademark Law: A Practical Anatom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605.

이의제기/철회 /취소	모두 가능	7 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유럽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사용요건	적용 전에 필요한 사용조건은 없음. 등록 후 5 년간의 미사용은 이의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PDO 또는 PGI 는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될 것이 목시적 으로 요구됨 (2 조)
권리집행	공동체상표법원에서 상표권침해 소송 가능	회원국이 GI 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지만 명시된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없음.

## II. 프랑스

### 1.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개관

프랑스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소비자법 (Consumer Code) 177 및 시행령 (Decree No.68-807)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오직 농산품 및 식품, 원료 또는 가공품만이 등록된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표시를 준수하는 농산품 표지부착/증명서의 대상이 된다.<sup>177</sup> 농산품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 뿐만 아니라 EU의 이사회규칙 2081/92의 적용도 받는다. 프랑스는 특정 원산지에서 유래된 상품과 명칭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양질의 농산품과 식료품에 대하여 1935년부터 와인에만 적용되던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제도를 1990년 모든 농산품 및 식료품에 확대 적용하였다.<sup>179</sup>

와인은 ‘와인의 감독된 원산지명칭에 관한 1935년 7월 30일 법령’ (Decree-Law of 30 July on controlled appellations of origin for wines)에 의해 보호되는데, 동 법령은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하여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의 특별법주를 만들고 생산요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인 INAO (*Institut National Appellation d'Origine*)를 설치하였다. 그 이후 INAO가 AOC의 인정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sup>180</sup>

프랑스의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제 7장에 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명칭은 관용화된 명칭이 아니고, 그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적 특징 (*distinctive feature*)이 있으며, 대중을 오인케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지리적표시는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당해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리적 명칭은 유효한 상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전의 권리 특히 원산지명칭통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sup>181</sup>

---

<sup>177</sup> 1993년 7월 26일 개정된 Law No. 93-949에 의해 제정.

<sup>178</sup> WTO, IP/C/W/117/Add.10, p.55, Q1 답변.

<sup>179</sup> OECD, *supra* note 150, pp.62-63.

<sup>180</sup> *Id.*, p.61.

<sup>181</sup> 지적재산권법 711-1 조 ~ 711-6 조.



##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1) 법적 근거

프랑스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EU 의 이사회규칙 2081/92 및 소비자법 (Consumer Code) 과 시행령 (Decree No.68-807)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법에서는 EU 규칙에서 보호되는 명칭 (PGI, PDO) 이외에 자국의 지적재산권 법상 보호가 인정되는 ‘원산지명칭’ (Appellations of Origin) 과 ‘등록된원산지명칭’ (Registered Appellations of Origin)을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sup>182</sup> 이러한 경우 각 인정된 지리적표시는 프랑스 관보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JORF)에 시행명령 (decree order) 형식으로 공표된다.<sup>183</sup>

원산지명칭 (Appellation of origin)은 “국가, 지방, 지역의 명칭으로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유래되고 제품의 품질 또는 특징이 그 지리적 위치 및 자연적 및 인적 요소에 기인하는 경우에 상품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지리적 명칭”으로 정의된다.<sup>184</sup> 감독된원산지명칭 (Controlled Appellation of origin: 이하 ‘AOC’라 함)은 농산품 및 식료품 분야에서의 원산지명칭으로서 정당하게 확립된 명성과 관련 경계 및 생산 및 승인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한 INAO 제안에 대한 시행령에 의해 정의된 승인절차를 거친 원산지명칭을 의미한다.<sup>185</sup>

### (2) 관할기관

프랑스 내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에 공공기관으로 INAO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과 ONIVINS (National Joint-Trade Wines Office)가 있고,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CNLC (National Commission of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 Labels and Certificates)가 있다. 그 밖에 관련 부처가 생산지역, 생산요건, 감독요건의 관련 범주 내에서 관여한다. 해당 부처가 시행령에 따라 농산품이나 식료품 외의 상품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인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 행정관할권이 있는 최고행정재판소 (Conseil d’Etat)의 의견이 요구된다.<sup>186</sup>

---

<sup>182</sup> 소비자법 L.115-1~L.155-26 조.

<sup>183</sup> WTO, IP/C/W/117/Add.10, p.55.

<sup>184</sup> 소비자법 L.115-1 조.

<sup>185</sup> 소비자법 L.115-5, 115-6 조.

<sup>186</sup> WTO, IP/C/W/117/Add.10, p.57.

INAO 는 1935 년 와인 및 증류주의 명칭을 인정하고, 동 명칭의 사용과 프랑스 및 외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으로부터 원산지명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동 기관의 권한은 AOC 마크를 갖는 모든 농산품 및 식료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 동 기관의 임무는 필요한 규칙을 작성함으로써 원산지명칭의 인정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동 기관은 법인격을 가지며,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sup>187</sup>

프랑스에는 3 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s)가 존재하는데, 와인및증류주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Wine and Spirits), 유제품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Dairy Products)와 농산품및식료품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Agro-Food Products)가 있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가 지명한 관련 부문의 대표, 정부대표, 국내 전문가, 거래와 유통의 정통한 구성원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한다.<sup>188</sup>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ttee)는 정부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 상품의 인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내는 준다.<sup>189</sup>

명칭조합 (appellation associaton)은 관련 부문의 지역동업자로 구성되며, INAO 와 함께 등록신청서를 준비한다. 모든 지리적 명칭은 고유의 명칭조합을 가지고 있다.<sup>190</sup>

### (3) 등록절차

일반적으로 EU 회원국의 국내절차에 따르며, 프랑스는 천연 및 가공 농산품과 식품에 대한 원산지명칭 인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천연 또는 가공된 농산품 및 식품류는 AOC 인정의 대상이 된다.<sup>191</sup> 인정 기준으로는 소비자법 L.115-1 조에 요건에 해당되는 상품으로서 명성을 획득하고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인정절차에는 지리적 원산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지성, 명성, 품질, 자연적 요소 및 인적 요소가 고려된다.<sup>192</sup>

<sup>187</sup> OECD, *supra* note 150, para.145.

<sup>188</sup> *Id.*, para.146.

<sup>189</sup> *Id.*, para.147.

<sup>190</sup> *Id.*, para.148.

<sup>191</sup> 소비자법 L.115-5 조.

<sup>192</sup> WTO, IP/C/W/117/Add.10, p.57.

AOC의 등록 또는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항상 INAO가 관여한다. 관련 부문의 지역파트너는 명칭조합을 구성하여야 한다. INAO와 협의 후 조합은 새로운 AOC를 요구하는 근거를 제시한 신청서를 준비한다. 이러한 근거로는 명칭의 증거; 상품과 그 상품이 고유의 특징을 갖게 하는 자연적, 기술적 및 사회적 조건과의 관련성; 경제적, 재정적 평가가 있다. 신청서는 INAO의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다음 INAO의 국가위원회에 제출된다. INAO는 조사위원회(Commission d'enquête)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조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INAO의 멤버들로 구성되지만 신청자의 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지리적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AOC 등록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명칭조합과 함께(그러나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요건, 제안된 경계(boundaries) 및 승인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후 국가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린다.<sup>193</sup>

신청서가 일단 국가위원회에 제출되면 조사가 개시되어 신청서가 검토된다. AOC의 경우 조사는 지역적이며, 지역경계 또는 관련 명칭 및 생산 명세사항에 대한 내부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게 된다. 국내적 조사는 당해 지역 외부에 있는 장래의 AOC 명칭의 가능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sup>194</sup>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경우 조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동 조사는 AOC와 동일한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을 확대하여 자신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역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당해 상품과 명칭이 관용어라고 주장하는 동 지역 밖의 반대자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up>195</sup>

INAO 국가위원회는 동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시행명령(decree order)의 공식적 문서를 작성한다. 동 문서는 농무부(Ministry of Agriculture) 및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공동으로 서명되어 프랑스 관보에 공표된다. 동 신청서는 농무부에서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로 제출된다. AOC의 경우 절차는 3년에서 10년이 걸리고, PGI의 경우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sup>196</sup>

와인의 경우 AOC 와인의 개념을 개발한 이후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와인(quality wine)과 보호되는 원산지명칭(protected designation of

---

<sup>193</sup> OECD, *supra* note 150, paras.153-154.

<sup>194</sup> *Id.*, para.155.

<sup>195</sup> *Id.*, para.156.

<sup>196</sup> *Id.*, paras.157-158.

origin)에 대한 EU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규칙 823/87 과 와인 및 증류주에 관한 EU 규칙이 프랑스에서 적용된다.<sup>197</sup>

#### (4) 등록의 법적 효과

지리적표시의 소유자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해 및 권리에 위반하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에 대한 사용권한은 각 지리적표시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업단체 구성원들이 가지며, 개인이 단독으로 지리적표시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지리적표시 사용에 부착된 요건은 인정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생산자는 생산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특정생산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sup>198</sup>

AOC 는 관용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장기간 사용 후에도 공적 영역에 속하게 되지 않는다. 또한 지리적표시의 식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OC 가 유사한 상품이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수 없다.<sup>199</sup> 따라서, 유사상품에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용은 금지되며 (예: 비알콜성 음료에 “Champagne” 사용), 소비자에게 혼동 가능성이 없더라도 다른 상품에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것 (예: 향수에 “Champagne” 사용)도 금지된다.<sup>200</sup> 즉, 소비자법은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용에 의해 지리적표시의 식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고 있다.

#### (5) 감독제도

품질과 물량에 대한 감독은 제 3 자에 의해 수행되는데, INAO, ONIVINS, 인증기관 감독위원회, 공공감독서비스기관 (public official monitoring services)이 담당한다. INAO 는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판매자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동 기관의 위원회는 전문 위원, 정부 부처의 대표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다. 동 기관은 프랑스 국내 및 대외적으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를 증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sup>201</sup> 상품의 원산지과 다르게 명칭의 등록이 신청되거나, 권리자의 권리에 직

<sup>197</sup> *Id.*, paras.159.

<sup>198</sup> 소비자법 L.115-8 조.

<sup>199</sup> 소비자법 L. 115-5 조.

<sup>200</sup> C.A. Paris 1st ch. A. Dec. 15, 1993 Yves Saint Laurent Parfums v. INAO and CI.

<sup>201</sup> 소비자법 L.115-19 조.

접 또는 간접적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AOC의 권리자는 누구든지 동 기관에 의견을 접수하고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sup>202</sup>. 품질 및 물량감독은 서류 및 생산조건 및 상품(분석, 테스트, 표지부착, 포장)에 대한 현장조사(on-the-spot inspection)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 3. 권리구제제도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집행할 능력을 갖는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지리적표시의 오용(misuse)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리적표시의 불법사용에 대한 보호는 민사소송에 의해 제공된다.<sup>203</sup>

일반적으로 지리적표시는 거래안전을 위한 준수책임의 일반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sup>204</sup> 따라서 상품의 성질, 구성, 원산지<sup>205</sup>를 기만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보유,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의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거래관행에서의 광고행위 규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와 관련된 허위 표시, 주장 및 소비자를 오도하는 모든 광고도 금지된다.<sup>206</sup>

표시의 불법적 사용 또는 삭제, 첨가 또는 변경함으로써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천연 또는 가공상품에 대하여 부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판매, 판매목적의 제공 또는 그러한 상품의 무상유통은 동일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sup>207</sup>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개인, 조합 또는 단체는 소비자법 115-17 조에 의해 형사보상(criminal indemnification)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산지명칭의 주지성을 남용 또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소비자법 L.115-5 조에 근거하여 형사 또는 민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의 불법적 사용이 형사위반을 구성한 경우에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208</sup>: 지리적표시의 불법사용을 알게 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소비자법을 적용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General Directorate of Competition, Consumption and Enforcement - DGCCRF)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동 행정기관은 적절한 수사를 실시하고, 필

<sup>202</sup> 소비자법 L.115-18 조.

<sup>203</sup> WTO, IP/C/W/117/Add.10, p.64.

<sup>204</sup> 소비자법 L212-1 ff 조.

<sup>205</sup> 소비자법 L217-6 조.

<sup>206</sup> 소비자법 L121-1 조.

<sup>207</sup> 소비자법 L.115-16 조, L.115-18 조.

<sup>208</sup> WTO, IP/C/W/117/Add.10, pp. 64-65.

요한 경우에는 위반자가 구속될 수 있다. 수사를 통하여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문서에 기초하여 사건은 사법기관에 회부된다. 프랑스형법의 일반규칙에 따라 원고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및 검사 모두에 의해 공식 기소를 통하여 보호된다. 이러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행정기관 (DGCCRF)의 책임자는 지리적표시의 불법사용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사건을 사법기관에 회부할 수도 있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사보상 및 검찰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INAO는 원산지명칭을 보호, 감독하며 와인시장과 주류시장을 보호하는 농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형사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직접, 간접으로 침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sup>209</sup>

#### 4. 상표와의 관계

상표와 지리적표시와의 관계는 EU 이사회규칙 2081/92 14 조의 규정에 의해 정립되어 있다. 이사회규칙 2081/92 14 조 특히 2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선의로 등록된 상표의 사용은 동 상표의 무효화 또는 소비자의 기만 위험과 결부된 철회 (revocation)의 근거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의 등록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동 조 3항은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표시는 상표의 명칭 및 주지성 그리고 동 상표가 사용된 기간에 비추어 등록이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등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상표와 지리적표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 711-2 조, 제 711-3 조, 711-4 조가 적용된다. 지적재산권법 711-2 조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지나 명칭은 식별성이 없으므로 상표 등록에서 배제시킨다.<sup>210</sup>

지적재산권법 711-3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크 (mark) 또는 마크의 구성요소로서 채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i) 파리협약 제 6 조에 의해 제외되는 표지; (ii) 공공정책 및 도덕에 반하는 표지 또는 표지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경우; (iii) 상품 및 서비스의 본질, 품질, 지리적 원산지에 관해 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

---

<sup>209</sup> 소비자법 L421-1 조.

<sup>210</sup> 지적재산권법 L711-2 조.

우.

711-4 조는 표지가 선행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마크로 채택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특히, 보호되는 원산지명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마크로 채택될 수 없다.

### III. 스위스

#### 1.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개관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지리적표시는 ‘1992 년상표및출처표시에관한연방법’ (Fed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Indications of Source of 28 August 1992: 이하 ‘상표법’이라 함)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1997 년 ‘농산품및그가공품에대한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법령’(Ordinance of 28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A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in respec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이 채택된 이후 동 법에 따른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요청이 없는 경우 상표법이 계속 적용된다. 농산품 및 그 가공품의 유자격 지리적표시는 등록제도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그러한 보호를 위해 일정한 엄격한 요건이 준수 되어야 한다.<sup>211</sup> 불공정경쟁법에 의해 부정확하거나 소비자를 오인 할 수 있는 설명 및 표지의 사용이 제한된다.

상표법<sup>212</sup> 에 따르면, 출처표시 (indications of source)는 원산지와 관련이 있는 상품의 성격 또는 특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에 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언급을 의미한다. 직접적 출처표시는 예컨대, 시계에 대하여 “Swiss made” 또는 “Geneva”, 초콜렛의 경우 “Swiss”를 예로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출처표시로는 “Mon Cervin” (“Matterhorn”)이 보호되고 있다. 관련 거래관계에 있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원산지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지리적 명칭 및 표지 (geographical names and signs)는 상표법에 따른 출처표시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과 관련하여 가공 장소 또는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가 판단기준이 된다.<sup>213</sup>

상품과 장소간의 관련이 있고 그러한 관련성이 관련 업계에서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등록된 농산품 및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sup>211</sup> WTO, *supra note 21, paras. 2.1-2.2.*

<sup>212</sup> 상표법 47 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Indications of source are direct or indirect reference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goods or services including references to their nature or properties, having a relationship with their origin.

(2) Geographical names and signs not understood as a reference to a specific origin of goods or services in the relevant trade circles shall not be deemed indications of source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1).”

<sup>213</sup> 상표법 48 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origin of good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lace of manufacture or by the origin of the basic materials and components used”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된다.<sup>214</sup> 그러한 보호는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한하여 공식적 통고/등록절차 없이 출처표시의 보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또한 동 보호는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보호의 특별법에 따른 공식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농산품에도 적용된다.<sup>215</sup> 상표법의 지리적표시 보호대상은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농산품 및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 및 서비스의 지리적표시로서 단체표장 또는 인증마크로 보호된다. 이들 단체표장 및 인증마크의 보호기간은 10 년이며, 추가적으로 10 년 더 갱신할 수 있다.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와 원산지명칭 보호도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법령의 보호대상이 되며, 모든 농산물 및 가공품이 동 법령의 보호대상이다. 와인의 지리적표시는 와인제조에관한스위스연방법 (Swiss Decree on Wine Cultivation)<sup>216</sup>에 의해 보호된다.

[표 5. 스위스의 지리적표시 보호 관련 법제도]

상품	관련 법
모든 상품 및 서비스	Fed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Indications of Source of 28 August 1992;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of 23 December 1992 (OPM; RS232.111)
농산품 및 가공품 (증류주 포함)	Federal Law on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e and Preservation of Farming Populations of 29 April 1998 (RS 910.1, LAgr; FF19 98 2112);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in respec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of 28 May 1997 (Ordinance on PA Os and PGIs; RS 910.12)
와인	Swiss Federal Decree on Wine Cultivation of 19 June 1992 (RS 916.140.14); Ordinance on Viticulture and the Importation of Wine
시계	Ordinance on the Use of Designation "Swiss" for Watches of 23 December 1971
치즈	Ordinance of the DFI (Federal Department of the Interior) of 10 December 1981 Regulating the Description of Swiss Cheese (RS 817.141)

<sup>214</sup> WTO, *supra* note 21.

<sup>215</sup> *Id.*, para.1.3.

<sup>216</sup> 동 법에서는 와인제조, 품질 및 명칭에 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스위스 각 주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동 법에서 정한 와인생산의 최소요건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1) 법적 근거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은 EU 의 농산품 및 식료품에 관한 지리적표시보호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다. 동 법에 따른 원산지명칭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또는 contrôlée: AOC)와 지리적표시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는 지리적 원산지에 의해 결정되는 정체성 또는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산품을 가리키는 지역 또는 고장의 명칭을 의미한다. AOC 의 경우 모든 제조공정 즉 생산, 가공 및 준비가 지정된 지리적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217</sup> PGI 의 경우 AOC 보다는 상품과 지리적 지역과의 관련성이 다소 약하다. 예컨대, PGI 의 경우 제조공정의 한 단계만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sup>218</sup> 농산품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보호법령 (증류주 포함)에 따른 PGI 의 정의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유래된 농산품 및 가공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역 및 장소의 명칭을 말한다. 이 때 특별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그 원산지의 특성에 기인하여야 하고, 생산, 가공 또는 준비가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219</sup>

농산품및그가공품의지리적표시보호법은 스위스 민법 9 조의 등록에 있어서의 공공신뢰의 원칙에 근거한 보호로서 그 사용이 매우 엄격한 규칙의 대상이 되고, 일단 등록이 되면 보호기간은 무한정이다. 관용어는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표시로 등록될 수 없으며, 등록된 AOC 와 PGI 는 관용어가 될 수 없다.<sup>220</sup>

### (2) 관할기관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는 경제부 산하 연방농업국 (Federal Office for Agriculture: OFAG)에서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심사하고, 명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PDOs 와 PGI 연방위원회 (Federal Commission for PDOs and PGIs)는 연방공공경제부 (Federal Department of the Public Economy)에 의해 1988 년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OFAG 에

---

217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2 조.

218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3 조.

219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2 조.

220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4 조.

예비적 의견을 제출하고 등록된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질 조치에 대하여 관할당국에 자문을 한다. 동 기관은 특별히 PDO 와 PGI 를 위한 유일한 정부기관이다.<sup>221</sup>

한편 와인보호시행령에 따라 와인명칭의 보호에 관해서는 주 (Canton) 관할기관에서 심사절차를 담당한다. 동 기관은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의 사용에 관하여 정의하며, 이 때 연방농업법과 와인보호시행령의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 기관은 명칭과 출처표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연방농업국에 통지해야 한다. 연방농업국은 보호되는 와인 명칭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한다<sup>222</sup>.

### (3) 등록절차

농산물 및 가공품에 관한 지리적표시 등록절차는 생산자 또는 가공자 등 상품의 생산에 관련된 자로 구성된 민간단체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sup>223</sup> 이 때 개인이나 개별회사는 신청인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의 상품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생산자단체를 구성할 때 원산지명칭의 경우에는 생산, 가공, 준비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단체가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지리적표시의 경우에 생산단계 중 어느 한 과정만 지정된 지역에서 행해지면 되므로 모든 업체단체가 생산자단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sup>224</sup> 생산자단체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즉 PAO/PGI 는 소수가 제시한 방법에 따르도록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성의 유무는 각 업체단체와의 관계 및 해당 사업체 또는 생산자의 수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한다<sup>225</sup>.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sup>226</sup>:

- 신청 단체의 이름과 그 대표성의 근거
- 등록 하고자 하는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표시
- 그 명칭이 관용어가 아니라는 증거

---

<sup>221</sup> WTO, IP/C/W/117/Add.3, p.12.

<sup>222</sup> *Id.*

<sup>223</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5 조.

<sup>224</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5 조 - 6 조.

<sup>225</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6 조.

-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증거 (역사적 기록과 추적가능성<sup>227</sup>)
- 지리적 환경 또는 지리적 원산지와의 관련성에 관한 증거
- 본래부터 일정하게 행하여온 지역적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 및 상품명세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단체는 상품을 정의하고 그러한 상품의 획득방법과 지리적 지역의 한계를 상품명세서 (product specifications)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세서는 특정 지리적표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생산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sup>228</sup> 명세서에 추가하여 등록신청은 상품과 관련지역간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품의 명칭;
- 지리적 영역의 경계;
- 상품에 대한 기술 및 생산 방법;
- 지정된 감독인증기관의 명칭과 표지부착에 관한 상세내용

원산지명칭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농산품 및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될 것; 특정 품질이나 특징이 본질적 또는 배타적으로 자연적 및 인적 요소로부터 기인할 것; 생산, 가공 및 준비 단계가 모두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 상품의 명칭이 관용어가 아닐 것 등이 있다.<sup>229</sup>

지리적표시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농산품이나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할 것; 품질, 명성, 기타 특징이 그 지역에서 비롯되었을 것; 생산 단계 중 한 과정이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것; 상품의 명칭이 관용어가 아닐 것 등이

<sup>226</sup>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6 조-7 조.

<sup>227</sup> 상품의 추적가능성은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상품의 경로를 추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sup>228</sup>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7 조.

<sup>229</sup>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2 조, 4 조.

있다.<sup>230</sup> 관용어라 함은 그 명칭이 상품의 원산지나 판매지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이미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일컫는 명칭이 된 경우를 말한다. 관용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및 해당 주(Canton) 관할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sup>231</sup> 보호되는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표시로서의 명칭은 단일 상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상품군을 나타내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품군을 나타내는 명칭은 단체표장<sup>232</sup> 또는 인증마크<sup>233</sup>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PAO 및 PGI 의 모든 사용자는 인증기관에 상품의 생산, 가공 및 준비의 감독을 위임하여야 한다.<sup>234</sup> 인증기관은 관련법<sup>235</sup>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sup>236</sup>

### 3) 이의신청

농산물및농가공품에관한원산지명칭과지리적표시보호법령에 근거하여 PAO, PGI 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주정부 또는 합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up>237</sup> 이의는 등록관할기관 (연방농업국)에 등록신청이 공표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제기의 근거로는 명칭이 동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칭이 일반명칭이거나, 등록신청단체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거나, 명칭등록이 오랜 기간 사용된 주지의 저명한 동명의 명칭 또는 상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방농업국이 이의신청을 판단은 한다.<sup>238</sup> 이 판단과 관련하여 전문가위원회 (PAO and PGI Commission) 또는 주/연방정부기관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 선행상표의 우선권과 주지성에 관한 것인 경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연방농업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방경제부의 항소위원회 (Appeals Commission)에 항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정 (Federal Tribunal)에 상고할 수 있다.<sup>239</sup>

<sup>230</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3 조, 4 조.

<sup>231</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4 조.

<sup>232</sup> 상표법 22 조.

<sup>233</sup> 상표법 21 조.

<sup>234</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8 조.

<sup>235</sup> Ordinance of June 1996 on Accreditation and Designation of Test Laboratories and Bodies for Conformity Assessment, Registration and Approval (RS 946.512; RO 1996 1904).

<sup>236</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9 조.

<sup>237</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0.1 조.

<sup>238</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0 조-11 조.

<sup>239</sup>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1 조.

#### (4) 등록의 법적 효과

스위스법상 지리적표시의 보호기간은 영구적이다.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된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는 일반명칭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표법상 원산지표시는 관련업계가 이를 상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한 부당사용 또는 오인가능성이 있는 사용으로부터 보호된다.<sup>240</sup>

농산물및농가공품에관한원산지명칭과지리적표시보호시행령에 의하면 명칭의 등록을 요청한 단체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지만, 등록의 결과로서 명칭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한을 갖게 될 뿐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상품명세서에 나열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나 요건을 요하지 않고 PAO 및 PGI 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생산, 가공, 준비 과정에서 인증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sup>241</sup>

PAO 및 PGI 시행령과 상표법상 출처표시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는 제 3 자에 대한 사용허가 (licensing)가 금지된다. 다만 출처표시가 상표로서 등록되는 경우에는 개별상표와 단체상표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허용한다. <sup>242</sup> 인증상표는 사용목적이 다른 상표와는 다르므로 즉, 인증상표의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하는 기능이 아닌 품질인증 기능이므로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sup>243</sup>

#### (5) 감독제도

등록된 농산품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사용은 인증기관의 감독을 받는다.<sup>244</sup>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감독기관이 될 수 있으나, 민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도 감독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표준<sup>245</sup>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246</sup> 감독제도는 명칭등록을 인정받은 단체와 감독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체가 조정할 수 있고, 감독기관이 직접 담당할 수 있다.<sup>247</sup>

<sup>240</sup> 상표법 31 조.

<sup>241</sup> 연방농업법 16.3 조.

<sup>242</sup> 상표법 27 조.

<sup>243</sup> 상표법 21.3 조.

<sup>244</sup>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8 조.

<sup>245</sup> Euroepan Standard 45 011 (상품인증을 감독하는 인증기관에 관한 일반적 기준)

<sup>246</sup>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9 조.

<sup>247</sup>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보호법령 17 조, 18 조.

상표법에 의하면 생산자 단체 자신이 감독기관이 된다. 소비자단체도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지리적표시 자체가 단체표장/ 인증마크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 소유권자가 그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독기능 및 절차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sup>248</sup>

### 3. 권리구제제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및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를 고의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자에게 청구 또는 제보에 의한 형사상 조치로서 최고 1 년의 징역 또는 최고 100,0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불법행위자가 이와 관련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소된다. 이 경우에는 징역 또는 최고 200,000 스위스프랑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sup>249</sup>

민사상 조치는 상표법에서의 조치와 동일하다. 상표법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의 부당사용, 부당한 출처표시 사용 및 혼동될 수 있는 표지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상표법상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권리 또는 법적 관계에 대한 선언적 판결<sup>250</sup>; 이행 강제소송 (침해행위 또는 침해의 위협 금지 등), 중지명령, 지리적표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상품의 출처 공개명령<sup>251</sup>; 몰수, 폐기 등<sup>252</sup>; 잠정적 조치<sup>253</sup>; 판결의 공표.<sup>254</sup>

### 4. 상표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리적표시가 상품의 지리적 출처를 나타낸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 그러한 표시는 공적영역에 속하는 표지 (signs)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표시는 어느 한 기업에 의해 독점될

---

<sup>248</sup> 상표법 23 조-26 조.

<sup>249</sup> 연방농업법 172 조.

<sup>250</sup> 상표법 52 조.

<sup>251</sup> 상표법 55 조.

<sup>252</sup> 상표법 57 조.

<sup>253</sup> 상표법 59 조.

<sup>254</sup> 상표법 60 조.

수 없다. 상표법에서는 위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마크로서 확립되지 않는 한 그 표지는 공적영역에 속하게 되어 상표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sup>255</sup> 표지가 오인 혼동의 책임이 있거나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sup>256</sup>

따라서 출처표시가 상품 또는 서비스 상표로서의 기능을 입증하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예: "VALSER" 광천수) 출처표시와 관련있는 나라에서 상표성이 입증된다면, 스위스에서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지리적명칭이 원산지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스위스 내에서 상품/서비스의 출처와 관련하여 대중을 오인시키지 않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sup>257</sup>

농산품및가공품의원산지명칭및지리적표시법령에 의하면 선행상표의 소유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PAO/PGI 의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산지명칭/지리적표시는 등록될 수 없다. 만일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PAO/PGI 는 등록될 수 있고, 상표의 소유권자는 원산지명칭/지리적표시 사용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오랜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주지의 또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sup>258</sup>

---

<sup>255</sup> 상표법 2.1 조.

<sup>256</sup> WTO, IP/C/W/117/Add.13, p.21.

<sup>257</sup> *Id.*

<sup>258</sup> *Id.*



## 제 4 장. 한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한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개관

#### 1. 법적 근거

1995년 1월 1일 발효한 WTO TRIPS 협정은 지리적표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1996년 10월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 시 EU도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였다. 한국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9년 7월 1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세 품목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농품관법’이라 함)<sup>259</sup>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목적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농산품의 품질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품관법 제 2조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농산물<sup>260</sup> 및 그 가공품의 명칭·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등록절차 및 관할기관

##### (1) 등록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은 특정지역 내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sup>259</sup> 법률 제 06816 호 (일부 개정 2002.12.26).

<sup>260</sup>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 제외)·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sup>261</sup>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151 개 품목이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sup>262</sup>

[표 6.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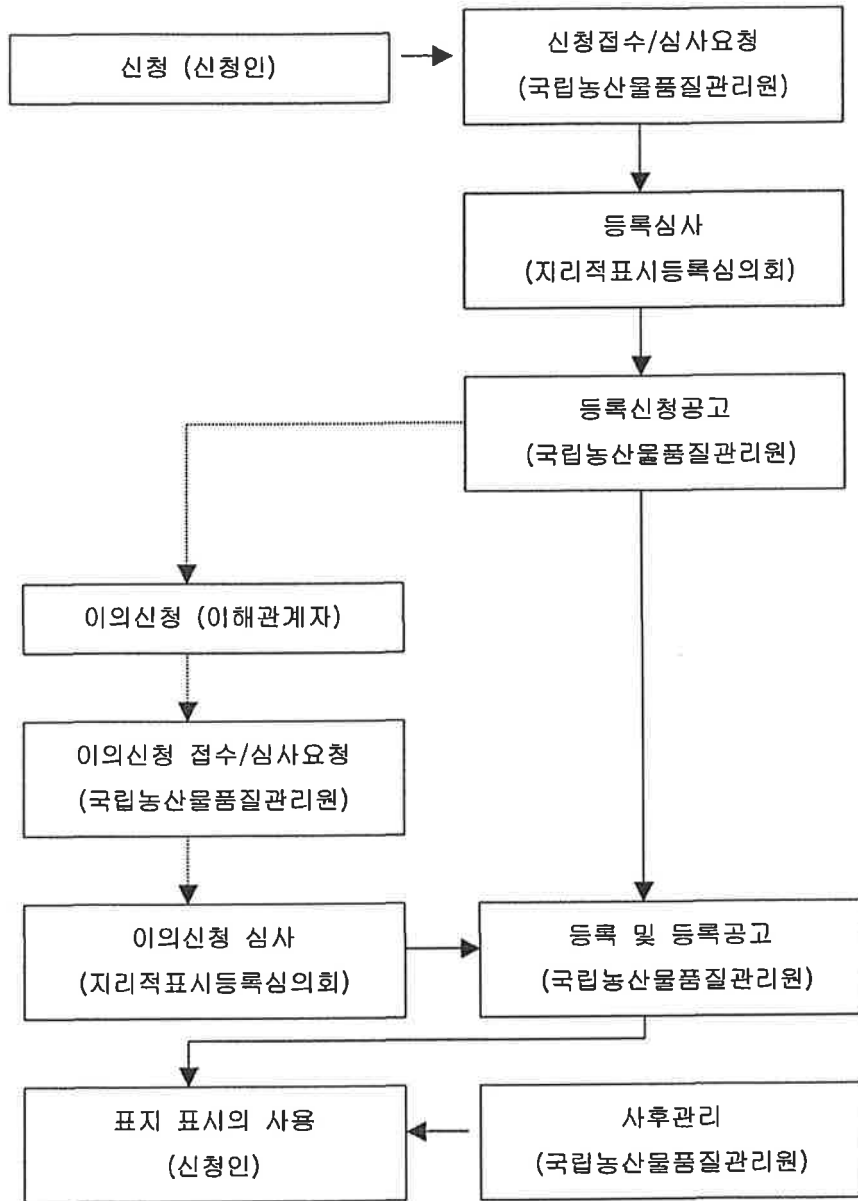
구분	유형	대상품목
원료농산물	곡류	기장, 메밀, 밀, 보리, 쌀 (현미 포함), 수수, 옥수수, 율무, 조 등
	두류	강낭콩, 검정콩, 녹두, 대두, 땅콩, 동부, 완두, 팥 등
	서류	감자, 고구마 등
	유지류	들깨, 참깨, 유채 등
	채소류	가지, 고들빼기, 고추, 깻잎, 당근, 더덕, 도라지, 두릅, 딸기, 마늘, 무, 배추, 생강, 수박, 순무, 양파, 연근, 창외, 토란, 토마토, 파, 학 등
	약재류	감초, 결명자, 구기자, 당귀, 복분자, 산수유, 오가피, 오미자, 동굴레, 익모초, 작약, 황기, 홍화씨 등
	과실류	강, 감귤, 대추, 매실, 모과, 배, 봉숭아, 사과, 살구, 앵두, 유자, 자두, 포도 등
	버섯류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싸리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
	견과류	도토리, 밤, 은행, 잣, 호두 등
	인삼류	수삼 등
	산채류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등
	화훼류	동양란 등
	식육류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영소고기, 오리고기 등
	우유류	우유 등
	알류	계란, 오리알 등
임산물류	고로쇠수액, 자작나무수액, 죽순, 헛 등	

<sup>261</sup> 농품관법시행령제 17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sup>262</sup>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농품관법시행령 제 16조 제 2항.

	기타	꿀, 녹용, 건조누에 등
농산물가공품	과자류	빵, 떡, 한과, 엿, 스낵과자 등
	두부류	두부, 묵 등
	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등
	다류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등
	음청류	곡류 음료, 두류 음료, 채소음료, 과일 음료 등
	면류	면, 국수 등
	주류	과실주, 리큐르, 소주, 약주, 일반 증류주, 청주, 탁주 등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인삼제품류	홍삼, 백삼, 태극삼, 기타 인삼가공품 등
	김치류	김치, 절임류 등
	축산제품류	순대, 육포 등
	기타 식품류	메주, 식초, 전분, 콩나물, 숙주나물 등
	임산물류	목공예품, 죽세공품 등
	기타 가공품	삼베, 모시, 화문석 등

[그림 5. 한국의 농산품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up>263</sup>:

- 생산계획서 (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 품질기준;
- 품질관리계획서.

## (2) 등록심사

농림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sup>264</sup>:

- 지리적표시의 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지리적표시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동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sup>265</sup>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sup>266</sup>:

-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sup>263</sup>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이하 '농품관법시행규칙'이라 함) 제 16 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sup>264</sup> 농품관법시행규칙 제 17 조 (지리적표시 심사 등).

<sup>265</sup> 농품관법시행령 제 10 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설치).

<sup>266</sup>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8312 조 (일부개정 2004.3.17), 제 15 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기준).

-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
-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등록신청 공고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sup>267</sup>: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4) 이의신청

등록신청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판단되거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sup>268</sup>

### (5) 등록 및 등록공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공고사항은 다음과 같다<sup>269</sup>:

<sup>267</sup> 농품관법시행규칙 제 18 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sup>268</sup> 농품관법시행령 제 18 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 (6) 지리적표시의 사용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 · 용기의 표면 등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sup>270</sup>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동 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up>271</sup>

#### (7) 사후관리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와 지리적특산물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sup>272</sup> 지리적표시의 사후관리의 관할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지리적표시관리기관은 표시품에 대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고,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의뢰 등을 할 수 있다.<sup>273</sup>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며 지리적표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sup>269</sup> 농품관법시행규칙 제 18 조-제 19 조.

<sup>270</sup> 농품관법시행규칙 제 20 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sup>271</sup> 농품관법 제 35 조 (벌칙).

<sup>272</sup> 농품관법 제 9 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sup>273</sup> 농품관법 제 10 조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II.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 동안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세 건(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으로 아직까지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WTO TRIPS 협정과 한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모델이 된 EU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와 이미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지리적표시보호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의 관련 법제도에 비추어 현재 시행중인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현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은 보호대상의 지리적표시 요건 완화, 지리적 명칭보호, 권리구제의 내용 보완,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전문성 확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매뉴얼 마련인데, 다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1. TRIPS 협정 수준으로 지리적표시의 요건 완화

농품관법 제 2 조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 요건이 “상품의 명성, 품질 또는(밑줄 추가)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인데 비하여, 농품관법의 경우 상품의 명성, 품질 및 (밑줄 추가)기타 특징이 함께 요구되므로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요건 보다는 엄격한 정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TRIPS 협정의 정의에서 요구된 국제적 요건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농품관법에서 요구되어 결과적으로 지리적표시의 신청 및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RIPS 협정과 EU의 지리적표시의 요건 수준으로 지리적표시의 정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2. 지리적 명칭의 직접적 보호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리적표시는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이 아닌 단어/문구의 형식이거나 또는



상징적인 심볼 또는 엠블럼의 형태로 표현되는 간접적인 표시도 포함한다. 프랑스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펠타워의 상징적인 심볼을 사용하거나 인도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타지마할 사원을 나타내는 심볼을 사용하는 것 또는 미국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유여신상의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도 지리적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sup>274</sup>

한국의 경우도 지리적표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 (밑줄추가)으로 정의되어 지리적표시가 반드시 지리적 명칭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농산물 및 가공품은 개별적인 지리적표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일원화된 지리적표시 표지 및 표시사항<sup>275</sup>을 부착하게 된다.

[지리적표시의 예]

 <p>K P G I</p>	<p>지리적특산품: 고창복분자주 (특품, 고급)</p> <p>KPGI:Gochoang Black Raspberry wine (高唱覆盆子酒)</p>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 3 호</p> <p>생산자: 고창으뜸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대표: 임동규)</p> <p>주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44-8 번지 (063-562-5453)</p>
<p>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입니다.</p>	

그런데 농품관법의 지리적표시의 정의에는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 (밑줄 추가)” 로 언급하는 한편, 등록된 지리적표시에는 KPGI 마크와 함께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함께 언급되어

<sup>274</sup> *Supra* note 2, p.10.

<sup>275</sup> 농품관법시행규칙 제 20 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별표 4(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있어 실제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되는데 문제는 동 지리적표시의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에 등록된 지리적 명칭만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농품관법상의 동 지리적 명칭이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EU 의 경우 공동체차원에서 등록된 지리적표시에 주어지는 PGI 마크의 사용은 생산자의 재량인 선택사항으로 보호대상인 지리적표시는 지리적 명칭이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지리적명칭을 언급하는 것이 지리적표시의 권리구제를 명확히 하고 보완하는데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지리적표시의 오인 또는 기만적 사용으로부터 진정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저명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무임승차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EU,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는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고, 그러한 지리적 명칭의 허위사용, 오용, 기만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농품관법상의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지리적표시가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호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권리구제의 내용 보완

농품관법상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지리적표시의 허위 또는 유사표시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형사적 제재를, 사후적으로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를 제공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권리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즉, 농품관법상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와 지리적특산물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sup>276</sup>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up>277</sup> 농림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사후관리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그 표시품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sup>276</sup> 농품관법 제 9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sup>277</sup> 농품관법 제 35조 (벌칙).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sup>278</sup> 그러한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리적표시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칙을 두고 있다.<sup>279</sup>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제 3자의 의한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이므로 현행 농품관법상의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내용과 구제수단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범위, 즉 지리적명칭을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명확하게 보호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 3자에 의한 지리적표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는 내용을 본 보고서의 제 3 장 외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다른 국가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농품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바<sup>280</sup>와 같이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에서 EU 나 프랑스 등과 같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통하여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있는 회원국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용권한 없는 제 3자의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허위사용
- 지리적표시의 오용, 모방 또는 원용행위;
- 지리적표시의 오인, 기만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표시에 대한 허위인상을 초래하는 경우;
- 허위의 지리적표시 부착행위;
- 지리적표시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에 지리적표시를 이용하여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행정적 구제,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수단이 제공된다<sup>281</sup>:

---

<sup>278</sup> 농품관법 제 11 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

<sup>279</sup> 농품관법 제 35 조 (벌칙)

- 행정적 구제: 침해중단명령, 벌금,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
- 민사적 구제: 금지명령, 손해배상, 선언적 판결, 상품에 출처에 대한 공표명령, 몰수 및 폐기, 수익 몰수, 판결의 공표, 잠정금지명령 등.
- 형사적 구제: 징역, 벌금 등.

현행 지리적표시제도의 권리구제 측면의 보완을 위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프랑스나 스위스의 권리구제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sup>282</sup>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지리적표시의 오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리적표시의 불법사용에 대한 보호는 민사소송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직접, 간접으로 침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를 고의적으로 불법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제보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자를 직권으로 기소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민사상의 조치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권리 또는 법적 관계에 대한 선언적 판결, 이행강제소송, 중지명령, 몰수, 폐기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 4.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품목이 등록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등록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sup>283</sup>:

- (i)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

<sup>280</sup> 제 1 장 지리적표시보호제도 개관 참조.

<sup>281</sup> 구제수단의 분류는 관련 WTO 참조자료의 분류에 따른다. 제 1 장 지리적표시보호제도 개관 참조.

<sup>282</sup> 제 3 장 외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 참조.

<sup>283</sup>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 · 운용규정 (농림부 훈령 제 1042 호 (2000.9.21)) 제 2 조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의).

- (ii) 다음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한 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iii)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 유통 가공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및 가공품 또는 지리적표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인적구성은 정부가 지명한 관련 부분의 정부대표, 농산품의 거래와 유통단체의 구성원 및 농산물 및 가공품 또는 지리적표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EU의 경우 공동체차원에서 등록신청된 지리적표시를 검토할 때 법적 또는 농업적 전문성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가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 동 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문의 성격을 갖지만 지리적표시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동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기준과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멤버 구성에 있어 특히 법제도로서의 지리적표시 전문가와 농업전문가의 상설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인 농산물 및 가공품의 범위가 매우 다양함을 고려하여 특정 농산물의 전문가를 지리적표시 심의과정에 융통성있게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들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지속적인 워크샵 등을 통하여 동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5. 지리적표시 심사 매뉴얼 마련

실제 지리적표시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심사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3 건의 지리적표시가 등록되어 있으나 동 제도가 활성화 되면 신청 건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인 등록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매뉴얼은 현장조사를 포함한 등록심사의 노하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심사의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 노하우는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경험이 축적된 프랑스나 스위스 그리고 EU 와의 지속적인 인적교류 또한 그러한 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다른 회원국과 다른 점은 지리적표시 등록의 관할기관인 INAO 의 국가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들도 참여시켜서 지리적표시의 등록과 사후관리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도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지리적표시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함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도 지리적표시의 심의과정과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5 장. 한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지리적표시는 점차 확대되는 세계화 속에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게 해 주며, 상품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보다 높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FTA 등으로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시점에 한국의 농산품 및 가공품은 저렴한 외국의 농산품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리적표시가 국산품의 지리적 원산지와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표시로서 소비자에게 인식된다면 농산품의 생산자에게 있어서 지리적표시는 시장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식별력 측면에서 상표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상표가 회사의 자산으로 그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상품에 부착되고, 보호기간도 제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지리적표시는 상품이 기인한 지역과 관련성을 갖는 특정 상품에 의해 대표되고, 그 지역의 요구되는 품질적 기준을 준수하는 생산자에게 이용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리적표시제도는 국내 농산물의 국제적 보호는 물론 지적재산권으로써 생산자의 권익보호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삼, 김치 등의 품목과 국내외적으로는 녹차, 고추장, 쌀, 생수, 전통주, 과채류 및 축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시행 중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리적명칭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주어진다는 확인에 불과한 표지 (KPGI) 보호로 운영됨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명칭에 대한 타인의 무단사용시 권리침해구제에 대한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서 검토한 지리적표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조건에서 지리적표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 품질관리정책으로서의 지리적표시 강화, 지리적표시의 상업적 전략마련을 들 수 있다.

## I.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품 및 가공품의 생산자의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9.2%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0.8%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표시의 가치와 동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인삼 생산자들의 약 80%가 '지역명칭을 사용한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다수가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등록신청 건수가 매우 적고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sup>284</sup>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지리적표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동 제도의 활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의 초점은 생산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자신의 농산품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해 주고, 그러한 지리적표시가 농산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리적 관련성을 갖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증이라는 점에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등 외국의 생산자들이 자신의 농산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프랑스의 경우 와인뿐만 아니라 농산품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수백개의 지리적표시가 있으며 그러한 지리적표시의 총 가치는 1 억 8 천 유로에 달한다. 와인의 경우 Bordeaux, Bourgogne, Champagne, Sancerre 나 치즈인 Comté, Saler, Roquefort, 농산품인 Piment d'Espelette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의 예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데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리적표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심도 깊은 조사가 전제조건이 되며, 민간차원의 각 지리적표시의 명칭조합은 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원산지명칭의 명칭조합은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sup>284</sup> 성명환,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사례와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erence (서울, 2004.6) 발제자료, 11-12 면.



이러한 협력은 1935 년 이래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85</sup>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에는 지리적표시의 신뢰성을 위하여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등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기관의 경우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지리적표시의 적극적인 보호노력이 필요하다.

### III.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

EU 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운영경험 <sup>286</sup> 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소비자의 인식과 상업적 전략 측면에서 상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 년 조사에 16,000 명의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이상의 소비자가 지리적표시 상품을 자주 구매하고 있고, 60%의 소비자가 종종 지리적표시 상품을 구매하는 반면, 8%의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그러한 표시가 상품의 원산지, 품질, 장소 및 생산방법 그리고 전통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87</sup>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하여 EU 소비자의 43%는 동종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10%의 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지리적표시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8%의 소비자가 20%, 3%의 소비자가 30%까지의 추가 금액을 그러한 상품의 구매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였다<sup>288</sup>.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추가금액의 지불의사가 있는 이유는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지리적표시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EU 소비자의 55%는 지리적표시 상품이 1 등급의 상품품질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18%는 규제되고 인증된 신뢰할 만한 상품으로서 8.4%는 건강에 좋은 자연상품으로 그리고 6%는 특정한 제조공정을 거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89</sup> 소비자는 지리적표시 상품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이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중요한

<sup>285</sup> Geographical Indications Around the World, WIPO/GEO/SFO/03/20/REV (July 29 2003), pp.2-3.

<sup>286</sup> Antonio FERNANDEZ-MARTOS, "Why a GI registration system is good for producers and consum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erence (SEOUL, 30 Jun 2004)

<sup>287</sup> *Id.*, 유럽위원회 여론조사 제인용.

<sup>288</sup> *Id.*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 IV. 품질관리정책으로서의 지리적표시 강화

지리적표시가 TRIPS 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포함되었으나 EU 와 EU 회원국 중 특히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농산품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지역특산물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리적표시보호제도를 품질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품질요건이 지리적표시의 유일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품질을 지리적표시의 보호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표시의 주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품질관리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특히 무역자유화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고, FTA 를 통하여 그러한 자유화가 보다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산 농산품 및 가공품이 값싼 외국산 농산품과 가공품과의 극심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 고품질의 농산품의 생산이다. 고품질의 농산품을 시장에서 식별하는 수단으로 품질인증제도도 있지만 지리적표시는 품질인증의 개념에 더하여 상품의 품질과 지리적 원산지와의 관련성을 보장하므로 특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라는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농가의 소득확대에 기여를 한다면 결국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선택에 있어서 지리적표시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지리적원산지의 관련성을 대표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고품질 상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V. 지리적표시의 상업적 전략 마련

지리적표시의 대상품목은 와인 및 증류주를 제외하고는 주로 농산품 및 가공품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상품에 있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점에

---

<sup>289</sup> Id. Consejo Regulador del Turrón de Jijona y el Turrón de Alicante 여론조사 (2002) 재인용.

비추어 볼 때 농산품 또는 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라는 공동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여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지리적표시의 상업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의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명성, 품질 또는 기타 특징에 있어 그 지역과 관련성이 있어 타 지역 상품과는 차별이 되는 지역별 특산품을 발굴하고, 지리적표시를 통하여 공동의 브랜드화 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마케팅은 세계화시대에 국내에서 그리고 국외에서 외국의 농산품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적표시 활성화 기금을 마련하여 생산자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위한 법적, 행정적 자문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은 지리적표시의 상업화 전략마련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결론 >

TRIPS 협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경우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 지리적표시와 유사한 표시로서 출처표시, 원산지명칭, 지리적표시의 개념은 모두 지리적 요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광의의 지리적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출처표시는 상품의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상품의 단순한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여 가장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명칭은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지리적 환경으로 기인되는 품질 및 특징을 갖는 상품을 지정하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은 물론 비지리적 명칭이나 엠블럼 등 표시의 사용도 가능하고,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을 가지는 상품을 지정하는 지리적표시 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원산지명칭은 지리적표시지만 모든 지리적표시가 반드시 원산지명칭이 되는 것은 아니다

TRIPS 협정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의무와 비교하여, 회원국들의 지리적표시 보호의무의 국내적 이행은 매우 다양하고, 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에 관한 TRIPS 협정의 의무가 그 요건 등에 있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지리적표시의 정의가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TRIPS 협정과 유사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때때로 일정한 상품목록에 대해서만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도 한다. EU, 프랑스, 스위스 등 지리적표시 보호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리스본협정의 보다 제한적인 정의를 채택하여 보호되는 명칭 (denominations)이 반드시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요건은 대부분의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다. TRIPS 협정은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을 요구하는데, 이 뿐만 아니라 생산방법 및 상품의 명세사항과 관련한 특정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상품과 지정된 지역간의 관계를 보장하는 조치 또한 달리 이행되고 있다. 지역적 범위는 기존의 정치적, 행정적 구역에서 *sui generis unit* 까지 다양하다. 상품과 지리적 지역간의 연관성에 대한 조치는 모든 생산단계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원료가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또는 생산의 특정 단계가 그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요건을 포함한다. 또한 보호의 방식도 사업관행에 관한 법이나 상표법을 통해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거나 *sui generis* 법률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표시보호의 국내적 이행모델은 매우 다양하다.

WTO 사무국 (2001 년) 에 따르면, 각국의 지리적표시 보호는 단체표장 및/또는 인증/증명표장에 관련된 상표법;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특별보호제도; 그리고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을 포함하는 사업관행에 관한 일반적인 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 보호제도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적용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취지는 지리적표시의 오인 또는 기만적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저명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제 3 자의 무임승차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지리적표시 보호의 구체적 방법은 해당 국가의 산업 및 법 전통에 달려 있다.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적극적인 유럽, 특히 EU 는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통하여, 미국 등은 단체/증명표장제도를 통하여 지리적표시를 보호한다. 대체적으로 대륙법계는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미국 등 보통법계는 단체표장/인증마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보통법계인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단체/증명표장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도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그 방법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은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1891 년마드리드협정과 1958 년리스본협정을 채택하지 않은 반면, 이태리의 경우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과 함께 치즈, 올리브오일 등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와인에 대한 독립적인 법을 규정하고 있다.

1999 년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5 년 동안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세 건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으로 아직까지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WTO TRIPS 협정과 한국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모델이 된 EU 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와 이미 동 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동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에 비추어 현재 농품관법에 따라 시행 중인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은 TRIPS 협정 수준으로의 지리적표시 요건 완화, 지리적 명칭의 직접적 보호, 권리구제의 내용 보완,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 전문성 확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 매뉴얼 마련을 들 수 있다.

지리적표시제도는 국내 농산물의 국제적 보호는 물론 지적재산권으로써 생산자의 권익보호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인삼, 김치 등의 품목과 그 외에도 녹차, 고추장, 쌀, 생수, 전통주, 과채류 및 축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시행 중인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는 지리적 명칭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주어진다라는 확인에 불과한 표지 (KPGI) 보호로 운영됨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명칭에 대한 타인의 무단 사용시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리적표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조건에서 지리적표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 품질관리정책으로서의 지리적표시 강화, 지리적표시의 상업적 전략 마련을 들 수 있다.

EU 의 경우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와 단체표장 등 상표법을 통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두 가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리적표시는 단체상표로도 등록될 수 있는데, 동 규칙 64(2)조는 거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표시 또는 표시는 공동체 단체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마크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제 3 자에게 원용될 수 없다.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 여년이 경과한 지금 EU 차원에서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어 단체표장제도와는 별개로 농산품 및 식료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단체상표의 도입하는 시점에서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품관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는 EU 의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운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가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성명환 · 이동필 · 박은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RIPS 지리적표시 특별보호대상 확대 논의: 국내 지리적표시 보호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2002.5)

성명환,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사례와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erence (서울, 2004.6) 발제자료.

### 해외문헌

Antonio FERNANDEZ-MARTOS, "Why a GI registration system is good for producers and consum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erence (SEOUL, 30 Jun 2004)

Felix Addor and Alexandra Grazioli, "Geographical Indications beyond Wines and Spirits: A Roadmap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e WTO TRIPS Agreement",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5 No.6 (November 2002)

European Commission,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Designations of Origin and Certificates of Specific Character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Food Qualit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Guide to Community Regulations (2<sup>nd</sup> Edition, August 2004).

Jeremy Phillips, *Trademark Law: A Practical Anatom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OECD, *Appellation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in OECD Member Countries: Economic and Legal Implications*, COM/AGR/APM/TD/WP (2000)15/FINAL

WIPO,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Somerset West, Cape Province, South Africa (September 1 -2, 1999)

WIPO, *Geographical Indication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for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Tenth Session)*, SCT/10/4 (May 25 2003),

WIPO, Geographical Indications Around the World, WIPO/GEO/SFO/03/20/REV (July 29 2003)

WTO, Draft Text of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Job (02)/75 (16 April 2003).

WTO, Review under Article 24.2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Provisions of the Section of the TRIPS Agreement on Geographical Indications: Summary of the Responses to the Checklist of Questions Note by the Secretariat, IP/C/W/253/Rev.1 (24 November 2003).

WTO, Doha Work Programme: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 August 2004).



## <부 록>

- I.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 II. EU회원국의 지리적표시 관할기관
- III. EU의 상품별 PDO/PGI 목록

<부 록>

I.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EN

# Consolidated TEXT

produced by the **CONSLEG** system

of th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ONSLEG: 1992R2081 — 01/05/2004

*Number of pages: 16*

---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43,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sup>(1)</sup>,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sup>(2)</sup>,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sup>(3)</sup>,

Whereas the production,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unity economy;

Whereas, as part of the adjustment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the divers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should be encouraged so as to achieve a better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n the markets; whereas the promotion of products having certain characteristics could be of considerable benefit to the rural economy, in particular to less-favoured or remote areas, by improving the incomes of farmers and by retaining the rural population in these areas;

Whereas, moreover, it has been observed in recent years that consumers are tending to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the quality of foodstuffs rather than to quantity; whereas this quest for specific products generates a growing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stuffs with an identifiable geographical origin;

Whereas in view of the wide variety of products marketed and of the abundance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m provided, consumers must, in order to be able to make the best choice, be given clear and succinct information regarding the origin of the product;

Whereas the labell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s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laid down in Council Directive 79/112/EEC of 18 December 1978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labelling, presentation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sup>(4)</sup>; whereas, in view of their specific nature, additional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adopted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from a specified geographical area;

Whereas the desire to protect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stuffs which have an identifiable geographical origin has led certain Member States to introduce 'registered designations of origin'; whereas these have proved successful with producers, who have secured higher incomes in return for a genuine effort to improve quality, and with consumers, who can purchase high quality products with guarantees as to the method of production and origin;

Whereas, however, there is diversity in the national practices for implementing registered designations or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whereas a Community approach should be envisaged; whereas a framework of Community rules on protection will permit the develop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since, by providing a more uniform approach, such a framework will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the producers of products bearing such indications and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products in the consumers' eyes;

<sup>(1)</sup> OJ No C 30, 6. 2. 1991, p. 9 and OJ No C 69, 18. 3. 1992, p. 15.

<sup>(2)</sup> OJ No C 326, 16. 12. 1991, p. 35.

<sup>(3)</sup> OJ No C 269, 14. 10. 1991, p. 62.

<sup>(4)</sup> OJ No L 33, 8. 2. 1979, p. 1. Last amended by Directive 91/72/EEC (OJ No L 42, 15. 2. 1991, p. 27).

**▼B**

Whereas the planned rules should take account of existing Community legislation on wines and spirit drinks, which provide for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Whereas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is limited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for which a link between product or foodstuff characteristics and geographical origin exists; whereas, however, this scope could be enlarged to encompass other products or foodstuffs;

Whereas existing practices make it appropriate to define two different types of geographical description, namely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Whereas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bearing such an indication must meet certain conditions set out in a specification;

Whereas to enjoy protection in every Member State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must be registered at Community level; whereas entry in a register should also provide information to those involved in trade and to consumers;

Whereas the registration procedure should enable any person individually and directly concerned in a Member State to exercise his rights by notifying the Commission of his opposition;

Whereas there should be procedures to permit amendment of the specification, after registration, in the light of technological progress or withdrawal from the register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or designation of origin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if that product or foodstuff ceases to conform to the specific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geographical indication or designation of origin was granted;

Whereas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trade with third countries offering equivalent guarantees for the issue and insp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r designations of origin granted on their territory;

Whereas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a procedure establishing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through a Regulatory Committee set up for that purpose,

HAS ADOPTED THIS REGULATION:

*Article 1*

**▼M4**

1. This Regulation lays down rules on the protection of design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ferred to in Annex I to the Treaty and of the foodstuffs referred to in Annex I to this Regulation and the agricultural products referred to in Annex II to this Regulation.

However,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to wine-sector products, except wine vinegars, or to spirit drinks. This paragraph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1493/1999 on the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 in wine.

Annexes I and II to this Regulation may be amended using the procedure specified in Article 15.

**▼B**

2. This Regulation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other specific Community provisions.

3. Council Directive 83/189/EEC of 28 March 1983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sup>(1)</sup> shall not apply to the design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covered by this Regulation.

<sup>(1)</sup> OJ No L 109, 26. 4. 1983, p. 8. Last amended by Decision 90/230/EEC (OJ No L 128, 18. 5. 1990, p. 15).

▼B

*Article 2*

1. Community protection of designations of origin and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shall b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 (a) *designation of origin*: means the name of a region, a specific place or, in exceptional cases, a country, used to describe an agricultural product or a foodstuff:
    - originating in that region, specific place or country, and
    - the quality or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essentially or exclusively due to a particular geographical environment with its inherent natural and human factors, and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preparation of which take place in the defined geographical area;
  - (b) *geographical indication*: means the name of a region, a specific place or, in exceptional cases, a country, used to describe an agricultural product or a foodstuff:
    - originating in that region, specific place or country, and
    - which possesses a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attributable to that geographical origin and the production and/or processing and/or preparation of which take place in the defined geographical area.
3. Certain traditional geographical or non-geographical names designating an agricultural product or a foodstuff originating in a region or a specific place, which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the second indent of paragraph 2 (a) shall also be considered as designations of origin.
4.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2 (a), certain geographical designations shall be treated as designations of origin where the raw materials of the products concerned come from a geographical area larger than or different from the processing area, provided that:
  - the production area of the raw materials is limited,
  - special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the raw materials exist, and
  - there are inspection arrangements to ensure that those conditions are adhered to.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4, only live animals, meat and milk may be considered as raw materials. Use of other raw materials may be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6.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dero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4, the designations in question may be or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as designations of origin with national protection by the Member State concerned, or, if no such scheme exists, have a proven, traditional character and an exceptional reputation and renown.
7.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dero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4,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must be lodged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 **A1** In the case of Austria, Finland, and Sweden, the above period shall begin from the date of their accession. ◀ ► **A2**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Estonia, Cyprus, Latvia, Lithuania, Hungary, Malta, Poland, Slovenia and Slovakia the above period shall begin from the date of their accession. ◀

*Article 3*

1. Names that have become generic may not be registered.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 'name that has become generic' means the name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a foodstuff which, although it relates to the place or the region where this product or foodstuff was originally produced or marketed, has become the common name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a foodstuff.

**▼B**

To establish whether or not a name has become generic, account shall be taken of all factors, in particular:

- the existing situation in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name originates and in areas of consumption,
- the existing situation in other Member States,
- the relevant national or Community laws.

Where, following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s 6 and 7, an application of registration is rejected because a name has become generic,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that decis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 A name may not be registered as a designation of origin or a geographical indication where it conflicts with the name of a plant variety or an animal breed and as a result is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

3.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shall draw up and publish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 non-exhaustive, indicative list of the names of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stuff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and are regarded under the terms of paragraph 1 as being generic and thus not able to be registered under this Regulation.

*Article 4*

1. To be eligible to use a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or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must comply with a specification.

2. The product specification shall include at least:

- (a) the name of the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origin 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 (b) a descrip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including the raw materials, if appropriate, and principal physical, chemical, microbiological and/or organoleptic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or the foodstuff;
- (c) the definition of the geographical area and, if appropriate, details indicat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in Article 2 (4);
- (d) evidence that the agricultural product or the foodstuff originates in the geographical ar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2) (a) or (b), whichever is applicable;

**▼M4**

- (e) a description of the method of obtaining the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and, if appropriate, the authentic and unvarying local methods as well as information concerning the packaging, if the group making the request determines and justifies that the packaging must take place in the limited geographical area to safeguard quality, ensure traceability or ensure control;

**▼B**

- (f) the details bearing out the link with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or the geographical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2) (a) or (b), whichever is applicable;
- (g) details of the inspection structures provided for in Article 10;
- (h) the specific labelling details relating to the indication PDO or PGI, whichever is applicable, or the equivalent traditional national indications;
- (i) any requirements laid down by Community and/or national provisions.

*Article 5*

1. Only a group or,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o be laid dow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5, a natural or legal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pply for registration.



**▼B**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Group' means any association, irrespective of its legal form or composition, of producers and/or processors working with the same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Other interested parties may participate in the group.

2. A group or a natural or legal person may apply for registration only in respect of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stuffs which it produces or obtain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2) (a) or (b).

3.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include the product spec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4. The application shall be sent to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geographical area is located.

5. The Member State shall check that the application is justified and shall forward the application, including the product spec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and other documents on which it has based its decision, to the Commission, if it considers that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is Regulation.

**▼M1**

That Member State may, on a transitional basis only, grant on the national level a protection in the sense of the present Regulation to the name forwarded in the manner prescribed, and, where appropriate, an adjustment period, as from the date of such forwarding; these may also be granted transitionally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the amendment of the product specification.

Such transitional national protection shall cease on the date on which a decision on registration under this Regulation is taken. When that decision is taken,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may be allowed for adjustment, on condition that the undertakings concerned have legally marketed the products in question, using the names concerned continuously, for at least five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public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6 (2).

The consequences of such national protection, where a name is not registered under this Regulation, shall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The measures taken by Member States under the second subparagraph shall produce effects at national level only; they shall have no effect on intra-Community trade.

**▼M4**

If the application concerns a name that also designates a border geographical area, or a traditional name connected to that geographical area, situated in another Member State or in a third country recognised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2(3), the Member State to which the application was sent shall consult the Member State or the third country concerned before transmitting the application.

If, following consultations, the groups or natural or legal persons from the States concerned agree on an overall solution, the States concerned may submit a joint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the Commission.

Specific provisions may be adopted by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B**

6. Member States shall introdu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Article.

*Article 6*

1.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the Commission shall verify, by means of a formal investigation, whether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includes all the particulars provided for in Article 4.

The Commission shall inform the Member State concerned of its findings.

▼M4

The Commission shall make public an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tating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made.

▼B

2. If, after taking account of paragraph 1, the Commission concludes that the name qualifies for protection, it shall publish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the name of the product, the main points of the application, the references to national provisions governing the preparation,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the product and, if necessary, the grounds for its conclusions.

3. If no statement of objections is notified to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the name shall be entered in a register kept by the Commission entitled 'Register of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shall contain the names of the groups and the inspection bodies concerned.

4.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the names entered in the Register,
- amendments to the Register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and 11.

5. If, in the light of the investi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 Commission concludes that the name does not qualify for protection, it shall decid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5, not to proceed with the public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efore publicatio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4 and registratio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15.

▼M4

6. If the application concerns a homonym of an already registered name from the European Union or a third country recogni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in Article 12(3),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15 prior to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 homonymous nam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Regula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due regard for local and traditional usage and the actual risk of confusion, in particular:

- a homonymous name which misleads the public into believing that products come from another territory shall not be registered even if the name is accurate as far as its wording is concerned for the actual territory, region or place of origin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stuffs in question;
- the use of a registered homonymous name shall be subject to there being a clear distinction in practice between the homonym registered subsequently and the name already on the register, having regard to the need to treat the producers concerned in an equitable manner and not to mislead consumers.

▼B*Article 7*

1.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ferred to in Article 6 (2), any Member State may object to the registration.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 persons who can demonstrate a legitimate economic interest are authorized to consult the application. In addi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situation in the Member States, the Member States may provide access to other parties with a legitimate interest.

3. Any legitimately concerned natural or legal person may object to the proposed registration by sending a duly substantiated stat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he resides or is

**▼B**

establishe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consider these comments or objection within the deadlines laid down.

4. A statement of objection shall be admissible only if it:

— either shows non-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

**▼M1**

— shows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proposed would jeopardize the existence of an entirely or partly identical name or of a mark or the existence of products which have been legally on the market for at least five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public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6 (2).

**▼B**

— or indicates the features which demonstrate that the name whose registration is applied for is generic in nature.

5. Where an objection is admissible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4, the Commission shall ask the Member States concerned to seek agreement among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l procedures within three months. If:

- (a) agreement is reached, the Member States in question shall communicate to the Commission all the factors which made agreement possible together with the applicant's opinion and that of the objector. Where there has been no change to the information received under Article 5, the Commission shall proce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4). If there has been a change, it shall again initiate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7;
- (b) no agreeme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take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having regard to traditional fair practice and of the actual likelihood of confusion. Should it decide to proceed with registration, the Commission shall carry out pub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4).

*Article 8*

The indications PDO, PGI or equivalent traditional national indications may appear only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a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Article 9*

The Member State concerned may request the amendment of a specification, in particular to take account of development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or to redefine the geographical area.

The Article 6 procedur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Commission may, however, decide, under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not to apply the Article 6 procedure in the case of a minor amendment.

*Article 10*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inspection structures are in place, the function of which shall be to ensure that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bearing a protected name meet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the specifications. ►A1 In the case of Austria, Finland and Sweden, the above period shall begin from the date of their accession. ◄ ►A2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Estonia, Cyprus, Latvia, Lithuania, Hungary, Malta, Poland, Slovenia and Slovakia the above period shall begin from the date of their accession. ◄

2. An inspection structure may comprise one or more designated inspection authorities and/or private bodies approved for that purpose by the Member State. Member States shall send the Commission lists of the authorities and/or bodies approved and their respective powers.

**▼B**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those particulars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3. Designated inspection authorities and/or approved private bodies must offer adequate guarantees of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with regard to all producers or processors subject to their control and have permanently at their disposal the qualified staff and resources necessary to carry out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bearing a protected name.

If an inspection structure uses the services of another body for some inspections, that body must offer the same guarantees. In that event the designated inspection authorities and/or approved private bodies shall, however, continue to be responsible *vis-à-vis* the Member State for all inspections.

As from 1 January 1998, in order to be approved by the Member States for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private bodies must fulfil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standard EN 45011 of 26 June 1989.

**▼M4**

The standard or the applicable version of standard EN 45011, whose requirements private bodies must fulfil for approval purposes, shall be established or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The equivalent standard or the applicable version of the equivalent standard in the case of third countries recognised pursuant to Article 12(3), whose requirements private bodies must fulfil for approval purposes, shall be established or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B**

4. If a designated inspection authority and/or private body in a Member State establishes that an agricultural product or a foodstuff bearing a protected name of origin in that Member State does not meet the criteria of the specification, they shall take the steps necessary to ensure that this Regulation is complied with. They shall inform the Member State of the measures taken in carrying out their inspections. The parties concerned must be notified of all decisions taken.

5. A Member State must withdraw approval from an inspection body where the criteria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are no longer fulfilled. It shall inform the Commission, which shall publish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 revised list of approved bodies.

6. The Member States shall adopt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a producer who complies with this Regulation has access to the inspection system.

7. The costs of inspections provided for under this Regulation shall be borne by the producers using the protected name.

*Article 11*

1. Any Member State may submit that a condition laid down in the product specification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covered by a protected name has not been met.

2. The Member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make its submission to the Member State concerned. The Member State concerned shall examine the complaint and inform the other Member State of its findings and of any measures taken.

3. In the event of repeated irregularities and the failure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to come to an agreement, a duly substantiated application must be sent to the Commission.

4.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application by consulting the Member States concerned. Where appropriate, having consulted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15, the Commission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hese may includ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B**

►M4 Notice of cancell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M4***Article 11a*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registration of a name in the following cases:

- (a) Where the State which submitted the original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checks that a request for cancellation, submitted by the group or by a natural or legal person concerned, is justified and forwards it to the Commission.
- (b) For well-founded reasons, where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laid down for an agricultural product or a foodstuff bearing a protected name can no longer be ensured.

Specific provisions may be adopted by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Notice of cancell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B***Article 12*

1. Without prejudice to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Regulation may apply to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from a third country provided that:

— the third country is able to give guarantees identical or equivalent to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4,

**▼M4**

— the third country concerned has inspection arrangements and a right to objection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this Regulation,

**▼B**

— the third country concerned is prepared to provide protection equivalent to that available in the Community to corresponding agricultural products for foodstuffs coming from the Community.

2. If a protected name of a third country is identical to a Community protected name, registration shall be granted with due regard for local and traditional usage and the practical risks of confusion.

Use of such names shall be authorized only i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roduct is clearly and visibly indicated on the label.

**▼M4**

3.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at the request of the country concern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whether a third country satisfies the equivalence conditions and offers guarantee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s a result of its national legislation. Where the Commission decision is in the affirmative,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2a shall apply.

*Article 12a*

1. In the case provided for in Article 12(3), if a group or a natural or legal person as referred to in Article 5(1) and (2) in a third country wishes to have a name registered under this Regulation it shall send a registration application to the authorities in the country in which the geographical area is located. Applications must be accompanied by the spec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for each name.

If the application concerns a name that also designates a border geographical area or a traditional name connected to that geographical area in a Member State, the third country to which the application was sent shall consult the Member State concerned before transmitting the application.

## ▼M4

If, following consultations, the groups or natural or legal persons from the States concerned agree on an overall solution, the said States may submit a joint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the Commission.

Specific provisions may be adopted by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2. If the third country referred to in paragraph 1 deems the requirements of this Regulation to be satisfied it shall transmit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to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 (a) a description of the legal provisions and the usage on the basis of which the designation of origin 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protected or established in the country,
- (b) a declaration that the structures provided for in Article 10 are established on its territory, and
- (c) other documents on which it has based its assessment.

3. The application and all documents forwarded to the Commission shall be in one of the official Community languages or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one of the official Community languages.

*Article 12b*

1. The Commission shall verify within six months whether the registration request sent by the third country contains all the necessary elements and shall inform the country concerned of its conclusions.

If the Commission:

- (a) concludes that the name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protection, it shall publish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 Prior to publication the Commission may ask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15 for its opinion;
- (b) concludes that the name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protection, it shall decide, after consulting the country having transmitted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5, not to proceed with publication as provided for in (a).

2.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publicatio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a),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ith a legitimate interest may object to the application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a) on the following terms:

- (a) where the objection comes from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or a WTO member, Article 7(1), (2) and (3) or Article 12d respectively shall apply;
- (b) where the objection comes from a third country meeting the equivalence conditions of Article 12(3), a duly substantiated statement of objec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country in which the abovementioned natural or legal person resides or is established, which shall forward it to the Commission.

The statement of objection and all documents forwarded to the Commission shall be in one of the official Community languages or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one of the official Community languages.

3.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admis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rticle 7(4). Those criteria must be demonstrated in regard to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Where one or more objections are admissible the Commission shall adopt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after consulting the country which transmitted the application, taking account of traditional and fair usage and the actual risk of confusion on Community territory. If the decision is to proceed with registration the name shall be entered in the register provided for in Article 6(3) and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4).

4. If the Commission receives no statement of objection it shall enter the name(s) in question in the register provided for in Article 6(3) and publish the name(s) as provided for in Article 6(4).

## ▼M4

*Article 12c*

The group or natural or legal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5(1) and (2) may request amendment of the specification for a name registered under Articles 12a and 12b, in particular to take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or to revise the geographical zone.

Th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a and 12c shall apply.

However, the Commission may decid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5 procedure, not to apply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s 12a and 12b if the amendment is of a minor nature.

*Article 12d*

1.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e notice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specified in Article 6(2) relating to a registration application submitted by a Member State, any natural or legal person that has a legitimate interest and is from a WTO member country or a third country recognised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2(3) may object to the proposed registration by sending a duly substantiated statement to the country in which it resides or is established, which shall transmit it, made out or translated into a Community language, to the Commission.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from a WTO member country or a third country recognised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2(3) who can demonstrate a legitimate economic interest is authorised to consult the application.

2.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admissibility of obj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laid down in Article 7(4). These criteria must be proved and assessed with regard to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3. If an objection is admissible the Commission shall, after consulting the country that transmitted the objection, adopt a decision using the procedure specified in Article 15, taking account of traditional and fair usage and the actual risk of confusion. If the decision is to proceed with registration, public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4).

## ▼B

*Article 13*

1. Registered names shall be protected against:

- (a) any direct or indirect commercial use of a name registered in respect of products not covered by the registration in so far as those products are comparable to the products registered under that name or insofar as using the name exploits the reputation of the protected name;
- (b) any misuse, imitation or evocation, even if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 is indicated or if the protected name is translated or accompanied by an expression such as 'style', 'type', 'method', 'as produced in', 'imitation' or similar;
- (c) any other false or misleading indication as to the provenance, origin, nature or essential qualities of the product, on the inner or outer packaging, advertising material or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duct concerned, and the packing of the product in a container liable to convey a false impression as to its origin;
- (d) any other practice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

Where a registered name contains within it the name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which is considered generic, the use of that generic name on the appropriate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contrary to (a) or (b) in the first subparagraph.

**▼M4****▼B**

3. Protected names may not become generic.

**▼M4**

4. In the case of names for which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for under Article 5 or Article 12a, provision may be made for a maximum transitional period of five years under Article 7(5)(b) or under Article 12b(3) or Article 12d(3), solely where a statement of objection has been declared admissible on the ground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proposed name would jeopardise the existence of an entirely or partly homonymous name or the existence of products which have been legally on the market for at least five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public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6(2).

Such transitional period may be provided for only where undertakings have legally marketed the products in question by using the names in question continuously for at least five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public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6(2).

5.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 the Commission may decide to allow,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5, the coexistence of a registered name and an unregistered name designating a place in a Member State or in a third country recognised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2(3) where that name is identical to the registered name,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the identical unregistered name has been in legal use consistently and equitably for at least 25 year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Regulation (EEC) No 2081/92, and
- it is shown that the purpose of its use has not at any time been to profit from the reputation of the registered name and that the public has not been nor could be misled as to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 and
- the problem resulting from the identical names was raised before registration of the name.

The registered name and the identical unregistered name concerned may co-exist for a period not exceeding a maximum of fifteen years, after which the unregistered name shall cease to be used.

Use of the unregistered geographical name concerned shall be authorised only where the country of origin is clearly and visibly indicated on the label.

**▼B***Article 14***▼M4**

1. Where a designation of origin or geographical indication is registered under this Regulation, an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trademark that is for a product of the same type and use of which will engender one of the situations indicated in Article 13 shall be refused if made after the date of submission to the Commission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ation of origin or geographical indication.

Trademarks registered in breach of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be invalidated.

2. With due regard to Community law, a trademark the use of which engenders one of the situations indicated in Article 13 and which has been applied for, registered, or established by use, if that possibility is provided for by the legislation concerned, in good fai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before either the date of prote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or the date of submission to the Commission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ation of origin or geographical indication, may continue to be used notwithstanding the registration of a designation of origin or geographical indication, provided that no grounds for its invalidity or revocation exist as specified by Council Directive 89/104/EEC of 21 December 1998 to approximate the laws



**▼M4**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sup>(1)</sup> and/or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sup>(2)</sup>.

**▼B**

3. A designation of origin or geographical indication shall not be registered where, in the light of a trade mark's reputation and renown and the length of time it has been used, registration is liable to mislead the consumer as to the true identity of the product.

**▼M5***Article 15*

1. The Commission shall be assisted by a committee.
2.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is Article, Articles 5 and 7 of Decision 1999/468/EC <sup>(3)</sup> shall apply.  
The period laid down in Article 5(6) of Decision 1999/468/EC shall be set at three months.
3.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B***Article 16*

Detailed rules for applying this Regulation shall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5.

**▼M4****▼B***Article 18*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sup>(1)</sup> OJ L 40, 11.2.1989, p. 1.

<sup>(2)</sup> OJ L 11, 14.1.1994, p. 1.

<sup>(3)</sup> OJ L 184, 17.7.1999, p. 23.

▼ M4

*ANNEX I*

Foodstuffs referred to in Article 1(1):

- Beer
- Beverages made from plant extracts
- Bread, pastry, cakes, confectionery and other baker's wares
- Natural gums and resins
- Mustard paste
- Pasta.

▼ M4

*ANNEX II*

Agricultural products referred to in Article 1(1)

- Hay
- Essential oils
- Cork
- Cochineal (raw product of animal origin)
- Flowers and ornamental plants
- Wool
- Osier.

## <부 록>

### II. EU회원국의 지리적표시 관할기관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 National authorities and control organs

### Belgium

- Administratie Land en Tuinbouw  
Directoraat Generaal  
Leuvenseplein 4  
4e verdieping  
1000 BRUXELLES
- Affaires économiques  
Administration des Relations économiques  
60, rue Général Leman  
1040 BRUXELLES
- Région Wallonne  
Direction Générale de l'Agriculture  
4, rue du Moulin de Meuse  
5000 BEEZ
- Vlaamse Gemeenschap Administratie Land -en Tuinbouw - VLAM  
Leuvenseplein 4  
1000 BRUSSEL
-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Proef- en Ontledingsstation COOVI  
Emyle Gryzonlaan 1  
1070 BRUSSEL
- Economische Zaken  
Bestuur Economische Betrekkingen  
Generaal Lemanstraat 60  
1040 BRUSSEL

### Denmark

- Ministeriet for Fødevarer, Landbrug og Fiskeri  
Holbergsgade 2  
1057 KØBENHAVN K
- Fødevaredirektoratet  
Mørkhøj Bygade 19  
2860 SØBORG

### Germany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Mohrenstraße 37  
10117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Postfach 14 02 70  
53107 BONN
- Bund für Lebensmittelrecht und Lebensmittelkunde e.V. (BLM)  
Godesberger Allee 157  
53175 BONN
- Deutsches Institut zum Schutz von geografischen Herkunftsangaben e. V. (DIGH)  
Theodor-Heuss-Ring 19-21  
50668 KÖLN
- Patentamt  
80297 MÜNCHEN
-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

Adickesallee 40  
60322 FRANKFURT AM MAIN

### Greece

- Ministry of Agriculture  
Acharnon 2  
ATHENS 101 76

### Spain

#### Autoridad de ámbito estatal:

- MINISTERIO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Subsecretaría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Dirección General de Alimentación  
Subdirección General de Denominaciones de Calidad y Relaciones Interprofesionales y Contractuales  
Pº Infanta Isabel, 1  
28071 MADRID

#### Autoridades de ámbito autonómico:

- JUNTA DE ANDALUCÍA  
Consejería de Agricultura y Pesca  
Dirección General de Industrias y Promoción Agroalimentaria  
Tabladilla, s/n  
41071 SEVILLA
- DIPUTACIÓN GENERAL DE ARAGÓN  
Departamento de Agricultura  
Dirección General de Industrialización y Comercialización Agrarias  
Pº María Agustín, Edfº Pignatelli  
50071 ZARAGOZA
- PRINCIPADO DE ASTURIAS  
Consejería de Medio Rural y Pesca  
Dirección General de Agroalimentación  
Coronel Aranda, 2,2ª pl.  
33005 OVIEDO
- COMUNIDAD AUTÓNOMA DE LAS ISLAS BALEARES  
Consejería de Agricultura y Pesca  
Dirección General de Agricultura  
Foners, 10  
07006 PALMA DE MALLORCA
- GOBIERNO DE CANARIAS  
Conseje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Pesca y Alimentación  
Dirección General de Política Agroalimentaria  
José Manuel Gulmerá, 8  
38071 SANTA CRUZ DE TENERIFE
- GOBIERNO DE CANTABRIA  
Consejería de Ganadería, Agricultura y Pesca  
Dirección General de Pesca y Alimentación  
Gutiérrez Solana, s/n. Edfº Europa  
39011 SANTANDER
- JUNTA DE COMUNIDADES DE CASTILLA-LA MANCHA  
Consejería de Agricultura y Medio Ambiente  
Dirección General de Alimentación y Cooperativas  
Pintor Matías Moreno, 4  
45002 TOLEDO
- JUNTA DE CASTILLA Y LEÓN  
Consejería de Agricultura y Ganadería  
Dirección General de Industrias Agrarias  
Rigoberto Cortejoso, 14-4ª planta  
47014 VALLADOLID
- GENERALIDAD DE CATALUÑA  
Departament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Dirección General de Industrias y Calidad Agroalimentarias  
Gran Vía de las Corts Catalanes, 612-614 4ª planta

08071 BARCELONA

- JUNTA DE EXTREMADURA  
Consejería de Economía, Industria y Comercio  
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Paseo de Roma, s/nº. Módulo A-3ª planta  
06800 MÉRIDA (Badajoz)
- JUNTA DE GALICIA  
Consejería de Política Agroalimentaria y Desarrollo Rural  
Dirección General de Industrias y Promoción Agroalimentaria  
Rúa dos Inmandiños, s/n  
15071 SANTIAGO DE COMPOSTELA (A Coruña)
- GOBIERNO DE LA RIOJA  
Conseje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y Desarrollo Rural  
Instituto de Calidad Agroalimentaria de La Rioja  
Avda. de la Paz, 8-10  
26071 LOGROÑO
- COMUNIDAD DE MADRID  
Consejería de Economía e Innovación Tecnológica  
Dirección General de Agricultura  
Ronda de Atocha, 17 - 3º  
28012 MADRID
- COMUNIDAD AUTÓNOMA DE LA REGIÓN DE MURCIA  
Consejería de Agricultura, Agua y Medio Ambiente  
Dirección General de Agricultura e Industrias Agrarias  
Plaza Juan XXIII, s/n  
30001 MURCIA
- GOBIERNO DE NAVARRA  
Departament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Dirección General de Estructuras Agrarias e Industrias Agroalimentarias  
Monasterio de Urdax, 28-3º  
31011 PAMPLONA
- GOBIERNO VASCO  
Departamento de Agricultura y Pesca  
Dirección General de Política e Industria Agroalimentaria  
Donostia-San Sebastian,1  
01010 VITORIA
- GENERALIDAD VALENCIANA  
Instituto de Calidad Agroalimentaria  
Consejería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Plaza Polo de Bernabé, 8-bajo  
46010 VALENCIA

### France

- Direction des politiques économique et internationale (DPEI)  
Bureau des signes de qualité et de l'agriculture biologique  
3, rue Barbet de Jouy  
75349 PARIS 07SP
- INAO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138, Avenue des Champs-Élysées  
75008 PARIS

### Ireland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Agriculture House  
Kildare Street  
DUBLIN 2

### Italy

- 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Direzione Generale Politiche  
Agricole e Agroindustriali Nazionali  
Via XX Settembre n. 20  
00187 ROMA

### **Luxembourg**

- Ministère de l'Agriculture  
Administration des Services Techniques de l'Agriculture  
B.P. 1904  
1019 LUXEMBOURG

### **The Netherlands**

- Hoofdproductschap Akkerbouw  
Postbus 29 739  
2052 LS DEN HAAG
- Ministerie van Landbouw, Natuurbeheer en Visserij  
Directie Industrie en Handel  
Postbus 20401  
2500 EK DEN HAAG

### **Austria**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Innovation und Technologie  
Referat für den gewerblichen Rechtsschutz  
Kohlmarkt 8-10  
1014 WIEN
- Bundeskanzleramt  
Sektion VI/B/1  
Radetzkystraße 2  
1031 WIEN

### **Portugal**

- Ministério da Agricultura, do Desenvolvimento Rural e das Pescas  
Direcção Geral do Desenvolvimento Rural  
Av. Defensores de Chaves, n.º 6  
1000 LISBOA

### **Finland**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O. Box 30  
FIN-00023 GOVERNMENT

### **Sweden**

- Livsmedelsverket (The National Food Administration)  
Box 622  
751 26 UPPSALA

### **United Kingdom**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Regional and Local Foods Branch  
Room 405, Nobel House  
17 Smith Square  
LONDON SW1P 3JR

Back to: **Quality products catch the eye**



## <부 록>

### III. EU의 상품별 PDO/PGI 목록

빈 면

**Annex II**

**LIST OF REGISTERED NAMES UNDER REGULATION (EEC) NO 2081/92 AND  
REGULATION (EEC) NO 2082/92**

## Part A: PDOs and PGIs

### FRESH MEAT

Agneau de l'Aveyron	(PGI)
Agneau de Pauillac	(PGI)
Agneau du Bourbonnais	(PGI)
Agneau du Limousin	(PGI)
Agneau du Poitou-Charentes	(PGI)
Agneau du Quercy	(PGI)
Agnello di Sardegna	(PGI)
Boeuf charolais du Bourbonnais	(PGI)
Boeuf de Chalosse	(PGI)
Boeuf du Maine	(PGI)
Borrego da Beira	(PGI)
Borrego de Montemor-o-Novo	(PGI)
Borrego do Baixo Alentejo	(PGI)
Borrego do Nordeste Alentejano	(PGI)
Borrego Serra da Estrela	(PDO)
Borrego Terrincho	(PDO)
Cabrito da Beira	(PGI)
Cabrito da Gralheira	(PGI)
Cabrito das Terras Altas do Minho	(PGI)
Cabrito de Barroso	(PGI)
Cabrito Transmontano	(PDO)
Carnalentejana	(PDO)
Carne Arouquesa	(PDO)
Carne Barrosã	(PDO)
Carne Cachena da Peneda	(PDO)
Carne da Charneca	(PDO)
Carne de Ávila	(PGI)
Carne de Bovino Cruzado dos Lameiros do Barroso	(PGI)
Carne de Morucha de Salamanca	(PGI)
Carne de Porco Alentejano	(PDO)
Carne dos Açores	(PGI)
Carne Marinhua	(PDO)
Carne Maronesa	(PDO)
Carne Mertolenga	(PDO)
Carne Mirandesa	(PDO)
Cordeiro Bragançano	(PDO)
Cordero Manchego	(PGI)
Diepholzer Moorschnucke	(PDO)
Dinde de Bresse	(PDO)
Lechazo de Castilla y León	(PGI)
Lüneburger Heidschnucke	(PDO)
Orkney beef	(PDO)
Orkney lamb	(PDO)
Pollo y Capón del Prat	(PGI)
Porc de la Sarthe	(PGI)
Porc de Normandie	(PGI)
Porc de Vendée	(PGI)
Porc du Limousin	(PGI)
Schwäbisch-Höllisches Qualitätsschweinefleisch	(PGI)
Scotch beef	(PGI)
Scotch lamb	(PGI)
Shetland lamb	(PDO)
Taureau de Camargue	(PDO)
Ternasco de Aragón	(PGI)
Terñera Gallega	(PGI)
Veau de l'Aveyron et du Ségala	(PGI)
Veau du Limousin	(PGI)

Viande de porc, marque nationale grand-duché de Luxembourg	(PGI)
Vitela de Lafões	(PGI)
Vitellone bianco dell'Appennino Centrale	(PGI)
Volailles d'Alsace	(PGI)
Volailles d'Ancenis	(PGI)
Volailles d'Auvergne	(PGI)
Volailles de Bourgogne	(PGI)
Volailles de Bresse	(PDO)
Volailles de Bretagne	(PGI)
Volailles de Challans	(PGI)
Volailles de Cholet	(PGI)
Volailles de Gascogne	(PGI)
Volailles de Houdan	(PGI)
Volailles de Janzé	(PGI)
Volailles de la Champagne	(PGI)
Volailles de la Drôme	(PGI)
Volailles de l'Ain	(PGI)
Volailles de Licques	(PGI)
Volailles de l'Orléanais	(PGI)
Volailles de Loué	(PGI)
Volailles de Normandie	(PGI)
Volailles de Vendée	(PGI)
Volailles des Landes	(PGI)
Volailles du Béarn	(PGI)
Volailles du Berry	(PGI)
Volailles du Charolais	(PGI)
Volailles du Forez	(PGI)
Volailles du Gâtinais	(PGI)
Volailles du Gers	(PGI)
Volailles du Languedoc	(PGI)
Volailles du Lauragais	(PGI)
Volailles du Maine	(PGI)
Volailles du plateau de Langres	(PGI)
Volailles du Val de Sèvres	(PGI)
Volailles du Velay	(PGI)
Welsh beef	(PGI)
Welsh lamb	(PGI)

#### MEAT-BASED PRODUCTS

Ammerländer Dielenrauschschinken	(PGI)
Ammerländer Katenschinken	(PGI)
Ammerländer Knochenschinken	(PGI)
Ammerländer Schinken	(PGI)
Botillo del Bierzo	(PGI)
Boudin blanc de Rethel	(PGI)
Bresaola della Valtellina	(PGI)
Cacholeira Branca de Portalegre	(PGI)
Canard à foie gras du Sud-Ouest (Chalosse, Gascogne, Gers, Landes, Périgord, Quercy)	(PGI)
Capocollo di Calabria	(PDO)
Cecina de León	(PGI)
Chouriço de Carne de Estremoz e Borba	(PGI)
Chouriço de Carne de Vinhais ou Linguiça de Vinhais	(PGI)
Chouriço de Portalegre	(PGI)
Chouriço grosso de Estremoz e Borba	(PGI)
Chouriço Mouro de Portalegre	(PGI)
Coppa Piacentina	(PDO)
Cotechino Modena	(PGI)
Culatello di Zibello	(PDO)
Dehesa de Extremadura	(PDO)

Farinheira de Portalegre	(PGI)
Gailtaler Speck	(PGI)
Greußener Salami	(PGI)
Guijuelo	(PDO)
Jambon d'Ardenne	(PGI)
Jambon de Bayonne	(PGI)
Jambon sec et noix de jambon sec des Ardennes	(PGI)
Jamón de Huelva	(PDO)
Jamón de Teruel	(PDO)
Lacón de Gallego	(PGI)
Linguiça de Portalegre	(PGI)
Lombo Branco de Portalegre	(PGI)
Lombo Enguitado de Portalegre	(PGI)
Morcela de Estremoz e Borba	(PGI)
Morcela de Assar de Portalegre	(PGI)
Morcela de Cozer de Portalegre	(PGI)
Mortadella Bologna	(PGI)
Nürnberger Bratwürste ou Nürnberger Rostbratwürste	(PGI)
Paia de Estremoz e Borba	(PGI)
Paia de Lombo de Estremoz e Borba	(PGI)
Paia de Toucinho de Estremoz e Borba	(PGI)
Painho de Portalegre	(PGI)
Pancetta di Calabria	(PDO)
Pancetta Piacentina	(PDO)
Pâté gaumais	(PGI)
Presunto de Barrancos	(PDO)
Presunto de Barroso	(PGI)
Prosciutto di Carpegna	(PDO)
Prosciutto di Modena	(PDO)
Prosciutto di Norcia	(PGI)
Prosciutto di Parma	(PDO)
Prosciutto di S. Daniele	(PDO)
Prosciutto Toscano	(PDO)
Prosciutto Veneto Berico-Euganeo	(PDO)
Salaisons fumées, marque nationale grand-duché de Luxembourg	(PGI)
Salame Brianza	(PDO)
Salame di Varzi	(PDO)
Salame d'oca di Mortasa	(PGI)
Salame Piacentino	(PDO)
Salamini italiani alla cacciatora	(PDO)
Salchichón de Vic/Llonganissa de Vic	(PGI)
Salpição de Vinhais	(PGI)
Salsiccia di Calabria	(PDO)
Schwarzwälder Schinken	(PGI)
Sobrasada de Mallorca	(PGI)
Soppressata di Calabria	(PDO)
Soprèssa Vicentina	(PDO)
Speck dell'Alto Adige/Südtiroler Markenspeck/Südtiroler Speck	(PGI)
Thüringer Leberwurst	(PGI)
Thüringer Rostbratwurst	(PGI)
Thüringer Rotwurst	(PGI)
Timoleague Brown Pudding	(PGI)
Tiroler Speck	(PGI)
Valle d'Aosta Jambon de Bosses	(PDO)
Valle d'Aosta Lard d'Arnad	(PDO)
Zampone Modena	(PGI)

#### CHEESES

Abondance	(PDO)
Allgäuer Bergkäse	(PDO)

Allgäuer Emmentaler	(PDO)
Altenburger Ziegenkäse	(PDO)
Asiago	(PDO)
Beacon Fell traditional Lancashire cheese	(PDO)
Beaufort	(PDO)
Bitto	(PDO)
Bleu d'Auvergne	(PDO)
Bleu des Causses	(PDO)
Bleu du Haut Jura, de Gex, de Septmoncel	(PDO)
Bleu du Vercors Sassenage	(PDO)
Boeren-Leidse met sleutels	(PDO)
Bonchester cheese	(PDO)
Bra	(PDO)
Brie de Meaux	(PDO)
Brie de Melun	(PDO)
Brocciu Corse ou brocciu	(PDO)
Buxton blue	(PDO)
Cabrales	(PDO)
Caciocavallo Silano	(PDO)
Camembert de Normandie	(PDO)
Canestrato Pugliese	(PDO)
Cantal ou fourme de Cantal ou cantalet	(PDO)
Casciotta d'Urbino	(PDO)
Castelmagno	(PDO)
Chabichou du Poitou	(PDO)
Chaource	(PDO)
Comté	(PDO)
Crottin de Chavignol ou Chavignol	(PDO)
Danablu	(PGI)
Dorset Blue cheese	(PGI)
Dovedale cheese	(PDO)
Emmental de Savoie	(PGI)
Emmental français est-central	(PGI)
Époisses de Bourgogne	(PDO)
Esrom	(PGI)
Exmoor Blue cheese	(PGI)
Fiore Sardo	(PDO)
Fontina	(PDO)
Formai de Mut Dell'alta Valle Brembana	(PDO)
Fourme d'Ambert ou fourme de Montbrison	(PDO)
Fromage de Herve	(PDO)
Gailtaler Almkäse	(PDO)
Gorgonzola	(PDO)
Grana Padano	(PDO)
Idiazábal	(PDO)
Imokilly Regato	(PDO)
Kanterkaas, Kanternagelkaas, Kanterkomijnekaas	(PDO)
Laguiole	(PDO)
Langres	(PDO)
Livarot	(PDO)
Mahón-Menorca	(PDO)
Maroilles ou Marolles	(PDO)
Mont d'or ou vacherin du Haut-Doubs	(PDO)
Montasio	(PDO)
Monte Veronese	(PDO)
Morbier	(PDO)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PDO)
Munster ou Munster-Géromé	(PDO)
Murazzano	(PDO)
Neufchâtel	(PDO)

Noord-Hollandse Edammer	(PDO)
Noord-Hollandse Gouda	(PDO)
Odenwälder Frühstückskäse	(PDO)
Ossau-Iraty	(PDO)
Parmigiano Reggiano	(PDO)
Pecorino Romano	(PDO)
Pecorino Sardo	(PDO)
Pecorino Siciliano	(PDO)
Pecorino Toscano	(PDO)
Pélardon	(PDO)
Picodon de l'Ardèche ou picodon de la Drôme	(PDO)
Picón Bejes-Tresviso	(PDO)
Pont-l'Évêque	(PDO)
Poulligny-Saint-Pierre	(PDO)
Provolone Valpadana	(PDO)
Quartirolo Lombardo	(PDO)
Queijo de Azeitão	(PDO)
Queijo de cabra Transmontano	(PDO)
Queijo de Évora	(PDO)
Queijo de Nisa	(PDO)
Queijo do Pico	(PDO)
Queijo mestiço de Tolosa	(PGI)
Queijo Rabaçal	(PDO)
Queijo S. Jorge	(PDO)
Queijo Serpa	(PDO)
Queijo Serra da Estrela	(PDO)
Queijo Terrincho	(PDO)
Queijos da Beira Baixa	(PDO)
(Queijo de Castelo Branco, Queijo Amarelo da Beira Baixa, Queijo Picante da Beira Baixa)	(PDO)
Queso de Cantabria	(PDO)
Queso de l'Alt Urgell y la Cerdanya	(PDO)
Queso de La Serena	(PDO)
Queso de Murcia	(PDO)
Queso de Murcia al vino	(PDO)
Queso de Valdeón	(PGI)
Queso Majorero	(PDO)
Queso Manchego	(PDO)
Queso Palmero ou Queso de la Palma	(PDO)
Queso Tetilla	(PDO)
Queso Zamorano	(PDO)
Quesucos de Liébana	(PDO)
Ragusano	(PDO)
Raschera	(PDO)
Reblochon ou reblochon de Savoie	(PDO)
Robiola di Roccaverano	(PDO)
Rocamadour	(PDO)
Roncal	(PDO)
Roquefort	(PDO)
Sainte-Maure de Touraine	(PDO)
Saint-Nectaire	(PDO)
Salers	(PDO)
Selles-sur-Cher	(PDO)
Single Gloucester	(PDO)
Spresa delle Giudicarie	(PDO)
Svecia	(PGI)
Swaledale cheese/Swaledale ewes' cheese	(PDO)
Taleggio	(PDO)
Teviotdale cheese	(PGI)
Tiroler Almkäse/Tiroler Alpkäse	(PDO)



Tiroler Bergkäse	(PDO)
Tiroler Graukäse	(PDO)
Toma Piemontese	(PDO)
Tomme de Savoie	(PGI)
Tomme des Pyrénées	(PGI)
Torta del Casar	(PDO)
Valle d'Aosta Fromadzo	(PDO)
Valtellina Casera	(PDO)
Vorarlberger Alpkäse	(PDO)
Vorarlberger Bergkäse	(PDO)
West Country farmhouse Cheddar cheese	(PDO)
White Stilton cheese/Blue Stilton cheese	(PDO)
Ανεβαστό (Anevato)	(PDO)
Γαλοτύρι (Galotyri)	(PDO)
Γραβιέρα Αγράφων (Graviera Agrafon)	(PDO)
Γραβιέρα Κρήτης (Graviera Kritis)	(PDO)
Γραβιέρα Νάξου (Graviera Naxou)	(PDO)
Καλαθάκι Λήμνου (Kalathaki Limnou)	(PDO)
Κασέρι (Kasseri)	(PDO)
Κατίκι Δομοκού (Katiki Domokou)	(PDO)
Κεφαλογραβιέρα (Kefalograviera)	(PDO)
Κοπανιστή (Kopanisti)	(PDO)
Λαδοτύρι Μυτιλήνης (Ladotyri Mytilinis)	(PDO)
Μανούρι (Manouri)	(PDO)
Μετσοβόνη (Metsovone)	(PDO)
Μπάτζος (Batzos)	(PDO)
Ευνομυζήθρα Κρήτης (Xynomyzithra Kritis)	(PDO)
Πηχτόγαλο Χανίων (Pichtogalo Chanion)	(PDO)
Σαν Μιχάλη (San Michali)	(PDO)
Σφέλα (Sfela)	(PDO)
Φέτα	(PDO)
Φορμαέλλα Αράχωβας Παρνασσού (Formaella Arachovas Parnassou)	(PDO)

**OTHER PRODUCTS OF ANIMAL ORIGIN  
(EGGS, HONEY, VARIOUS DAIRY PRODUCTS EXCEPT BUTTER)**

Cornish clotted cream	(PDO)
Crème d'Isigny	(PDO)
Crème fraîche fluide d'Alsace	(PGI)
Mel da Serra da Lousã	(PDO)
Mel da Serra de Monchique	(PDO)
Mel da Terra Quente	(PDO)
Mel das Terras Altas do Minho	(PDO)
Mel de Barroso	(PDO)
Mel do Alentejo	(PDO)
Mel do Parque de Montezinho	(PDO)
Mel do Ribatejo Norte	(PDO)
(Serra d'Aire, Albufeira de Castelo de Bode, Bairro, Alto Nabão)	
Mel dos Açores	(PDO)
Miel de Corse - Mele de Corsica	(PDO)
Miel de La Alcarria	(PDO)
Miel de Sapin des Vosges	(PDO)
Miel luxembourgeois de marque nationale	(PDO)
Μέλι Ελάτης Μαινάλου Βανίλια (Meli Elatis Menalou Vanilia)	(PDO)

**OILS AND FATS**

Aceite del Bajo Aragón	(PDO)
Alto Crotonese	(PDO)
Aprutino Pescarese	(PDO)
Azeite de Moura	(PDO)

Azeite de Trás-os-Montes	(PDO)
Azeites da Beira Interior (Azeite da Beira Alta, Azeite da Beira Baixa)	(PDO)
Azeites do Norte Alentejano	(PDO)
Azeites do Ribatejo	(PDO)
Baena	(PDO)
Beurre Charentes-Poitou - Beurre des Charentes - Beurre des Deux-Sèvres	(PDO)
Beurre d'Ardenne	(PDO)
Beurre d'Isigny	(PDO)
Beurre rose de marque nationale grand-duché de Luxembourg	(PDO)
Brisighella	(PDO)
Bruzio	(PDO)
Canino	(PDO)
Chianti Classico	(PDO)
Cilento	(PDO)
Collina di Brindisi	(PDO)
Colline di Romagna	(PDO)
Colline Salernitane	(PDO)
Colline Teatine	(PDO)
Dauno	(PDO)
Garda	(PDO)
Huile d'olive d'Aix-en-Provence	(PDO)
Huile d'olive de Haute Provence	(PDO)
Huile d'olive de la Vallée des Baux de Provence	(PDO)
Huile d'olive de Nyons	(PDO)
Laghi Lombardi	(PDO)
Lametia	(PDO)
Lausitzer Leinöl	(PGI)
Les Garrigues	(PDO)
Mantequilla de l'Alt Urgell y la Cerdanya ou Mantega de l'Alt Urgell i la Cerdanya	(PDO)
Molise	(PDO)
Monte Etna	(PDO)
Montes de Toledo	(PDO)
Monti Iblei	(PDO)
Penisola Sorrentina	(PDO)
Pretuziano delle Colline Teramane	(PDO)
Priego de Córdoba	(PDO)
Riviera Ligure	(PDO)
Sabina	(PDO)
Sierra de Cazorla	(PDO)
Sierra de Segura	(PDO)
Sierra Mágina	(PDO)
Siurana	(PDO)
Steierisches Kürbiskernöl	(PGI)
Terra di Bari	(PDO)
Terra d'Otranto	(PDO)
Terre di Siena	(PDO)
Toscana	(PGI)
Umbria	(PDO)
Val di Mazara	(PDO)
Valli Trapanesi	(PDO)
Veneto Valpolicella, Veneto Euganei e Berici, Veneto del Grappa	(PDO)
Αποκορώνας Χανίων Κρήτης (Apokoronas Hanion Kritis)	(PDO)
Αρχάνες Ηρακλείου Κρήτης (Archanes Iraklio Kritis)	(PDO)
Βιάννος Ηρακλείου Κρήτης (Viannos Iraklio Kritis)	(PDO)
Βόρειος Μυλοπόταμος Ρεθύμνης Κρήτης (Vorios Mylopotamos Rethymnis Kritis)	(PDO)
Εξαιρετικό παρθένο ελαιόλαδο: "ΘΡΑΨΑΝΟ" (Huile d'olive extra vierge Thrapsana)	(PDO)

Ζάκυνθος (Zakynthos)	(PGI)
Θάσος (Thassos)	(PGI)
Καλαμάτα (Kalamata)	(PDO)
Κεφαλονιά (Kefalonia)	(PGI)
Κολυμβάρι Χανίων Κρήτης (Kolymvari Hanion Kritis)	(PDO)
Κρανίδι Αργολίδας (Kranidi Argolidas)	(PDO)
Κροκεές Λακωνίας (Krokees Lakonias)	(PDO)
Λακωνία (Lakonia)	(PGI)
Λέσβος (Lesbos)	(PGI)
Λυγουριό Ασκληπιείου (Lygourio Asklipeiou)	(PDO)
Ολυμπία (Olympia)	(PGI)
Πεζά Ηρακλείου Κρήτης (Peza Iraklio Kritis)	(PDO)
Πέτρινα Λακωνίας (Petrina Lakonias)	(PDO)
Πρέβεζα (Preveza)	(PGI)
Ρόδος (Rhodos)	(PGI)
Σάμος (Samos)	(PGI)
Σητεία Λασιθίου Κρήτης (Sitia Lasithi Kritis)	(PDO)
Φοινίκι Λακωνίας (Finiki Lakonias)	(PDO)
Χανιά Κρήτης (Hania Kritis)	(PGI)

#### FRUIT, VEGETABLES AND CEREALS

Arroz de Valencia ou Arròs de València	(PDO)
Ail rose de Lautrec	(PGI)
Alcachofa de Brenicarló ou Carxofa de Benicarló	(PDO)
Alcachofa de Tudela	(PGI)
Ameixa d'Elvas	(PDO)
Amêndoa Douro	(PDO)
Ananás dos Açores / São Miguel	(PDO)
Anona da Madeira	(PDO)
Arancia Rossa di Sicilia	(PGI)
Arroz del Delta del Ebro	(PGI)
Asparago bianco di Cimadolmo	(PGI)
Asparago verde di Altedo	(PGI)
Avellana de Reus	(PDO)
Azeitona de conserva Negrinha de Freixo	(PDO)
Berenjena de Almagro	(PGI)
Calasparra	(PDO)
Calçot de Valls	(PGI)
Cappero di Pantelleria	(PGI)
Carciofo di Paestum	(PGI)
Carciofo Romanesco del Lazio	(PGI)
Castagna del Monte Amiata	(PGI)
Castagna di Montella	(PGI)
Castanha da Terra Fria	(PDO)
Castanha de Padrela	(PDO)
Castanha dos Soutos da Lapa	(PDO)
Castanha Marvão-Portalegre	(PDO)
Cereja da Cova da Beira	(PGI)
Cereja de São Julião-Portalegre	(PDO)
Cerezas de la Montaña de Alicante	(PGI)
Chasselas de Moissac	(PDO)
Chufa de Valencia	(PDO)
Ciliegi di Marostica	(PGI)
Cítricos Valencianos ou Cítricos Valencians	(PGI)
Citrinos do Algarve	(PGI)
Clementinas de las Tierras del Ebro ou Clementines de les Terres de l'Ebre	(PGI)
Clementine del Golfo di Taranto	(PGI)
Clementine di Calabria	(PGI)
Coco de Paimpol	(PDO)
Espárrago de Huétor-Tájar	(PGI)

Espárrago de Navarra	(PGI)
Faba Asturiana	(PGI)
Fagiolo di Lamona della Vallata Bellunese	(PGI)
Fagiolo di Sarconi	(PGI)
Fagiolo di Sorana	(PGI)
Farina di Neccio della Garfagnana	(PDO)
Farro della Garfagnana	(PGI)
Fasolia (Gigantes-Elefantes Kastorias)	(PGI)
Ficodindia dell'Etna	(PDO)
Fraise du Périgord	(PGI)
Fungo di Borgotaro	(PGI)
Haricot tarbais	(PGI)
Jersey Royal potatoes	(PDO)
Judías de El Barco de Ávila	(PGI)
Kaki Ribera del Xúquer	(PDO)
La Bella della Daunia	(PDO)
Lammefjordsgulerod	(PGI)
Lapin Puikula	(PDO)
Lenteja de La Armuña	(PGI)
Lenticchia di Castelluccio di Norcia	(PGI)
Lentille verte du Puy	(PDO)
Lentilles vertes du Berry	(PGI)
Limone Costa d'Amalfi	(PGI)
Limone di Sorrento	(PGI)
Maçã Bravo de Esmolfe	(PDO)
Maçã da Beira Alta	(PGI)
Maçã da Cova da Beira	(PGI)
Maçã de Alcobaça	(PGI)
Maçã de Portalegre	(PGI)
Mâche nantaise	(PGI)
Manzana de Girona ou Poma de Girona	(PGI)
Manzana Reineta del Bierzo	(PDO)
Maracujá dos Açores/S. Miguel	(PDO)
Marchfeldspargel	(PGI)
Marrone del Mugello	(PGI)
Marrone di Castel del Rio	(PGI)
Marrone di San Zeno	(PDO)
Mela Val di Non	(PDO)
Melocotón de Calanda	(PDO)
Melon du Haut-Poitou	(PGI)
Melon du Quercy	(PGI)
Mirabelles de Lorraine	(PGI)
Muscat du Ventoux	(PDO)
Nisperos Callosa d'En Sarriá	(PDO)
Nocciola del Piemonte	(PGI)
Nocciola di Giffoni	(PGI)
Nocellara del Belice	(PDO)
Noix de Grenoble	(PDO)
Olives cassées de la vallée des Baux-de-Provence	(PDO)
Olives noires de la vallée des Baux-de-Provence	(PDO)
Olives noires de Nyons	(PDO)
Opperdoezer Ronde	(PDO)
Peperone di Senise	(PGI)
Pera dell'Emilia Romagna	(PGI)
Pera mantovana	(PGI)
Pêra Rocha do Oeste	(PDO)
Peras de Rincón de Soto	(PDO)
Pesca e nettarina di Romagna	(PGI)
Pêssego da Cova da Beira	(PGI)
Pimientos del Piquillo de Lodosa	(PDO)

Poireaux de Créances	(PGI)
Pommes de terre de l'Île de Ré	(PDO)
Pommes de terre de Merville	(PGI)
Pommes et poires de Savoie	(PGI)
Pomodoro di Pachino	(PGI)
Pomodoro S. Marzano dell'Agro Sarnese-Nocerino	(PDO)
Pruneaux d'Agen - Pruneaux d'Agen mi-cuits	(PGI)
Radicchio Rosso di Treviso	(PGI)
Radicchio Variegato di Castelfranco	(PGI)
Riso Nano Vialone Veronese	(PGI)
Riz de Camargue	(PGI)
Scalognon di Romagna	(PGI)
Spreewälder Gurken	(PGI)
Spreewälder Meerrettich	(PGI)
Uva da tavola di Canicatti	(PGI)
Uva da tavola di Mazzarrone	(PGI)
Uva de mesa embolsada "Vinalopó"	(PDO)
Wachauer Marille	(PDO)
Waldviertler Graumohn	(PDO)
Westlandse druif	(PGI)
Ακτινίδιο Πιερίας (Aktinidio Pierias)	(PGI)
Ακτινίδιο Σπερχειού (Aktinidio Sperchiou)	(PDO)
Ελιά Καλαμάτας (Kalamata)	(PDO)
Θρούμπα Αμπαδιάς Ρεθύμνης Κρήτης (Trumba-Ambadai Rethimno Crète)	(PDO)
Θρούμπα Θάσου (Trumba Thasu)	(PDO)
Θρούμπα Χίου (Trumba Quios)	(PDO)
Κελυφωτό φυστίκι Φθιώτιδας (Kelifoto fistiki Phtiotidas)	(PDO)
Κεράσια τραγανά Ροδοχωρίου (Kerasia Tragana Rodochoriou)	(PDO)
Κονσερβολιά Αμφίσσης (Konservolia Amfissis)	(PDO)
Κονσερβολιά Αρτας (Konservolia Artas)	(PGI)
Κονσερβολιά Αταλάντης (Konservolia Atalantis)	(PDO)
Κονσερβολιά Πηλίου* Βόλου (Konservolia Piliou Volou)	(PDO)
Κονσερβολιά Ροβίων (Konservolia Rovion)	(PDO)
Κονσερβολιά Στυλίδας (Konservolia Stilidas)	(PDO)
Κορινθιακή Σταφίδα Βοστίτσα (Corinthiaki Stafida Vostitsa)	(PDO)
Κουμ Κουάτ Κέρκυρας (Kumquat Kerkyras)	(PGI)
Μήλα Ζαγοράς Πηλίου (Mila Zagora Piliou)	(PDO)
Μήλα Ντελίσιους Πιλάφα Τριπόλεως (Mila Delicious Pilafa Tripolos)	(PDO)
Μήλο Καστοριάς (Milo Kastorias)	(PGI)
Ξερά σύκα Κύμης (Xera Syka Kymis)	(PDO)
Πατάτα Κάτω Νευροκοπίου (Patata Kato Nevrokopiou)	(PGI)
Πορτοκάλια Μάλεμε Χανίων Κρήτης (Portokalia Maleme Hanion Kritis)	(PDO)
Ροδάκινα Νάουσας (Rodakina Naoussas)	(PDO)
Σύκα Βραβρώνας Μαρκοπούλου Μεσογείων (Syka Vravronas Markopoulou Mesogion)	(PGI)
Τσακωνική Μελιτζάνα Λεωνιδίου (Tsakoniki Melintzana Leonidiou)	(PDO)
Φασόλια (Γίγαντες Ελέφαντες) Πρεσπών Φλώρινας (Fasolia (Gigantes Elefantes) Prespon Florinas)	(PGI)
Φασόλια (Πλάκε Μεγαλοσπερμα) Πρεσπών Φλώρινας (Fasolia (Plake Megalosperma) Prespon Florinas)	(PGI)
Φασόλια -Γίγαντες Ελέφαντες Καστοριάς (Fasolia (Gigantes-Ellefantes Kastorias)	(PGI)
Φασόλια γίγαντες ελέφαντες Κάτω Νευροκοπίου (Fasolia Gigantes Elefantes Kato Nevrokopiou)	(PGI)
Φασόλια κοινά μεσόσπερμα Κάτω Νευροκοπίου (Fasolia Koina Mesosperma Kato Nevrokopiou)	(PGI)

Φυστίκι Αίγινας (Fistiki Aeginas)	(PDO)
Φυστίκι Μεγάρων (Fistiki Megaron)	(PDO)

#### FRESH FISH, MOLLUSCS AND CRUSTACEANS AND PRODUCTS DERIVED THEREFROM

Anchois de Collioure	(PGI)
Arbroath smokies	(PGI)
Clare Island salmon	(PGI)
Coquilles St. Jacques des Côtes d'Armor	(PGI)
Oberpfälzer Karpfen	(PGI)
Schwarzwaldforelle	(PGI)
Whitstable oysters	(PGI)
Αυγοτάραχο Μεσολογγίου (Avgotaracho Messolonghiou)	(PDO)

#### OTHER ANNEX I PRODUCTS

Aceto balsamico tradizionale di Modena	(PDO)
Aceto balsamico tradizionale di Reggio Emilia	(PDO)
Azafrán de la Mancha	(PDO)
Cidre de Bretagne – cidre breton	(PGI)
Cidre de Normandie – cidre normand	(PGI)
Cornouaille	(PDO)
Gloucestershire cider/perry	(PGI)
Herefordshire cider/perry	(PGI)
Pays d'Auge/Pays d'Auge-Cambremer	(PDO)
Piment d'Espelette ou Piment d'Espelette-Ezpeletako Biperra	(PDO)
Pimentón de Murcia	(PDO)
Worcestershire cider/perry	(PGI)
Κρόκος Κοζάνης (Krokos Kozanis)	(PDO)

#### OTHER ANNEX I PRODUCTS TO REGULATION (EEC) No 2081/92

Bayerisches Bier	(PGI)
Bremer Bier	(PGI)
Budějovické pivo	(PGI)
Budějovický měšťanský var	(PGI)
Českobudějovické pivo	(PGI)
Dortmunder Bier	(PGI)
Gögginger Bier	(PGI)
Hofer Bier	(PGI)
Kentish ale and Kentish strong ale	(PGI)
Kölsch	(PGI)
Kulmbacher Bier	(PGI)
Mainfranken Bier	(PGI)
Münchner Bier	(PGI)
Newcastle Brown Ale	(PGI)
Reuther Bier	(PGI)
Rieser Weizenbier	(PGI)
Rutland bitter	(PGI)
Wernesgrüner Bier	(PGI)

#### NATURAL MINERAL WATERS AND SPRING WATER

Bad Hersfelder Naturquell	(PDO)
Bad Niedermauer Quelle	(PDO)
Bad Pyrmonter	(PDO)
Birresborner	(PDO)
Bissinger Auerquelle	(PDO)
Blankenburger Wiesenquell	(PDO)
Caldener Mineralbrunnen	(PDO)
Ensinger Mineralquelle	(PDO)
Felsenquelle Beiseförth	(PDO)
Gemminger Mineralquelle	(PDO)

Göppinger Quelle	(PDO)
Graf Meinhard Quelle Gießen	(PDO)
Haaner Felsenquelle	(PDO)
Haltern-Quelle	(PDO)
Höllen-Sprudel	(PDO)
Katlenburger Burgbergquelle	(PDO)
Kißlegger Mineralquellen	(PDO)
Leisslinger Mineralbrunnen	(PDO)
Lieler Quelle	(PDO)
Löwensteiner Mineral Quelle	(PDO)
Rhenser Mineralbrunnen	(PDO)
Rilchinger Amandus-Quelle	(PDO)
Rilchinger Gräfin Mariannen-Quelle	(PDO)
Schwollener Sprudel	(PDO)
Siegsdorfer Petrusquelle	(PDO)
Steinsieker Mineralwasser	(PDO)
Teinacher Mineralquellen	(PDO)
Überkinger Mineralquellen	(PDO)
Vesalia-Quelle	(PDO)
Wernigeröder Mineralbrunnen	(PDO)
Wildenrath-Quelle	(PDO)

#### **BREAD, PASTRY, CAKES, CONFECTIONERY, BISCUITS AND OTHER BAKERS' WARES**

Aachener Printen	(PGI)
Bergamote(s) de Nancy	(PGI)
Brioche vendéenne	(PGI)
Coppia Ferrarese	(PGI)
Ensaïmada de Mallorca or Ensaimada mallorquina	(PGI)
Jijona	(PGI)
Lübecker Marzipan	(PGI)
Meißner Fummel	(PGI)
Nürnberger Lebkuchen	(PGI)
Pane casareccio di Genzano	(PGI)
Pane di Altamura	(PDO)
Skånsk spettekaka	(PGI)
Turrón de Agramunt ou Torró d'Agramunt	(PGI)
Turrón de Alicante	(PGI)
Κρητικό παξιμάδι (Kritiko paximadi)	(PGI)

#### **NATURAL GUMS AND RESINS**

Μαστίχα Χίου (Mastiha Chiou)	(PDO)
Τσίκλα Χίου (Tsikla Chiou)	(PDO)

#### **AGRICULTURAL PRODUCTS NOT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Bergamotto di Reggio Calabria- Olio essenziale	(PDO)
Foin de Crau	(PDO)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PDO)
Μαστιχέλαιο Χίου (Mastihelαιο Chiou)	(PDO)